



“소통하는 의회, 함께하는 의정”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회 운영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용진군의회 의회운영발전연구회

2023. 12.

제 출 문

용진군의회 의회운영발전연구회 귀하

본 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체계 개선』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제 윤 의 정

【제목 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지방의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의회의 개요	8
1. 지방의회의 정의	8
2. 지방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8
3. 지방의회의 유형	9
4. 지방의회의 역할	16
5.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17
6.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18
제2절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변천	21
1. 지방의회제도의 변화	21
2. 지방의회 구성의 변화	26

제3장 법·제도 및 사례분석

제1절 법·제도 현황	35
1.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법제	35
2.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법제	37
제2절 사례분석	41
1. 국회사무처	41
2. 경기도의회	48
3. 미국의 지방의회	51
4. 영국의 지방의회	62
5. 일본의 지방의회	70
6. 프랑스의 지방의회	73
7. 스페인의 지방의회	79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현황분석	83
1. 조직구성	83
2. 기능배분	83
3. 시사점	85
제2절 기능분석	87
1. 기능분석 개요	87
2. 기능분석결과	90

제3절 직무분석	95
1. 직무분석의 개요	93
2.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결과	96

제5장 조직재설계

1. 조직개편안: 제1안	100
2. 조직개편안: 제2안	103
3. 조직개편안: 장기개편안	104
4. 지방의회 지원체계 개선방안	106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장기적 개선안	116
2. 과도기적 개선안	116
3. 제도 개선과 의정지원의 방향성 확보	117
4.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개선방안	117
[참고] 자치단체별 인구, 의회 조직 현황	124

[부록]

1. 조례안
2. 조례안2(축산, 인구, 관광 등)
3. 회의운영 및 상임위 운영 예시

【 표 차 례 】

〈표 2-1〉 단체장 중심형(강시장형)의 특징	10
〈표 2-2〉 단체장 중심형(약시장형)의 특징	11
〈표 2-3〉 책임행정관형의 특징	13
〈표 2-4〉 위원회형의 특징	15
〈표 2-5〉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한국과 일본의 비교)	19
〈표 2-6〉 지방의회의 주요 제도변화 내역(지방자치법)	24
〈표 2-7〉 위원회 운영관련 주요변화 및 회기별 상임위원회 수	27
〈표 2-8〉 지방의회 의원정수 제도변화수	28
〈표 2-9〉 지방의회 의원정수 변화	31
〈표 2-10〉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32
〈표 2-11〉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정원: 1기	33
〈표 2-1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정원: 2기~8기 시·도 의회	34
〈표 2-13〉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정원: 2기~8기 시·군·구 의회	34
〈표 3-1〉 실장·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	36
〈표 3-2〉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36
〈표 3-3〉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37
〈표 3-4〉 정원관리의 특례	39
〈표 3-5〉 시·군·구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원기준	40
〈표 3-6〉 시·군·구 지방농촌진흥기구 및 사업소의 직급기준	41
〈표 3-7〉 미국 지방정부 유형	51
〈표 3-8〉 미국 지방정부의원 총수 분포 현황	52
〈표 3-9〉 미국 지방정부 의회에 대한 지원현황	57
〈표 3-10〉 영국 지방정부의 현황	63
〈표 4-1〉 웅진군의회사무기구의 사무배분 문제점	86
〈표 4-2〉 기능분석의 방법	90
〈표 4-3〉 직무분석의 절차	95

<표 4-4> 의회사무과 설문응답률	96
<표 4-5> 조직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97
<표 4-6> 의회사무과 업무량	97
<표 4-7> 의회사무과의 직무수준	98
<표 4-8> 이관을 희망하는 업무에 대한 의견	98
<표 4-9> 신설업무 및 조직에 대한 의견	99
<표 4-10> 협조가 필요한 업무와 부서에 대한 의견	99
<표 5-1> 용진군의회사무기구 인력배분 대안 1	102
<표 5-2> 용진군의회사무기구 인력배분 대안 2	105
<표 6-1> 「용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119
<표 6-2> 「용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121
<표 6-3> 「용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22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목적	3
[그림 1-2] 연구수행방법	6
[그림 1-3] 연구수행체계	7
[그림 2-1] 단체장 중심형(강시장형)	10
[그림 2-2] 단체장 분산형(약시장형)	12
[그림 2-3] 책임행정관형	14
[그림 2-4] 위원회형	15
[그림 3-1] 국회조직도	42
[그림 3-2] 경기도의회사무기구조직도	49
[그림 3-3] 뉴욕시의회 운영체제	59
[그림 3-4] 피닉스시 의회-시전문경영인형 시정부 의회사무기구	60
[그림 4-1] 용진군의회사무국 조직구성 현황	83
[그림 4-2] 기능분석의 목적	88
[그림 4-3] 기능분석의 체계	88
[그림 4-4] 기능분석의 절차	90
[그림 4-5] 직무분석의 목적	94
[그림 5-1] 조직개편 1안	101
[그림 5-2] 조직개편 2안	103
[그림 5-3] 조직개편 3안	106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미래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

■ 현정부의 5대 국정목표 제시

- 현 정부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제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20대 국정전략으로 제시함
 - 현 정부가 제시한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임
 - 현 정부가 제시한 5대 국정 목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전략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임
 - 이상에서 현 정부의 국정 목표 이행에 따라 지방분권의 확대, 즉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의 확대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2)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기능확대

- 2020년 12월 32년만의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은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확대 기반을 조성함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은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요구의 증대 및 새로운 지방자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은 ‘획기적인 주민주권의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자치권의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추진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기능 배분의 변화

- 이와 같은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법·제도적 변화가 예



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웅진군 의회 사무기구의 기능 배분, 인력 배분, 조직체계의 정비 등이 요구됨

- 부서(팀)별 직무분석을 통해 기능쇠퇴분야와 핵심기능분야, 신규기능분야를 구분하여 합리적인 인력재배치와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가 요구됨
- 유사·중복사무, 다수부서의 연계사무에 대한 부서별 기능조정을 통한 제한된 자원(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설계가 요구됨

2. 연구의 목적

1)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를 통한 미래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 부서별 기능분석을 통한 기능재배분 및 신규기능의 발굴

- 웅진군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으로 적합한 기능과 적합하지 않은 기능의 구분
 - 웅진군의회의 사무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 적합한 기능인가에 관한 분석
 - 현재 수행 기능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등에 관한 조직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및 전문가 분석
- 웅진군의회 사무기구의 현재 수행 기능 중 기능의 성격이 유사한 기능의 통·폐합
 - 기능의 성격이 유사한 기능의 분류
 - 기능수행의 영향 범위가 유사한 기능의 분류
 - 기능수행을 위해 일관화된 업무 프로세스상에 속한 기능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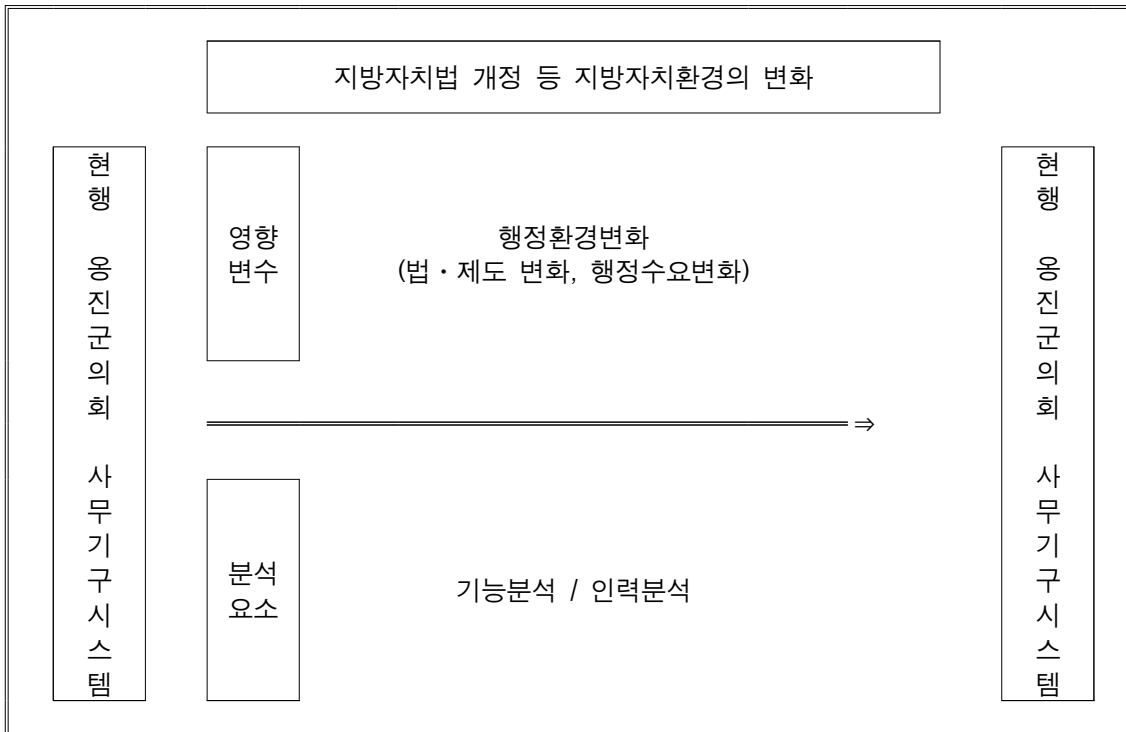
■ 부서별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재배치 등 인력운영 대안 제시

- 현재 수행기능의 완수를 위해 소요되는 업무시간의 추정
 - 연간 업무시간 기준으로 추정
-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인력소요량 산출
 - 연간 총 업무량 및 1일 평균 업무량을 산출하여 필수인력규모를 추정

■ 웅진군의회 사무기구 조직 개편 대안 제시

-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시스템 구축 대안 제시
- 부서별 기능분석과 직무분석 결과를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재설계를 통해 웅진군의회 사무기구의 미래 행정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대안 제시

[그림 1-1] 연구의 목적



2) 대안의 제도화 방안 제시

■ 조직 재설계 대안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의 도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기도옹진군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경기도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경기도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도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할 사항과 조례로 규정할 사항에 대한 구분 및 행정안전부에 대한 건의사항 도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건의(안) 도출 부문]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기능 배분과 직원 정수 결정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할 부분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할 부분의 구분(안) 도출
- [경기도 옹진군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 부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조례 개선 방향 도출
- [경기도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 규칙 개정 부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조례 개선 방향 도출
- [경기도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부문] 정원의 총수, 정원책정기준,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도출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시점: 2023년 7월 30일

- 본 연구는 2023년 7월 30일 현재의 법·제도 및 조직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함
- 모든 현황자료 및 통계자료는 기준시점(2021년 5월 15일)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함
- 직무분석, 즉 업무량 추정은 2023년 7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근무상황자료를 활용함

■ 목표시점: 2023년 7월 30일

-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1월13일을 목표 시점으로 설정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에 의해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에 부합하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계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바, 목표 시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임

2) 공간적 범위

■ 웅진군의회 사무기구 조직 전체

- 본 과업의 범위는 웅진군의회 사무기구임

■ 국회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 본 과업의 수행에서 사례분석을 위한 대상은 국회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임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합의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의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함

3) 내용적 범위

■ 미래행정수요 변화에 대응을 위한 조직 내·외부 행정환경 분석

- 미래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를 전망하여 웅진군의회 사무기구의 행정기능 재배분
 - 적극적인 신규기능의 도출 및 유사기능의 연계수행체계 구축을 통한 기능수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제시

■ 직무분석

- 부서별 수행기능에 관한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기능수행 인력규모 추정
 - 현재의 기능별·계층(직급)별 인력 규모 추정

■ 조직재설계 및 인력 재배치 등 조직 개편(안), 즉 조례 개정(안) 제시

- 기능 중심의 조직구조 재설계 및 인력재배치 대안 제시
 - 부서별 핵심사업 및 신규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직 구조 재설계안 제시
 - 부서별 인사운영방안 설계

2. 연구의 방법

1) 질적분석방법(Qualitative Method)

■ 문헌조사분석

- 조직진단의 필요성과 요소별 내용 등에 대한 기존논의를 고찰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을 활용하는 문헌조사 방법을 적용
- 경기도 용진군의회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기존의 대응전략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문헌을 광범위하게 활용함

■ 심층면접조사분석

- 경기도 용진군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실태와 개편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 및 면담 조사를 수행함
- 설문 및 면담 조사 대상은 경기도 용진군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실태에 관해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기도 용진군의회사무국 소관 부서별 부서장(팀장) 및 담당자임

2) 양적분석방법(Quantitative Method)

■ 1차 자료수집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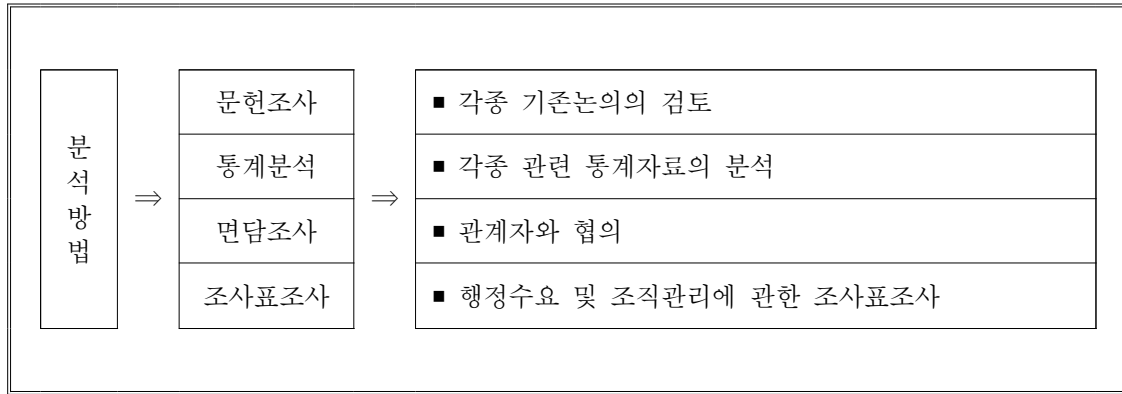
- 조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표 조사를 수행함
- 조사표 조사는 경기도 용진군 의회사무국의 각 부서별 기능 수요 추이, 기능 배분, 인력 규모 등 조직진단의 핵심요소를 대상으로 하나 타시군의회 사례를 많이 참고함



II 2차 자료수집 및 분석

- 경기도 용진군 의회사무국 기능수행 환경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함

[그림 1-2] 연구수행방법



3) 연구수행체계

II 여건변화 분석

- 경기도 용진군 의회사무국의 공공행정 서비스 수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경기도 용진군의 관련 통계자료의 변화를 분석함
- 중점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고려로써 경기도 용진군 의회사무국의 비전체계에 관해 검토함

II 공급수준 분석

- 경기도 용진군 의회사무국의 주요 기능별 공급수준을 분석하고, 현행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의 한계를 도출함
- 미래 환경의 메가트렌드에 관한 분석을 통해 경기도 용진군 의회사무국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방향성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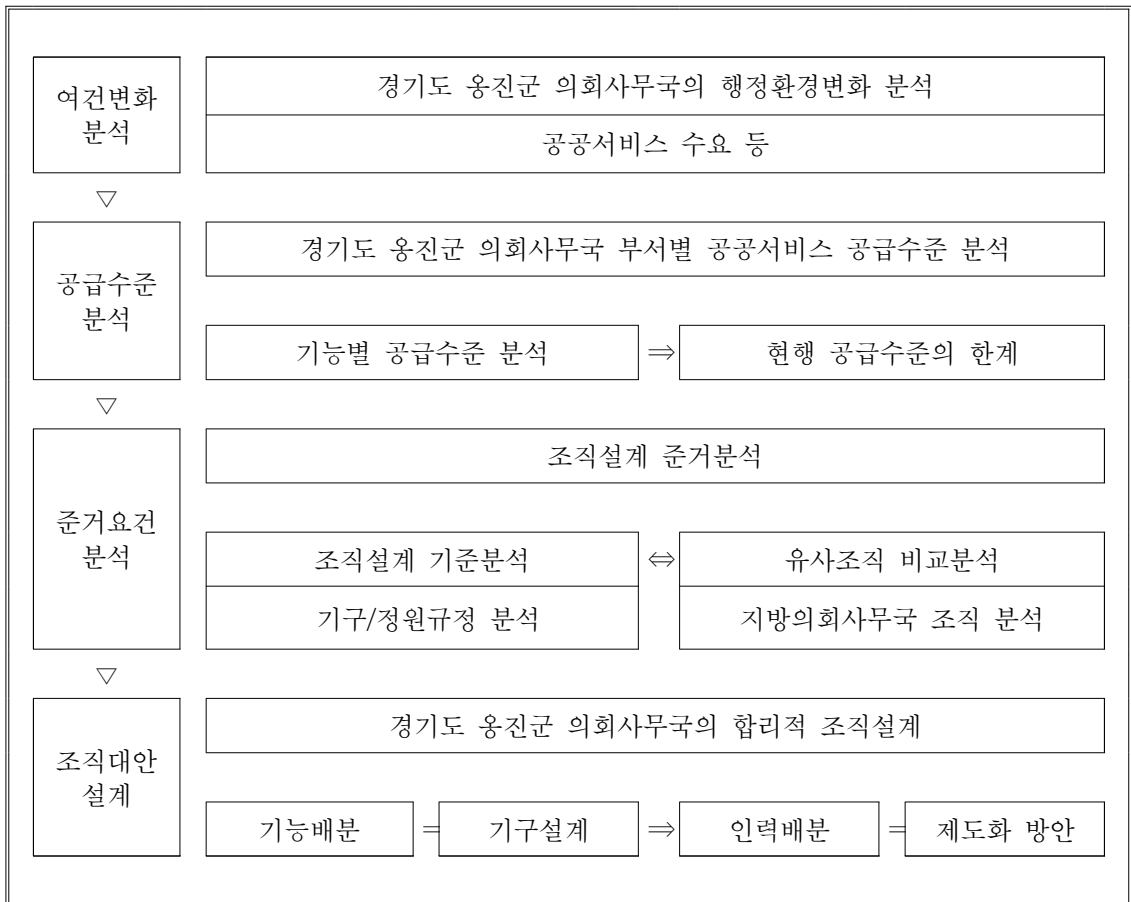
II 준거요건 분석

- 유사기관에 관한 비교분석을 수행함
 - 유사기관에 대한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중 설립목적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기도 용진군 의회사무국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조직을 선정함
 - 경기도 용진군 의회사무국 조직과 다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비교분석은 인력구조 및 운영현황, 예산규모, 업무 영역 등을 대상으로 함
 - 선정된 국내·외 비교대상 기관의 기능배분, 인력배분, 조직체계 등에 관해 비교·분석함

■ 조직대안 설계

- 조직대안은 경기도 용진군 의회사무국의 조직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설계함
- 조직대안의 설계에 포함되는 경기도 용진군 의회사무국의 제(諸)조직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능분석결과, 직무분석결과 등임
 - 기능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기구를 설계하고,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설계된 기구개편안에 인력을 배분함

[그림 1-3] 연구수행체계





제2장 지방의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의회의 개요

1. 지방의회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를 말함
-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意思)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적 의사기관(議事機關)이라는 성격을 가짐
- 지방의회의 존재 양태 및 기능은 각국의 자치 전통에 따라 다름
- 지방의회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지방의사의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을 한 기관에 귀속시키는 기관통합형 의회제와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키는 기관분립형으로 나누어 짐
-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폐회,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의결권 이외에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담당

2. 지방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1) 헌법

-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제118조 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 제37조 - 제71조

-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3)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규칙

- 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 위원회 조례
-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3. 지방의회의 유형

- 지방자치단체는 의사결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결기관[지방의회]과 결정된 의사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
 - 나라에 따라 의사결정의 기능과 의사집행의 기능을 단일의 기관에 귀속시켜 놓는 경우도 있고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놓는 경우도 있음
 - 전자를 기관통합형이라고 하고, 후자를 기관분립형(기관대립형)이라고 함

1) 기관대립형

- 기관대립형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각각 설치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구조로 단체장에 부여되는 권한 및 책임의 집중 정도에 따라 단체장 중심형(강시장-의회형), 단체장 권한분산형(약시장-의회형)으로 분류됨
- 단체장에게 부여되는 권한 및 책임의 집중도는 국가별 정치사회적 맥락 및 법규정에 따라 편차가 큼
 - 독일은 이원제 시장형(Dualistische Bürgermeisterverfassung)
 - 독일의 비전형 참사회형(Unechte Magistratsverfassung)의 경우,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은 행정권과 관련한 권한만을 가지며, 이외의 다른 권한들은 합의제 기관인 참사회(Magistrat)가 수행함
 - 미국은 시장-의회형

■ 단체장 중심형(Strong Mayor-Council Form)

- 단체장 중심형은 단체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킨 기관구성의 형태로,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행정적 수장인 동시에 단일 정치 수장으로서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의례적 기능을 수행함
-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이에 따른 예산편성권 및 예산집행권, 의회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는 폭넓은 인사권 행사가 가능함
- 행정권을 단체장에게 집중시키므로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용이함
- 시민에 의해 시장이 선출되므로, 시민의 여론을 가장 직접적으로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음
- 단체장은 의회에 안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입법과정 또는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의회를 통과한 안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되어 제왕적 자치단체장이 나타날 수 있음
- 만약 단체장이 정치적 기능에 집중할 경우, 행정의 안정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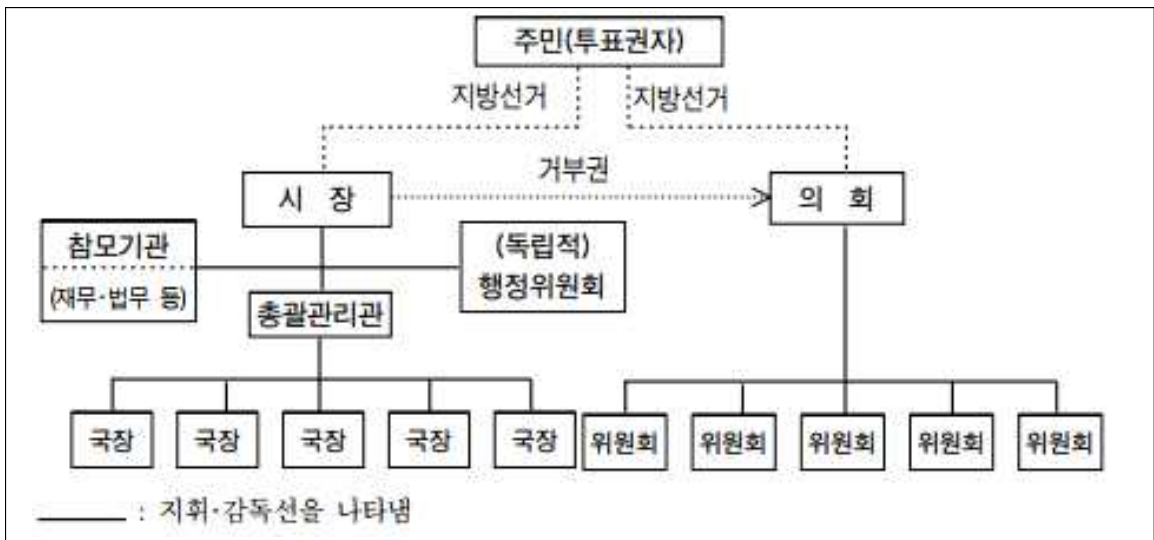


- 단체장-지방의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발생 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약시장형에 비해서는 그 가능성이 낮음
- 한국을 비롯한 미국 및 세계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지방의회 유형임

<표 2-1> 단체장 중심형(강시장형)의 특징

구분	단체장 중심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의결기관을 별도로 구성 • 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의 수장이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 권한의 크기: 단체장 > 지방의회 - 단체장의 권한: 집행기관에 대한 인사·조직·지휘·감독·조사권, 행정입법권, 거부권 등 • 시민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함에 따라 막강한 권한·책임을 가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리더십의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 책임소재의 명확화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회 간의 갈등으로 집행 지연 발생 또는 행정비효율 발생 가능(상대적으로 약시장형보다는 가능성이 낮음) • 단체장이 정치적 문제에 집중할 경우 행정 안정성 확보 미약 •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

[그림 2-1] 단체장 중심형(강시장형)



■ 단체장 분산형(Weak Mayor-Council Form)

- 강력한 행정통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기관구성의 형태임
- 자치단체장으로의 권력 집중을 막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음
- 지방의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과 행정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등, 자치단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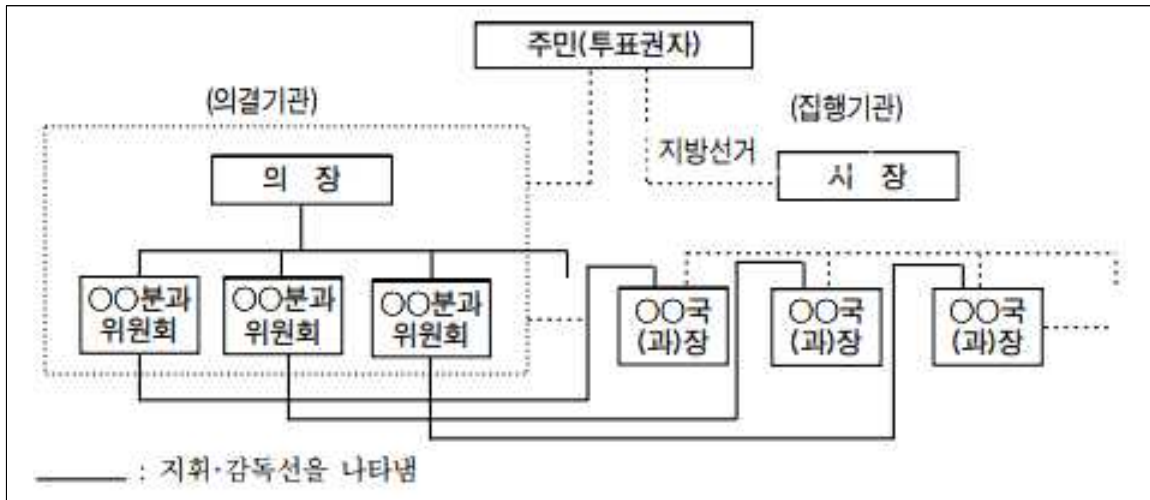
에게 집중된 권한을 의회에 분산하여 운영함. 따라서 단체장은 부서 및 기관들의 활동을 조정 또는 조율하거나, 기관장을 임명할 권한에 제약을 받음

- 의회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집행부를 감독함. 예를 들어 의회 소속 위원회가 담당 업무별로 집행부를 각각 지도 및 감독하며, 단체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의회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므로, 시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됨
- 단체장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공무원들이 시민의 직선으로 선출되므로, 단체장의 인사권이 축소되고,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수가 제한적인 반면, 시민의 참여범위는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음
- 단체장은 의회에 대한 거부권을 갖지 않거나, 거부권을 갖더라도 제한적임
- 지역의 토호세력이나 재력가들에 의한 정치적 조작과 통제가 발생될 수 있음
- 과거 미국의 소도시들에서 운영되었고 일부 도시에서 아직 활용되고 있는 형태임

<표 2-2> 단체장 중심형(약시장형)의 특징

구분	단체장 분산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의결기관을 별도로 구성 • 단체장 중심형(강시장형)의 강력한 행정통치 견제를 위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협력관계를 형성 • 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의 수장 • 권한의 크기: 단체장 ≙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의 권한: 고위공직자 인사권, 행정운영 감독권, 단체장 해임 건의권 등 - 단체장 권한 견제를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시민이 단체장, 다수의 주요 공무원을 직접 선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선출범위 및 시민에 대한 의견수렴 기회가 확대되어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행정통제능력이 낮아져 효율성이 저하 • 단체장-의회 간의 갈등으로 집행 지연 발생 또는 행정비효율 발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강시장형보다는 가능성이 높음) • 지역 토호세력이나 재력가들의 정치적 조작 및 통제 가능성

[그림 2-2] 단체장 분산형(약시장형)



2) 기관통합형

- 기관통합형은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 어느 정도 통합되었는지에 따라 의회중심형, 책임행정관형, 위원회형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기관통합형은 기관대립형과 비교할 때,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통합수준에 따라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입법기관인 의회가 스스로 내각을 구성하여 집행부를 통할하는 의회중심형(영국의 리더-내각형)
 - 의회가 행정전문가를 채용 또는 임명하여 집행기관을 통할하게 하는 책임행정관형(미국의 의회-관리자형)
 - 소수의 위원회가 입법기관 및 집행기관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위원회형(미국의 위원회형)으로 구분됨
- 단체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 뽑되, 단체장이 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영국의 시장-내각형, 독일의 남독일 시장형(Süddeutsche Bürgermeisterversaffung), 의회형(Ratsverfassung) 등 경우 시장이 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기관통합형 중 하나인 의회중심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기관대립형 중 하나로 단체장 내각형이라고 정의하기도 함

■ 책임행정관형

- 시민이 지방의회만을 선출하고 지방의회가 책임행정관을 임명해 집행부를 운영하는 방식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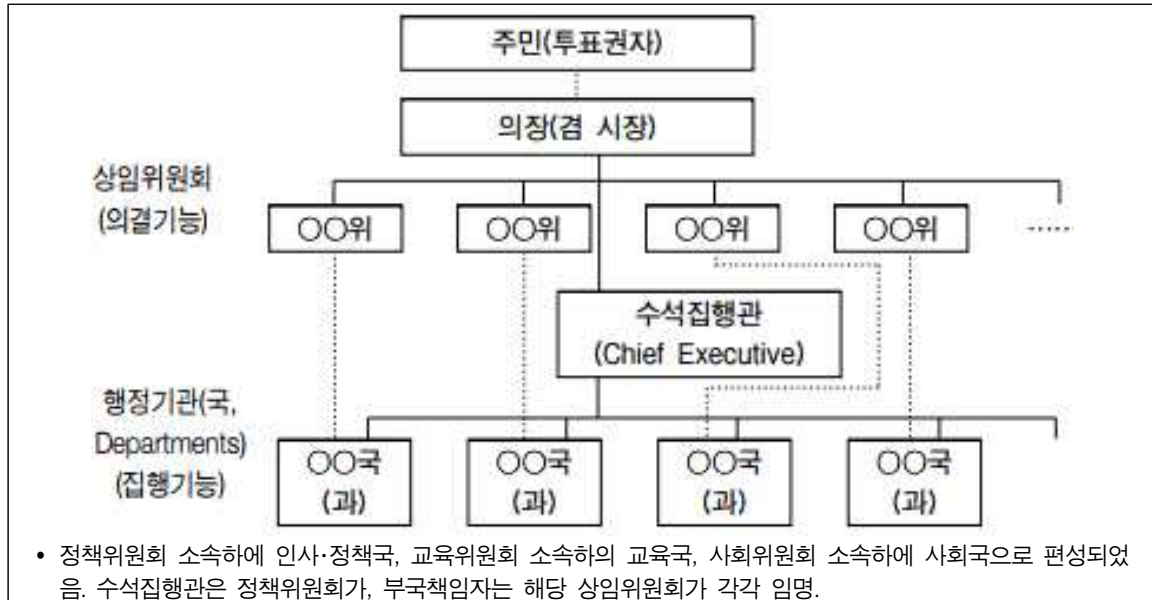
- 책임행정관형은 의회가 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모두 가지고, 의회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의원으로 구성된 내각(cabinet)을 운영함
- 지방의회가 책임행정관을 선임하여 책임행정관에게 집행기관 운영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임. 책임행정관은 자치단체 내 부서의 업무를 지시 및 감독하는 등 자치단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부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며, 책임행정관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단체장, 지방의회 및 의회의원이 관여할 수 없음
- 책임행정관에게 집행기관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책임행정관을 지방의회가 임명함으로써 단체장 중심형의 장점인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단체장 중심형의 단점인 인사비리, 방만한 재정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다수의 지방의원으로서 구성된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예방하고 정당 간 경쟁을 통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책임행정관은 결국 지방의회 의원에 의해 간선방식으로 선출되므로, 국민정서와의 괴리감 발생, 책임행정권 임면권이 지방의회에 있음으로 인한 정치적 편향 발생의 문제 등이 있음

<표 2-3> 책임행정관형의 특징

구분	단책임행정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집행기관+의결기관 • 지방의회가 책임행정관을 임명 • 책임행정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권한 부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 중심형의 장점인 행정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단체장 중심형의 단점인 인사비리, 방만한 재정운영 등의 문제 해결(의회의 견제) • 책임행정관-의회 간의 갈등발생가능성이 낮아 효율성 제고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행정관은 결국 지방의회 의원에 의해 선정되므로, 국민정서와의 괴리감 발생 • 책임행정권 임면권이 지방의회에 있음으로 인한 정치적 편향 발생의 문제 등이 있음 •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약화



[그림 2-3] 책임행정관형



■ 위원회형(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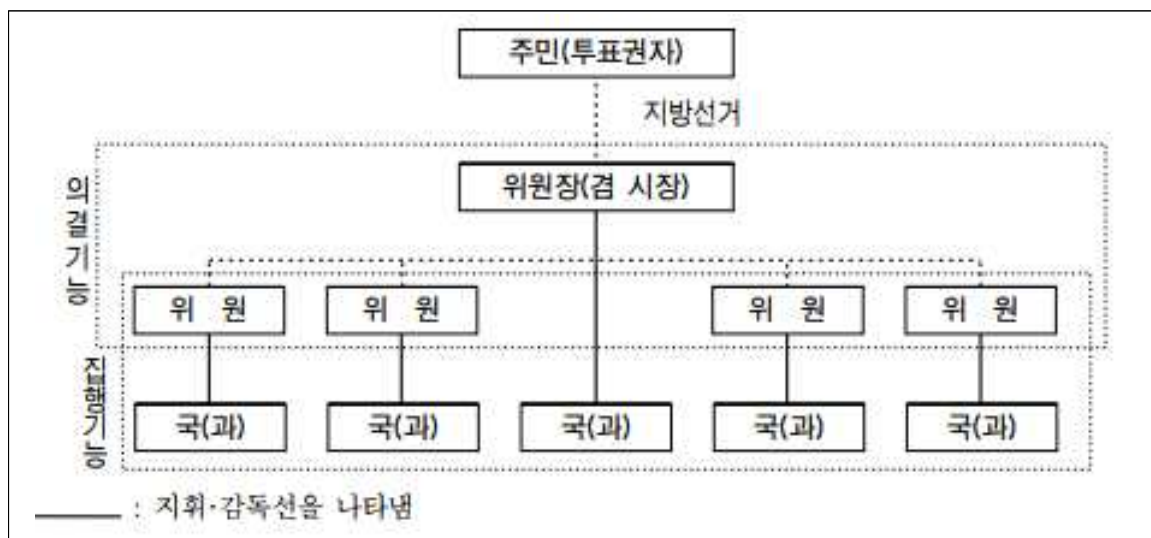
- 소수의 집행위원을 선출하여 집행위원회를 만들고 집행위원회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함. 집행위원 중 한 명이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함
- 대표적으로 1900년 미국 텍사스주가 허리케인으로 인해 복구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지방자치단체 운영방식으로, 20세기 초에는 약 500여개의 소규모 도시가 이 형태를 선택하였다가 현재는 감소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위원회에 집중시켜 운영하는 기관구성 형태로, 시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서의 수장 역할을 수행함(의회=집행기관)
-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서 선출되지만 행정수장이 아닌 상징적인 존재이고 의회에 대한 거부권을 갖지 않음
- 미국에서 시작된 기관운영의 형태이지만 현재는 미국 내에서도 많이 채택되고 있지 않음
 - 2011년 기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3% 이하 정도가 위원회형 기관구성을 채택하였고, 해당형태를 수용하는 단체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위원회가 입법 및 집행기관 역할을 수행하므로,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 정책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함
- 자치단체의 조직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 및 시정참여가 용이하여,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의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정치의 구현이 가능함

- 자치단체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력의 감소 등 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음
- 의회가 입법(조례의 제·개정) 및 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어렵고, 입법-집행기관이 단일기관이라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사안의 책임이 위원이 아닌 위원회에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 의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위원회의 경우, 다양한 이익집단을 대표하기 어렵고, 단체장의 리더십 발휘가 어려움

<표 2-4> 위원회형의 특징

구분	위원회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의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킴 • 집행기관=지방의회: 시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지방의회 위원이 집행부서의 장 역할을 수행함 •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중 선출(상징적 존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국가차원)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입법-집행기관 간 협조가 긴밀함 •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절감효과 •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용이 • 민주정치,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의결기관 간 견제가 어렵고,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특정사안의 책임이 개별위원이 아닌 위원회 전체에 있어 책임소재 불명확함 • 의원 수가 적어, 다양한 이익집단 및 지역의 입장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단체장이 상징적 존재로, 리더십 발휘가 어려움

[그림 2-4] 위원회형





4. 지방의회의 역할

-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국회와 차별적으로 지방정치 실현을 하는데 기여해 옴
- 중앙 정당정치에 예속된 상황하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한 입법 활동 및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의 통제기능을 점차적으로 강화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현 상황에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지방의회는 지방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적 근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제안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지방의회는 주민 중심의 자치활동과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 활동을 잇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현대 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큼
- 소수의 의원은 전체 구성원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은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으로 간주됨. 비록 현대사회에서 정책결정기구로서의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집행기구인 행정부의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기능은 국가적 차원의 법률과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구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음
- 지방의회는 지방정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기관임
-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합의체이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라는 차원에서 지방의회는 지방 정치과정의 중심임
- 지방의회는 법적인 권한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단체장에 대한 공식적인 견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형식적인 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균형적인 권력관계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제왕적 권한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 통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비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임
- 많은 단체장이 국회의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고위 관료 출신으로서 지방정치에 있어서 어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해 옴
- 이러한 측면이 나타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치구조가 중앙정치에 귀속되어 지방정치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지방의회에서의 갈등의 해소와 의회 활동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음

- 정당정치 입장에서는 정당의 원칙이나 당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면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치 차원에서도 지방의원들의 개인적인 의사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내에서의 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함
- 현 단계에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즉 비례제 강화를 통한 다양한 정치세력 유입 및 정당정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함
- 민주정치의 핵심이 의회에 있다면, 의회정치의 핵심에는 정당이 있음
- 지방 정당이 강화되고 정당과 의회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지방의회의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음

5.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1) 지방의회의 조직

- 지방의회는 그 지방주민의 직접·평등·보통·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조직됨
- 의원의 임기(任期)는 각 나라마다 다양하나 3년 또는 4년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는 4년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보수는 명예직 무급주의와 전무직 유급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유럽에서는 명예직 무급주의(無給主義)를, 미국에서는 전무직 유급주의(有給主義)를 채택함
- 지방의회의 기관에는 의장단과 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장단(議長團) 구성을 보면,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 종류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의 2종으로 하고 있음
 -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議政活動)이나 의사운영 및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를 두기도 함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비록 필수기구는 아니나 광역시·도의회에 사무처를, 시·군·구의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설치하고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지방의회의 운영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의 소집은 의장이 하는 것이지만 선거 직후 최초의 임시집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함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정례회의 집회일이나 그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함
- 지방의회의 회기(會期)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는 나라와 제한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개최·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며,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에서의 의안의 발의(發議)와 그 정족수는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連書)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고,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그리고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는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이나 의원 제명의결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회의(會議)는 어느 나라에서나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은 규정하고 있음

6.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
- 광역의회(시·도)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사무처를, 기초의회(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설치 가능하며, 각각 사무처장, 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 제2항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103조 제1항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2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 통상 지방의회는 사무처/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사무처/국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의회사무처/국장 밑에 보통 공보담당관, 총무담당관,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등을 두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4조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시도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보면,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실,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고 있음. 총무담당관은 총무, 공보, 경리, 관리담당, 의사담당관은 의사, 의안, 기록담당, 입법정책담당은 입법, 정책담당이 설치되며,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이 있음
- 시군구 기초의회는 사무국(과)장을 중심으로 의사담당과 의정담당, 정책지원담당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세분화되어 설치되기도하나 대부분 3부분으로 구분되어 조직 운영되고 있음

<표 2-5>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한국과 일본의 비교)

기능	한국(서울시)	일본(동경도)	주요기능
공보 홍보	공보담당관실	관리부 홍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 의정정보화·의회홍보지 등 간행물 제작 총괄 • 의회자료실·의회홈페이지 운영 • 영상홍보물·보도자료 제작 총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용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체계 개선연구

기능	한국(서울시)	일본(동경도)	주요기능
의정	총무담당관실	관리부 총무과 관리부 경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회 정책협의회의·의원행사·행정감사 업무 • 표창·재산등록·상시학습 업무 • 예산·후생복지 • 의전행사 계획수립·수행 • 결산·회계업무 • 도의회 청사관리 총괄
의사	의정담당관실	의사부 의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회의시스템 운영·관리 • 본회의 준비 및 의사진행 보조 • 청원 및 행정사무감사 지원 • 의안정보시스템 관리 • 회의록 작성·발간업무 총괄
입법 지원	입법정책 담당관실	조사부 조사정보과 의사과 의안법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학술연구용역 담당 • 의회운영 및 특별위원회소관 입법 지원 • 조례안 발굴·검토·수정 지원
의원 보좌	전문위원실	조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검토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제공 및 질의자료 제공 • 의사 진행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 등의 운영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 구성과 운영

- 사무직원의 인사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임용권자를 보면,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법(2021.10.8.)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임(지방공무원법 제6조)
 -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짐
 - 조례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함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며, 사무직원은 의장이 임명함(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절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변천

1. 지방의회제도의 변화

1) 제1기 지방의회

-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틀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마련되었으며, 이후 「지방자치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짐
- 제1기중인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정기회의 회기와 관련하여 매년 12월 1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는 매년 11월 20일에 시·군·자치구는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의회의 정기회 회기를 30일에서 35일로 변경함
- 또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안건의 심의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제출 요구시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음
- 1994년 3월 16일 개정에서는 지방의원의 명예직 제도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지방의정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이 모색됨
- 이에 따라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월 의정 활동비로 지급됨

2) 제2기 지방의회

- 제2기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제도적인 변화는 없으나, 제1기 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1995.4.1.)을 통하여 시·도의원의 비례대표제가 도입됨
-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 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였고, 산정된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정함
- 1988년에는 고비용정치구조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동법 개정(1988.4.30.)을 통하여 지방의원 정수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조정이 이루어짐



3) 제3기 지방의회

-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1999. 8. 31)에서는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있게 심의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 제고를 위하여 연 2회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제도적인 변경이 이루어짐
- 이에 따른 결산일정이 일부 조정되었고,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전환되었으며,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만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위원회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이를 명문화시킴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에 대한 제척대상 범위를 종래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확대하여 관련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책임성 강화방안이 아울러 모색됨

4) 제4기 지방의회

- 제4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의회 제도 및 운영상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우선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2003.7.18.)에서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2005년 개정(2005.1.27.)에서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모색하였음
-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위법한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통제강화가 이루어졌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및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성 차원의 조치가 반영됨
- 제4기 말인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2006.4.28.)에서도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측면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짐
-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방안이 모색됨

5) 제5기 지방의회

- 제5기의 제도변화(「지방자치법」 2009.4.1. 개정)는 특히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반영됨
-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에 부응하기 위함임
- 지방의원 겸직금지의 범위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까지 확대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 휴직하도록 하며, 지방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위 외의 직위를 겸직할 때도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직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6) 제6기 지방의회

- 제5기 지방의회의 제도 변화가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둔 데 비하여 제6기(「지방자치법」 2011.10.15. 개정)에서는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둠
- 대 집행부 견제역량 제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여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거 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임시회 소집공고일 단축,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도 도입,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둠
- 2014년 「지방자치법」 개정(1.21)에서는 종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고 규정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로 하여 지방의회의 성격을 구체화함
-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명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짐

7) 제7기 지방의회

- 제7기 기간은 기존에 설계된 지방의회제도의 틀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별도의 제도적인 변화는 없었음



8) 제8기 지방의회

- 제8기인 2021년 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1.12, 시행 2022.1.13.)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지방의회의 과제로 제기되었던 많은 부분의 제도 변화가 추진됨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직급·직무·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규정),
-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및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정례회 집회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이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었고, 임시회 소집 요구(재적의원 1/3 이상 →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의안 발의(재적의원 1/5 또는 10명 이상 →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역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경됨
- 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됨(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 처리,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04조)
- 이상과 같은 전문성/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임성 제고 측면의 제도보완 역시 아울러 이루어졌는데,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조항 정비(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대상기관·단체, 사무위탁 수행 기관·단체 등 조항 신설), 의원 겸직 신고 내용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 의장은 겸직행위가 의원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때 사임 권고를 비롯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 이 개정안은 일부 조항의 시행령 등 관련 조치의 마련을 통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표 2-6> 지방의회의 주요 제도변화 내역(지방자치법)

지방의회 회기	개정	지방회의 운영에 대한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접근
제1기 (1991. -1995.6)		•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의회부문 적용	
	1991.12.31	• 정기회 집회일, 회기일수 변경 • 관계기관 관련서류 등 제출 요구권	자율성 강화 전문성 강화
	1994. 3.16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전문성 강화
	1995. 4. 1	• 광역의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	전문성 강화
제2기 (1995.7-1998.6)	1998. 4.30	• 지방의원 정수 축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회기	개정	지방회의 운영에 대한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접근
제3기 (1998.7-2002.6)	1999.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전환 •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회 제도 도입 • 지방의회 위원회의 의안발의권을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 의장 및 의원에 대한 제척대상 범위 확대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 책임성 강화
제4기 (2002.7-2006.6)	2003.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의원 명예직 규정 삭제 	
	2005.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 • 주민소송제도 도입 • 위법한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통제 강화 	전문성 강화 책임성 강화 책임성 강화
	2006. 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제 도입(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 회기 중 지급하던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제도 폐지 • 지방의회 회기운영 및 상임위원회 설치 자율화 • 지방의회 위원회 전문위원 증원 • 전문위원 제도 확대 • 지방의회 사무직 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에 위임 •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조례 제정 의무화 	전문성 강화 책임성 강화 자율성 강화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 책임성 강화 책임성 강화
제5기 (2006.7-2010.6)	2009.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금지 확대 •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임기 중 휴직 보장 •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책임성 강화 책임성 강화 책임성 강화
제6기 (2010.7-2014.6)	2011.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 서류제출 거부 및 선거거부 등에 대한 벌칙 신설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 마련 • 임시회 소집공고일 단축,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도 도입 •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도입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
	2014.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의 대의기관 명문화 	자율성 강화
제7기 (2014.7-2018.6)		변화없음	
제8기 (2018.7-현재)	2021. 1.12. (2022.1.13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정례회 집회일, 임시회 소집 요구, 의안 발의 조례 위임 • 의회사무기구 직원인사권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조항 정비 •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전문성 강화 자율성 강화 자율성 강화 책임성 강화 책임성 강화



2. 지방의회 구성의 변화

1) 지방의회 의장단, 위원회 구성 및 의원정수

■ 의장단

- 지방의회 의장단의 구성은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의장 1인,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의장 1인, 부의장 1인으로 구성됨
- 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에 의하며, 임기는 2년임
- 의장단의 구성방식은 제정 지방자치법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각 1인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의장(1인), 부의장(광역의회 2인, 기초의회 1인)의 구성방식과 임기가 개정되었고, 이 기준은 제1기 지방의회에서부터 현재의 제8기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 역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당시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제1기 지방의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현재 제8기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경우도 제1기 지방의회에서 제8기 지방의회까지 내용상 변화는 없으며, 1988년 개정된 사항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 위원회

- 지방의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제정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의 선거는 의회에서 행한다 (제정 「지방자치법」 제31조)” 조항에 기반하여 이루어 짐
- 1988년 전면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여 규정함
- 상임위원회의 경우 당초 시·도의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1년 개정을 통하여 시·군·구의회에도 설치가능하게 되었으며, 2006년 개정에서는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대한 제한규정이 폐지됨
- 특별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달리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특별위원회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음)

〈표 2-7〉 위원회 운영관련 주요변화 및 회기별 상임위원회 수

지방의회 회기	위원회관련 주요개정(지방자치법)		상임위원회	
	개정일	개정내용	시도	시군구
제1기 (1991. -1995.6)	1991.12.31	• 종래 지방자치법(1988년 개정)의 위원회 설치근거(조례), 위원회 종류(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회), 기타(상임위원회 설치하는 시도의회에 한함)의 규정 중 위원선임(본회의에서 선임)과 기타(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부분 개정	-	-
제2기 (1995.7-1998.6)			102	513
제3기 (1998.7-2002.6)			90	404
제4기 (2002.7-2006.6)	2006.4.28	•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대한 제한규정 폐지 •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94	407
제5기 (2006.7-2010.6)			98	455
제6기 (2010.7-2014.6)			98	501
제7기 (2014.7-2018.6)			111	542
제8기 (2018.7- 현재)	2021.1.12	•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114	539

* 출처: 해당 연도 지방자치법; 상임위원회수는 해당 연도 행정안전부(구 내무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조직편람(제1기 자료부재, 제2기 1997.7.15. 기준, 제3기 1999.12.31. 기준, 제4기 2004.1.1. 기준, 제5기 2008.1.1. 기준, 제6기 2012.1.1. 기준, 제7기 2015.12.31. 기준, 제8기 2019.12.31. 기준).

Ⅰ 의원정수

- 지방의원 정수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29조에 기초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음(「공직선거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각각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 정수기준을 규정)
- 지방의회의원의 산정기준은 행정구역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더하여 인구적인 요인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경우 해당 특별법에 의하여 조례로 산정



<표 2-8> 지방의회 의원정수 제도변화수

구 분	근거법령	기준	시·도의회 의원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제1기 (1991.- 1995.6)	지방의회의 원선거법 (1991)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마다 3인(인구 30만을 넘는 자치구·시·군에 있어서는 30만을 초과하는 때 20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 미만이 되는 자치구·시·군은 2인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마다 1인(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2만을 초과하는 때 2만 까지 마다 1인을 더함)
		하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할시 23인, 도 17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인 이상(단, 45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45인으로, 인구 70만을 초과하는 구·시·군의 정수는 50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 지법 (1994.3.16. 제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법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법과 동일
		하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법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법과 동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 지법 (1995.4.1. 개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법과 동일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 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법과 동일 (단, 읍면동수가 45개[인구 70만 이하] 또는 50개[인구 70만 이상]를 넘는 경우 읍면동마다 각 1인으로 함)
		하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시 23인/도 17인 비례대표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법과 동일
제2기 (1995.7- 1998.6)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 지법 (1998.4.30. 개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자치구 마다 각2인 (하나의 시·군·자치구가 2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마다 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행정동) 마다 각1인 (단, 인구가 5천명 미만인 경우 인근 읍·면·동과 합하여 1인 선출)
		하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구 14인/비례대표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법과 동일
3기 (1998.7- 2002.6)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 지법 (2002.3.7. 개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법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행정동) 마다 각1인 (단,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
		하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구 16인/비례대표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법과 동일

구 분	근거법령	기준	시·도의회 의원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4기 (2002.7- 2006.6)	공직선거법 (2005.8.4. 개정)	기준	• 위 법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함 •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하한선	• 위 법과 동일	• 위 법과 동일
5기 (2006.7- 2010.6)	공직선거법 (2010.1.25. 개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시·군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정 •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 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 	• 위 법과 동일
		하한선	• 지역구 19인/비례대표 3인	• 위 법과 동일
6기 (2010.7- 2014.6)	공직선거법 (2010.3.12. 개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법과 동일 ※ 11% 범위내 조정 가능 	• 위 법과 동일
		하한선	• 위 법과 동일	• 위 법과 동일
	공직선거법 (2014.2.13. 개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법과 동일 ※ 14% 범위내 조정 가능 	• 위 법과 동일
		하한선	• 위 법과 동일	• 위 법과 동일
7기 (2014.7- 2018.6)	공직선거법 (2018.3.9. 개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법과 동일 ※ 선거구역표(별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법과 동일 ※ 총정수표(별표) 조정
		하한선	• 위 법과 동일	• 위 법과 동일
8기 (2018.7- 현재)	공직선거법 (2021.3.26. 개정 기준)	기준	• 위 법과 동일	• 위 법과 동일
		하한선	• 위 법과 동일	• 위 법과 동일

* 출처 : 해당연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 제1기의 경우 기존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제시된 산정기준에 의하여 의원정수가 정해졌으나, 1기중 선거관련법들이 통합되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제정(1994.3.16.)됨에 따라, 동법에 동일 내용의 지방의원정수 관련사항이 규정됨



- 1기말인 1995년 동법 개정(1995.4.1.)을 통하여 시·도의원정수에 비례대표(지역구 의원정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가 도입되었고, 시·군·구의회 의원정수 기준 중 단서조항이 변경되어(읍·면·동수가 45개[인구 70만 이하] 또는 50개[인구 70만 이상]를 넘는 경우 읍·면·동마다 각 1인으로 함),
- 이 규정에 의하여 제2기 의원정수가 정해짐
- 제2기 말인 1998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4.30)에서는 고비용정치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의원 정수에 대한 축소조정이 이루어짐
- 지역구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의원정수는 당해 자치구·시·군별 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로 3인으로 하던 것을 2인으로 축소하고, 동 정수의 하한선을 광역시의 경우 23인, 도의 경우 17인에서 동일하게 14인으로 함
- 기초자치단체의회의 의원 선출시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2만을 초과하는 때 2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하여 선출하던 기준을 폐지하여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되, 인구 5천인 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과 선거구를 통합하여 선출하도록 함
- 제3기는 이 기준에 의거하여 의원정수가 정해짐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의원정부가 제2기 5,513인에서 제3기 4,180인으로 정수의 대폭적인 축소가 이루어짐
- 제3기 역시 임기말인 2002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3.7)이 이루어져, 시·도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 제도가 도입됨
- 지역구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의원정수는 하한선을 14인에서 16인으로 상향 조정함
- 기초자치단체의회의 의원 선출시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기준에 의하여 제4기 의원정수가 정해짐
- 제4기인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구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회의원 정수 산정기준이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바뀜
-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회에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정수는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함
- 이 개정기준에 의하여 제5기 지방의원정수가 정해짐
- 제5기인 2010년 1월 25일 다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를 자

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구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의원정수는 하한선을 16인에서 19인으로 상향 조정함
- 이 개정기준에 의하여 제6기 지방의원정수가 정해짐
- 제6기에는 앞서 제5기 말인 2010년 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시·도의원정수가 증가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의원정수 변동이 반영됨
- 제7기 지방의원정수는 여기에 대응하여 적용됨
- 제7기인 2018년(3.9)에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시·도회의의원 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그동안의 인구 변동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짐
- 이 개정기준에 의하여 제8기의 지방의원정수는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선거구역표를 조정하였으며,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총정수표를 조정함

<표 2-9> 지방의회 의원정수 변화

구분	총계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계	지역구	비례대표	계	지역구	비례대표
제1기	5,170	866	866	-	4,304	4,304	-
제2기	5,513	972	875	97	4,541	4,541	-
제3기	4,180	690	616	74	3,490	3,490	-
제4기	4,167	682	609	73	3,485	3,485	-
제5기	3,626	738	660	78	2,888	2,513	375
제6기	3,731	843	762	81	2,888	2,512	376
제7기	3,692	794	710	84	2,898	2,519	379
제8기	3,751	824	737	87	2,927	2,541	386

* 출처: 1~7기는 행정안전부, 제7기 지방의회백서; 8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인력

-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의 사무기구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기반하여 시·도의회는 의회사무처를 두고 시·군·구의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1기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사무처와 사무국, 사무과가 설치되었고, 제2기인 1997년 2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회사무기구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후의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 설치기준은 이 규정에 따르고 있음
- 제3기와 제4기 동안은 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설치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설치 여부(동규정 1998.8.31. 개정)에 의하여 정해졌고, 제4기 말인 2006년 6월 지방의원 정수 10인 기준여부(동규정 2006.6.29. 개정)로 개정됨에 따라 제5기와 제6기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됨
- 제7기와 제8기 중에 각각 동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의회사무국의 설치기준이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자치구와 함께 실국을 둘 수 있는 군까지 확대 및 조정 적용됨(동규정 2016.12.30. 개정, 2020. 3.10 개정)

<표 2-10>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지방의회 회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도 의회 사무기구		
		의회사무처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과
제1기 (1991. -1995.6)		-	-	-
제2기 (1995.7-1998.6)	1997.2.4	• 특별시·광역시·도	• 자치구 및 국이 설치된 시	• 군 및 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
제3기 (1998.7-2002.6)	1998.8.31	• 특별시·광역시·도	•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자치구	• 군 및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자치구
제4기 (2002.7-2006.6)	2006.6.29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자치구	• 군 및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미만인 시·자치구
제5기 (2006.7-2010.6)		”	”	”
제6기 (2010.7-2014.6)	2012.6.29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

지방의회 회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도 의회 사무기구	시·군·구 의회 사무기구	
		의회사무처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과
제7기 (2014.7-2018.6)	2016.12.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또는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면서 별표 3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있는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이거나, 별표 3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
제8기 (2018.7-현재)	2020.3.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는 군

* 출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당 연도, 별표.

* 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회사무기구 기준은 1997. 2.4 신설

* 주 : 제1기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구성

-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의 사무기구 내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기준과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시·도의회는 사무처를 두고 그 아래 업무별 담당관, 전문위원 등을 두고 있고, 시·군·구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설치하고, 그 아래 업무별 담당 및 전문위원 등을 배치하고 있음
- 시·도 의회사무처와 시·군·구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과의 각 회기별 사무기구 공무원 총수변화는 아래 표에 제시하는 것과 같음

<표 2-11>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정원: 1기

구분	기구									정원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			계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
	과	계	전문위원	계	전문위원	과	계	전문위원					
1기	31	65	97	81	72	14	228	228	4202	870	840	2492	

* 출처: 내무부, 지방행정기구(1992.4.1. 기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기구, 지방행정조직편람(제1기 1992.4.1. 기준, 제2기 1997.7.15. 기준, 제3기 1999.12.31. 기준, 제4기 2004.1.1. 기준, 제5기 2008.1.1. 기준, 제6기 2012.1.1. 기준, 제7기 2015.12.31. 기준, 제8기 2019.12.31. 기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용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체계 개선연구

<표 2-1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정원: 2기~8기 시·도 의회

구분	계	처장	담당관	전문위원	담당	정책자문 위원	사무직원
2기	1,299	16	34	107	126		1,016
3기	1,183	16	31	94	101		941
4기	1,218	16	32	94	104		972
5기	1,503	16	38	161	141	-	1,147
6기	1,543	16	46	152	149	14	1,166
7기	1,731	17	51	152	167	22	1,322
8기	1,954	17	56	156	195	22	1,508

- * 출처: 내무부, 지방행정기구(1992.4.1. 기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기구, 지방행정조직편람(제1기 1992.4.1. 기준, 제2기 1997.7.15. 기준, 제3기 1999.12.31. 기준, 제4기 2004.1.1. 기준, 제5기 2008.1.1. 기준, 제6기 2012.1.1. 기준, 제7기 2015.12.31. 기준, 제8기 2019.12.31. 기준).
- * 주 : 시도의회 사무기구의 담당수에서 공보담당에 있는 경우 공보담당 포함.
- * 주 : 시도의회 전문위원은 5급 이상만 포함(기타는 사무직원에 포함).
- * 주 : 시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경우 6기는 제주도 14인, 7기와 8기는 서울 1인, 제주 21인임.

<표 2-13>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정원: 2기~8기 시·군·구 의회

구분	계	사무국장	사무과장	전문위원	담당관	담당	직원
2기	3,983	133	103	556	-	385	2,806
3기	3,559	112	120	478	-	381	2,468
4기	3,672	112	124	490	-	393	2,553
5기	3,997	118	123	619	-	442	2,695
6기	3,994	108	119	654	-	430	2,683
7기	3,998	111	115	657	3	449	2,653
8기	4,144	117	109	664	4	481	2,769

- * 출처: 내무부, 지방행정기구(1992.4.1. 기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기구, 지방행정조직편람(제1기 1992.4.1. 기준, 제2기 1997.7.15. 기준, 제3기 1999.12.31. 기준, 제4기 2004.1.1. 기준, 제5기 2008.1.1. 기준, 제6기 2012.1.1. 기준, 제7기 2015.12.31. 기준, 제8기 2019.12.31. 기준).

제3장 법·제도 및 사례분석

제1절 법·제도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법제

1) 조직관리법제의 목적 및 적용

■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은 지역고유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조직진단은 조직 관리의 법·제도의 범위 내에서 대안을 제시함
-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제도를 법령에 근거하여 개발·운영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제도는 기구설치와 정원관리에 초점을 둠

- 지방자치의 기본논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는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결정사항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구 및 정원은 증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조직관리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임

2) 조직관리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과 그 시행규칙에 근거함
- 동 규정은 기구관리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정원관리에 관한 내용까지 동시에 규정함
 - 동 규정은 기구·정원관리의 개요(제1장), 시·도 기구(제2장), 시·군·구의 기구(제3장), 의회사무기구와 직속기관 등(제4장), 기구·정원관리에 필요한 절차(제6장)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한 표준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기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도한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간의 상호 기능 중복을 배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편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정기구의 설치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을 고려하도록 함
 - 행정기구의 수행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절성을 고려하도록 함
 - 행정기구의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함
 -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통솔범위, 행정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기초자치단체의 기구관리

- 시·군·구의 분청에 두는 실·국과 명칭 및 사무분장,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을 제시함

<표 3-1> 실장·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 시·군·구 분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시·군·구 분청의 실장·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국·과·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의회사무기구에 대해서는 기구명, 공무원의 직급기준 및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의회사무기구는 2021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소관으로 전환된 바, 향후 집행부의 조직범위에서 벗어남
 -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중에 있는 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은 변화할 가능성이 큼

<표 3-2>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 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의회사무기구 명	설치대상
의회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며, 인구 10만 미만 구간의 기준적용을 받지 않는 군
의회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는 군

-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로 설치하며, 의회사무국장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의회사무과장은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함
-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의회사무기구는 하위행정기구로 과급기구를 설치할 수 없음

<표 3-3>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의회사무기구 명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군·구	-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시·도	서울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시·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법제

1) 정원관리법제의 목적 및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의 표준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 업무량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행정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정안전부는 2014년 3월부터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을 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지향함



2) 정원관리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근거함
 - 동 규정은 기구·정원관리의 개요(제1장), 정원책정의 기준과 계획수립 및 정원관리(제5장), 기구·정원관리에 필요한 절차(제6장) 등을 규정함

■ 정원관리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과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함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함
 -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해 신규 발생 행정수요에 대응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음

■ 정원관리의 일반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도록 함
-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함
-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되,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50%를 넘는 직위는 동일직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된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상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당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함
-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함

■ 정원관리의 특례

- 별정직정원,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 한시정원, 개방형 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 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의 특례를 부여함

<표 3-4> 정원관리의 특례

특례 사유	특례 내용
별정직 정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허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급 지방공무원의 우대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근무자 - 일반직 9급과 9급의 통합 운영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승진을 위한 정원의 통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한시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기구 설치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책정 및 한시기구 비설치의 한시정원 책정 - 한시기구 만료로 정원소멸 -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조정 불가 -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규정 - 한시기구 비설치 시의 한시정원은 최소 1년 이상의 업무량 존속 필요 -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 내에서 조례로 규정 -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국한
개방형 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직위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으로 지정된 직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가능 - 실·국장과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 대상 -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 대상
통합시 설치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시 설치 등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인구 100만명 이상이 된 시는 한시기구 설치 가능 - 한시기구에 두는 정원은 8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규정 - 다만,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는 10년의 범위로 존속기한 규정 - 한시정원의 감축수요 발생 시 한시정원 감축



Ⅰ 인력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함
 -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서 기본인력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함
 - 기본인력계획의 수립은 사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시·도 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함
 -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 결과를 통보하고,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함

<표 3-5> 시·군·구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원기준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정수	5급	6급 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20명 이하	4명 이내	2명	2명
25명 이하	5명 이내	3명	2명
30명 이하	6명 이내	3명	3명
35명 이하	7명 이내	4명	3명
40명 이하	8명 이내	4명	4명
45명 이하	9명 이내	5명	4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5명	5명
51명 이상	11명 이내	6명	5명

- 의회 전문위원의 정원은 2021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의 1/2 이내의 범위로 개정됨
- 직·사업소에 대해서는 지방농촌진흥기구, 사업소와 출장소 등에 대한 직급 기준을 관리함

〈표 3-6〉 시·군·구 지방농촌진흥기구 및 사업소의 직급기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장	과장·담당관	소장	과장·담당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농촌지도관		
사업소			4급 또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제2절 사례분석

1. 국회사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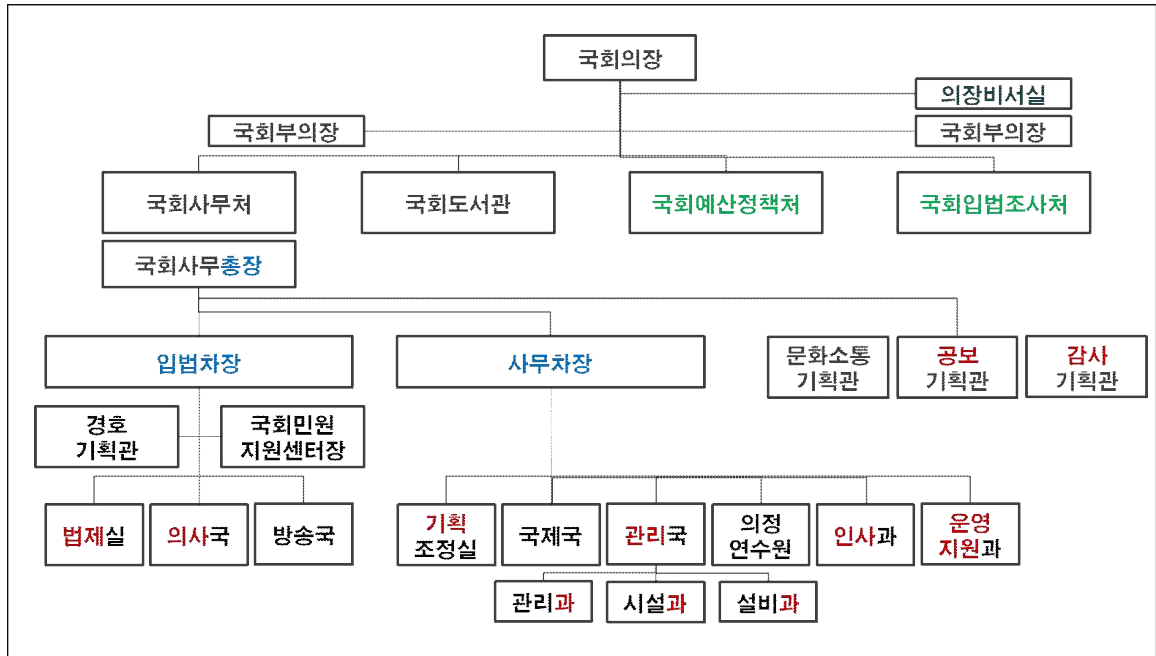
1) 조직구성

■ 국회사무처법

- 국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등에 관해 규정함
 - 국회사무처 조직의 기능 배분과 인사운영에 관해 규정함
- 국회사무처의 조직은 국회사무총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문화소통기획관, 공보기획관, 감사기획관임
 - 문화소통기획관, 공보기획관, 감사기획관 등은 국회사무총장의 참모조직임
- 국회사무처의 입법차장 소속 조직은 경호기획관,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법제실, 의사국, 방송국 등임
 - 경호기획관과 국회 민원센터장은 입법차장의 참모조직임
 - 법제실, 의사국, 방송국은 입법차장의 계선조직임
- 국회사무처의 사무차장 소속 조직은 기획조정실, 국제국, 관리국, 의정연수원, 인사과, 운영지원과 등임



[그림 3-1] 국회조직도



2) 기능배분

■ 국회사무처의 전체 기능

-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처리
-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 국회의 의원의교활동지원
-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 국회의 청사 관리·경비 및 후생
-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사업무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 국회사무처의 전체 기능

-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 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함
 - 입법차장은 입법보조 업무와 위원회 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함
 - 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함

■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의 기능

-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게 그 자료의 제공
-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 의사진행의 보좌
-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문화소통기획관의 기능

- 문화행사 등을 통한 국회활동 및 정책 관련 홍보
- 국회 참관의 종합 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
- 헌정기념관 운영
- 국회사료 등 헌정자료의 수집·편집 및 발간
- 미술품 관리

■ 공보기획관의 기능

- 주요 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보도계획의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취재의 지원, 국회 관련 언론보도의 분석·대응
-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계획 수립·시행
- 국회청사 내 취재질서의 유지

■ 감사관의 기능

-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사무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조사·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 경호기획관의 기능

- 국회의 경호 및 방호
- 국회의 방청
- 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 출입증의 발급·관리
-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의 기능

- 청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진정 및 행정민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의원회관 의정지원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 법제실의 기능

-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평가
-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
- 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

■ 의사국의 기능

-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 교섭단체·의석배정 및 위원선임 등에 관한 업무
- 위원회 일반행정업무 지원 및 회의상황 종합
- 의안 등의 접수·배부·회부 및 이송

-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작성·편집 및 발간
- 의정기록심의관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작성·편집 및 발간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함

■ 방송국의 기능

-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의 기능

-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각종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종합·조정
- 국회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 조직 및 정원 관리
-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제안제도의 운영
- 국회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등 소송사무의 총괄
- 국회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외)
- 국회 디지털정책 추진업무의 기획·조정 및 지원
- 사이버테러 예방·대응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사항
-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 국회 위기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국의 기능

- 의전
- 의회외교정책의 기획 및 총괄
- 외국의원 및 외빈의 초청·영접
- 통역·번역 등 외국어에 관한 사항
- 의원의 방문외교활동에 관한 사항



- 의회관계 의원연맹에 관한 사항
- 국외주재관의 업무지원
- 의회관계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조
- 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회소관 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

■ 관리국의 기능

- 국유재산의 관리
- 국회청사의 유지·보수관리 및 조경에 관한 사항
- 의원회관 일반관리
- 기계·전기·통신설비의 유지 및 보수관리
- 물품 관리
-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시설물 피해의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 의정연수원의 기능

- 교육훈련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교육과정의 기획 및 연구개발
-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 시민의정연수
- 고성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

■ 인사과의 기능

- 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 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 제도 및 운영·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공무원 평정 및 성과 관리
-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공무원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운영지원과의 기능

- 보안 및 관인의 관리

- 문서의 분류·배부 및 수발업무의 지원
- 국회의원의 등록
- 당직 관리
-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후생 및 복지
- 국고금의 집행·회계 및 결산
-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정원관리

■ 국회사무처 정원

- 국회사무처의 공무원은 정무직 4명, 별정직 2,222명, 일반직 1,316명 등임
 - 정무직 공무원은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 비서실장 1명 등임
 - 별정직 공무원은 국회의원보좌관 600명, 국회의원 비서관 600명, 국회의원비서 900명, 수석전문위원 19명, 수석비서관 5명, 비서관 21명, 비서 3명, 9급상당 별정직 74명 등임
 - 일반직 공무원은 별정직, 임기제, 전문경력관을 포함함

■ 정원의 통합관리

- 국회사무처는 인사관계규정으로 일반직공무원 9급~6급 및 이에 준하는 직급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함
-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함

■ 국회사무총장의 인사권 범위

- 국회사무총장의 인사권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에 한정함
 - 3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 2. 4·5급 공무원의 전직·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 전문경력관 가군 및 연구관의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 소속기관 내의 전보와 겸임

○ 임용제청 협의

- 국회의장이 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은 소속기관(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의 제청에 의하되, 신규채용 및 신규임용 등에 관해서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소속기관의 장은 국회사무총장과 협의해야 함

○ 전문경력관 직위의 지정 협의

-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 직위를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직위 지정 전 국회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함

- 또,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결정함

○ 사무총장은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

○ 외국의 주재관의 대외직명, 임용,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

○ 법제·예산분석·정책분석·통역·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함

○ 사무총장은 인사권을 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국회도서관소속 사서직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시험과 사서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에게 위임함

-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함

-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함

2. 경기도의회

1)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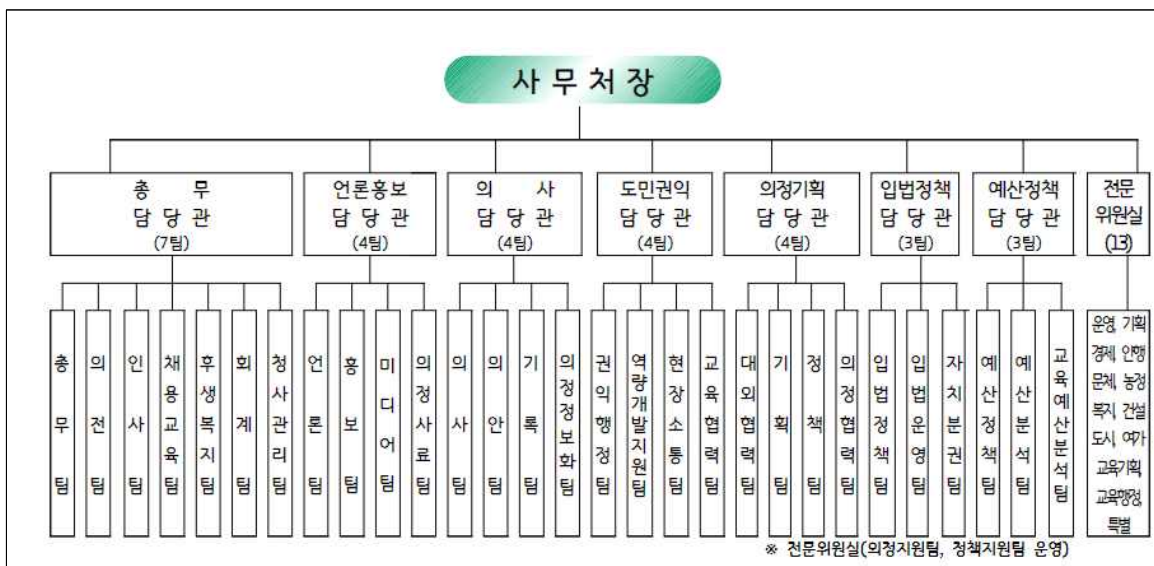
■ 7담당관 13전문위원실¹⁾

- 총무담당관(7팀), 언론홍보담당관(4팀), 의사담당관(4팀), 도민권익담당관(4팀), 의정기획담당관(4팀), 입법정책담당관(3팀) 및 예산정책담당관(3팀) 설치·운영

1) 2023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2023. 2

- 총무담당관은 총무팀, 의전팀, 인사팀, 채용교육팀, 후생복지팀, 회계팀, 청사관리팀
- 언론홍보담당관은 언론팀, 홍보팀, 미디어팀, 의정사료팀
- 의사담당관은 의사팀, 의안팀, 의정정보화팀, 기록팀
- 도민권익담당관은 권익행정팀, 역량개발지원팀, 현장소통팀, 교육협력팀
- 의정기획담당관은 대외협력팀, 기획팀, 정책팀, 의정협력팀
- 입법담당관은 입법정책팀, 입법운영팀, 자치분권팀
- 예산정책담당관은 예산정책팀, 예산분석팀, 교육예산분석팀

[그림 3-2] 경기도의회사무기구조직도



2) 기능배분

- 총무담당관의 기능은 의회 기본운영 및 사무처 직원의 인사 조직 관리 등임
 - 사무처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조정
 - 조직,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 예산, 회계,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의정, 국제교류,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 언론홍보담당관의 기능은 의회 홍보에 관한 기능임
 - 언론홍보 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제공, 취재지원
 - 홍보물 및 현황물 제작, 다중이용매체홍보, 의정활동 영상 촬영
 - 미디어 홍보계획 수립, 홍보콘텐츠 개발, 온라인매체 의정홍보 등
 -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운영, 의정지원정보센터 등
- 의사담당관의 기능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임



- 회의운영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
 - 본회의장의 사용 및 교섭단체와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안접수 및 회부, 의안의 이송 등에 관한 사항
 - 도의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회의록 작성 등
- 도민권익담당관의 기능은 민원, 청원, 주민조례발안 관련 기능임
-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운영
 - 청원·진정민원·주민조례청구(발안)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도민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 지역상담소 운영 등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 공약정책지원
- 의정기획담당관의 기능은 도정 및 교육행정 협치 및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기능임
- 도정 및 교육행정 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섭단체 일반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교섭단체 등 요청 정책현안 분석지원에 관한 사항
 -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 등
- 입법담당관의 기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 등임
- 의원 연구활동 및 연구단체 등록·운영 지원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 및 입법지원
 -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 자치분권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예산정책담당관의 기능은 예산안 결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관한 사항임
- 예산정책의 수립과 조사·분석
 - 예산·결산, 기금운용계획·기금결산 조사·분석
 -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 주요 재정정책 및 사업의 분석·평가 등
- 전문위원의 기능은 소속위원회별 의안에 대한 검토임

- 소속 위원회 안전에 대한 검토보고
- 소속 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 소속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등

3) 정원관리

-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328명 현원은 273명임
 - 일반직은 정원 328명, 현원 273명임
 - 정원외(시간선택제, 무기계약) 정원 117명, 현원 109명임
 - 담당관별 현원은 총무담당관 104명, 언론담당관 33명, 의사담당관 39명, 도민권익담당관 49명, 의정기획담당관 22명, 입법정책담당관 15명, 예산정책담당관 19명임
- 전문위원실의 정원은 95명, 현원은 91명임
 - 일반직은 정원 95명, 현원 91명임
 - 정원외(시간선택제, 무기계약) 정원 12명, 현원 10명임

3. 미국의 지방의회

1) 지방정부의 분류

■ 개요

- 가장 최근인 2005년도에 집계된 미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미국의 정부 단위는 연방정부 및 50개의 주정부와 87,525개의 지방정부(units of local government)를 포함해서 87,576개임

<표 3-7> 미국 지방정부 유형

기관구성 유형	2006	2004	2000	1996	1992	1988	1984
Council-Manager	3,505 (49.1%)	3,453 (48.7%)	3,302	2,760	2,441	2,356	2,290 (35%)
Mayor-Council	3,096 (43.3%)	3,089 (43.6%)	2,988	3,319	3,635	3,686	3,686 (56%)
Commission	143 (2.0%)	145 (2.0%)	143	154	168	173	176 (3%)
Town Mtg.	337 (4.7%)	338 (4.8%)	334	365	363	369	370 (6%)
Rep. Town Mtg.	63 (.9%)	63 (.9%)	65	70	79	82	81 (1%)
Unknown		3 (.04%)					
Total※	7,144 (100%)	7,091 (100%)	6,832	6,668	6,686	6,666	6,603 (100%)



- 기관대립형은 강시장제와 약시장제로 분류되며, 대도시 지방정부 중 50% 이상은 대부분 강시장제임
 - 시장은 대선거구제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그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거부권(veto powers)을 행사하며, 지방의원은 구역별로 선출되어, 시장의 거부권에 대하여 주로 2/3 이상 의원들의 찬성에 의하여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운영되는 체제가 보통임
- 미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상 가장 선호되는 형태는 시의회-전문경영인형의 지방정부(Council-Manager Government) 형태로 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49.1%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 시정부(Municipalities) 수준의 지방정부 기관구성은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집행부를 구성하는 기관통합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의회우월적 내지 의회중심의 기관운영이 대부분인 이유는 지방정부의 책임자는 당연히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로 보았고, 집행부는 단지 의회가 결정한 정책과 예산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의회의원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책임지는 통합형을 선호함

■ 시 지방정부(Municipalities)

- 시와 빌리지 등을 포함한 시 지방정부는 20세기 초반까지 일반적으로 주입법기관의 특별법 또는 일반지방자치법으로 창설되고 통치됨
- 특별법에 따른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지위부여에 대한 주정부의 과도한 통제방식이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일반법으로 시 지방정부를 설치하게 되었고,
- 다시 홈룰(home rule)과 같은 자치기본조례의 채택 및 운영으로 폭 넓은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음
- 대부분의 시 지방정부는 지방의회 중심의 기관통합형 운영체제를 갖추게 되었음

<표 3-8> 미국 지방정부의원 총수 분포 현황

(2002년 기준)

지방의원 총수	지방정부 수
50명 이상 (2개 지방정부)	뉴욕시(800만 명 이상), 시카고시(289만 명)
20~49명 수준	17개 지방정부 (0.6%)
10~19명 수준	248개 지방정부 (10%)
10명 미만	나머지 2209 (90%)

- 미국의 기초자치단체 단위 수준에서 지방정부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통합된 형태가 많고, 그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는 소수로서 소의회 중심의 의회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임

- 지방의원 총수가 50명 이상인 지역은 인구 800만 명의 뉴욕시와 289만 명이 거주하는 시카고시 등 2개 지역 임
- 20~49명인 곳은 단지 17개소로 0.6%이며, 10~19명인 곳은 248개소로 10%임
- 나머지 90%는 의원 10명 미만의 소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카운티(County)

- 기본적으로 미국 카운티 정부의 의회 명칭은 다양함
 - 카운티 지방정부의회의 주요 명칭들을 보면, Board of county commissioner, Board of supervisor, county court, fiscal court, county council(텔라웨어주), Policy Jury(루지애나주), Commissioners Court(텍사스주), County Legislature(뉴욕주)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에서 소수의원에 의한 의회운영의 경우는 County commissioner Board, legislative board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카운티 의회는 소의회제를 중심으로 하고, 의장이 단체장을 겸직하거나 시전문 경영인을 둠
- 소의회제제는 보통 3~5명의 의회의원이 선출되어 의장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권한도 함께 행사하는 통합형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로 아이다호주의 카운티 의회, 텍사스주, 오리건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 다수의회제를 채택한 의회운영 카운티들은 뉴욕, 미시간, 일리노이, 위스콘신의 카운티 지방정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정책결정 시각에서 보면, 카운티 의결기관(Board of Supervisors or Commissioners)과 보안관, 재무관, 검사, 교육감 등 다수의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분야별로 정책결정권 분산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카운티정부의 전반을 통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카운티정부가 여러 시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구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나 지역단위로 광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건서비스와 같은 고비용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70% 이상이 전통적인 위원회형 기관구성 형태를 지니고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의회-행정관형(council-administrator plan) 또는 의회-민선단체장형(council-elected executive form)이 점차 채택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의회-행정관형은 카운티의회가 전문행정인(county manager,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r executive secretary 등으로 명칭)을 선임하여 인사, 예산, 행정부서 및 기관 등에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임



- 의회민선단체장형은 주민이 직접 카운티의 장을 선출하여 카운티 지배인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임

■ 타운 및 타운십(Town and Township)

- 타운이나 타운십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주민총회(local town meeting)로 운영되고 있음
 - 주로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코네티컷, 메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 등 북동부 6개 주)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음
- 식민지 시대부터 실시된 주민총회는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기관구성형태로서 원래 모든 주민이 연례총회에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법규를 제정하였음
- 오늘날은 인구증가와 도시문제의 증가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에서 변형된 주민대표총회의 형태(representative town meeting form)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음
- 주민참석은 유권자의 10% 이하를 요구하는 곳에서부터 40% 이상을 요구하는 곳까지 다양함

2) 지방의회 운영체계

■ 홈룰(Home Rule)에 의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 강화

- 미국 각 주의 지방정부들이 향유하는 자치권 홈룰(자치기본조례)은 넓은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주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권을 의미함
- 보다 전문적인 의미에서 홈룰은 지방정부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임
- 자치권의 부여는 주정부 의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산권, 행정권한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도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패막이로 작용하고 있음
- 자치입법권(Local Legislative Power)은 주민투표를 거쳐 선출 구성된 지방의회에 부여되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형태는 지방정부법률(자치조례, local laws), 지방정부령(ordinances), 의회결의안(resolutions) 등 3가지로 나타남
 - ① 첫째, 자치입법 형태인 자치조례
 - 지방정부의회의 가장 최상위 입법형태로 보통 미국 주정부헌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주어짐
 - 자치조례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기관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주의

회의 개별법(act of the State Legislature)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됨

- 뉴욕주에서는 주의회 법률이나 지방정부 법률(조례) 모두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이 법령등록관리를 하면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

② 둘째, 지방정부령

- 지방정부회의의 입법행위의 하나이지만 특정한 주제와 관련해서 주정부의회가 결정하여 자치정부에 위임한 사안에 한정되는 것임
- 뉴욕주의 경우를 보면, 시정부령은 존재하지만 카운티정부와 빌리지 자치정부(1974년 폐지)는 이러한 권한을 갖지 않음

③ 셋째, 의회결의안

- 자치정부로써 어떤 사안에 대하여 특정한 입장을 취하거나, 의사를 표명하는 수단임
- 다른 법과 달리 결의안은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주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생겨날 여지는 있음

■ 홈룰에 의한 지방의회 운영체제

- 홈룰제도에 의한 시정부의 자치기본조례(Charter)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의한 집행부 조직권 및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권에 대한 보장을 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음
- 홈룰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주법률(by state laws)에 의하여 지방의회와 그 운영체제를 규정하고, 시장과 집행부 지방의원으로서 구성된 통치기구(governing body)를 구축함
 - 평균 5명의 지방의원을 대선거구제에 기초하여 선출하고 그로부터 시장은 간선을 하는 것이 보통임
- 다른 홈룰 종류로는 일반 시차터(by general law cities)에 의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체제를 규정하는 경우임
 - 대선거구제로 시장을 직선하고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혼합하여 지방의원을 선출하는데 평균 7~9명을 선출함
-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 등 자치권을 보장하는 홈룰제도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뉴욕주의 홈룰과위 및 지방정부에 관한 조직 근거는 주헌법 제9조(Section 1 of Article IX of the State Constitution, entitled “Bill of Rights for Local Governments”)와 시홈룰법 제 10조(Section 10 of the Municipal Home Rule Law) 등임
 - 이에 근거하여 뉴욕시는 의회의 권한을 뉴욕시 Charter(2002년) 제2장(21조)에 규정함
 - 이를 기초로 하여 뉴욕시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주민투표권 등이 만들어 짐
- 로스엔젤레스 시정부의 City Charter는 캘리포니아 주헌법 제11조 지방정부 조항(Amended by Charter Amendment 1, approved April 10, 2001, effective May 5, 2001)에 근거하고 있음



- 시장은 직접 선출되며 15명의 시의회가 시정부를 운영함
- 시장은 시의원 중 1명이 되며 시장이 부시장 등 집행기관 공무원 임명권이 있음
- 캘리포니아 시정부법(CALIFORNIA City municipal code)상에서 캘리포니아는 시장 1, 의원 4명으로 집행부가 구성되며 시의 지출결의를 위한 조례 또는 규칙제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3명 이상의 확정 투표가 필함(Sec. 2-1.404.)
-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되며 위원회나 소위원회(commissions and boards) 등에서는 의견수렴 및 검토작업이 중심이 되는(Sec. 2-2.102) 위원회형 중심의 기관통합형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시조례 제3장 이하에서 전문행정인(지방공무원)에게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 등 일반행정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은 의회의 정책 결정에 자문하고, 정책집행을 지원하지만,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함(Sec. 2-3.102)
- 시경영인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조에서 수석행정관의 지위를 가지며 시의회가 행정전문가를 임명하며 의회가 자율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유재량직으로 운영함(Sec. 2-3.204)
- 시경영인은 의회의 책임 하에 시조례의 집행, 정책실행, 계약체결, 인허가권 승인 및 행정기관의 각 국장 등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및 경영권을 갖고 총체적인 행정기관 책임자의 지위로 역할을 수행함(Sec. 2-3.209)

■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제도 : 의회사무기구

- 미국에서 의회-시장형 기관구성을 취하는 경우라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의회와 의장에게 귀속됨
- 시의회의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되거나 의장이 임명함
- 의회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사무국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게 하여 최종적으로 지방의회에 귀속하고 있음
- 의회사무처(국)장의 명칭을 보면, 의회-시장의 기관분립형 지방의회의 의회사무처(국)장 명칭은 주로 City clerk, Municipal clerk, Rural Municipal Administrator 등 다양함
- 지방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기 때문에 인사교류는
 - ①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근거하여 미국 전역에 걸친 노동시장(Labor Market)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 ② 동일 전문직군간 전국협의회(예, Rural Municipal Administrators' Association, City Clerks & Finance Officers Association)를 중심으로 전문직간 이익보호, 노사관계 개선, 인사교류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카운티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의 사례를 보면 의회사무처 및 의회사무처장 (Clerk, Manager, Administrator)의 명칭이 다양하며 주민직선의 의회사무처장직도 있으나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의회가 직접 임명하는 곳도 많음
 - 이는 집행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성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텍사스주의 카메론 카운티(Cameron County)는 의회 의원들에게 개인보좌관과 지구당 사무실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었으며,
 - 인구 10만 미만의 작은 지역은 대부분 의회의원에 대한 전담직원은 없고, 대신 지방의회 사무직 공무원(Manager Clerk Office)들이 지원하고 있음
- 의회-집행부 통합방식 하에 운영되는 지방의회 지원제도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9> 미국 지방정부 의회에 대한 지원현황

(2001년 기준)

지방정부명	의회 지원현황
Port Chester	Clerk 사무실 직원이 필요시 지원
Babylon	의원 사무실에 사무보조 1명씩 총 4명 근무
Fort Lee	시장실만 직원 1명이 있고 필요시 Clerk Office 직원이 지원
Teaneck	필요시 Clerk Office 직원이 지원
Berkeley (캘리포니아주)	의원에게 연간 33,000달러 지급(인건비 21,000 달러, 사무실 유지비 12,000달러), 의원은 개인 보좌관 1~2명 채용
Mesa	의회전담 공무원 2명(의장실, 의원실), Clerk Office 직원이 지원
Albuquerque (뉴멕시코주)	의회전담 공무원 20명 근무
Birmingham (앨라배마주)	의회전담 공무원 12명, 의원에게 개인 보좌관 채용을 위한 32,500달러 지원(상근직 1명, 비상근직 2명)
Madison	의회 전담 공무원 2명 근무
Billings	City Administrator 사무실 직원 1명이 지원
Springfield	Clerk Office 직원 3명과 보좌관 1명이 지원
Colorado Springs	City Manager 사무실 직원이 지원
Cambridge	의회 전담 공무원 2명 근무, 시장실에 별도로 3명 근무
Stamford	의회 전담 공무원 3명(풀타임 직원 2명, 파트타임 직원 1명) 근무
Hooksett	의회 전담 공무원 2명(의장 비서 1명, 의회 사무보조 1명)이 근무

* 출처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3.

■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제도 : 의원보좌관제

- 뉴욕주 Nassau County 소속 Oyster Bay Town :



- 지방의원은 모두 7명으로, 6명의 시의원과 주민직선으로 2년 임기의 1명의 Supervisor(단체장)를 선출함
- 이들 선출직은 당적을 표방하고 출마함
- 타운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면, 지방정부가 수행할 주요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업무의 시행 기준 설정,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고 주민의 실제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조례 및 지방법규의 제정, 지방정부의 연간 예산의 승인, 주요 공무원에 대하여 의회가 직접 임명하거나 집행부서의 장의 임명권 행사 시 임명에 대한 동의 등을 행사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에 대하여 모든 의원들이 풀타임 비서를 1명씩 보좌관으로 두고 있음
- 지방정부 내에 법률자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수당 의원에게는 별도의 법률자문관을 사용할 권리도 있음
- 의원보좌관의 급료는 파트타임의 법률자문가의 경우 2003년을 기준으로 연봉 2만 5천 달러였음

○ 뉴욕주 소속 Mount Vernon시정부 :

- 인구 6만 7천명 수준으로 Mayor-Council형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음
- 1명의 의장, 4명의 의원이 있음
- 의장의 연봉 2만 8,500달러, 일반의원 만5천달러, 연금혜택과 건강보험의 혜택이 주어지며,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의원보좌관 수를 보면, 개인적인 보좌관제는 아니지만 의회의 일을 전담하는 의회담당비서(연봉 2만7천 달러)가 있으며, 이외에도 Clerk과 그 보좌관 등이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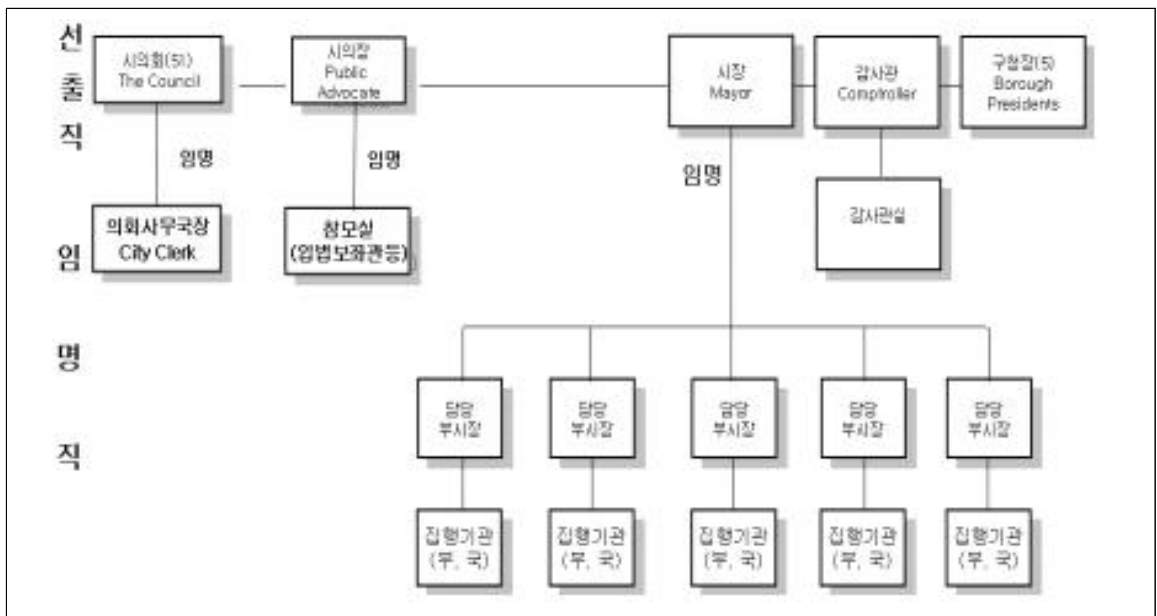
3) 지방의회 운영사례

■ 기관분립형의 뉴욕시의회

- 뉴욕시정부의 기관구성은 시장-의회 기관분립형으로 시의회(시자치조례 제21조 이하)는 의장과 51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됨
- 시장은 시민직선으로 선출되며, 행정기관의 총수로 집행기관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인사권을 행사함(뉴욕시 기본조례, 제6조)
- 의장이 임명권을 가진 개인보좌관(최소한 2명 이상) 및 사무국(appropriate board, body or committee)을 설치하여 의정활동의 지원을 받고 있음(시기본조례 제24조 9-d조)
- 의회사무처장(clerk of the council 또는 city clerk)은 시의회가 임명하며 6년 임기를 갖고 시의회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며 동시에 입법전문실, 의회사무국 등을 총괄하고 있음(뉴욕시기본조례 제48조 시의회 국장의 임무)

-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의회직원(Legislative professional staff)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함
- 뉴욕시의회는 의회 내 전문직제를 설치하여 시정부의 예산과 결산, 지방세 제도의 개선, 예산변경, 지방채 발행 및 시장의 경영보고서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와 분석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제(Legislative professional staff)를 운영하고 있음(뉴욕시기본조례 2007 : 제47조)
- 이들 전문직 공무원은 지방의회 각 위원회와 의원들을 보좌하여 지방정부 조례 제정, 집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지원활동을 수행함

[그림 3-3] 뉴욕시의회 운영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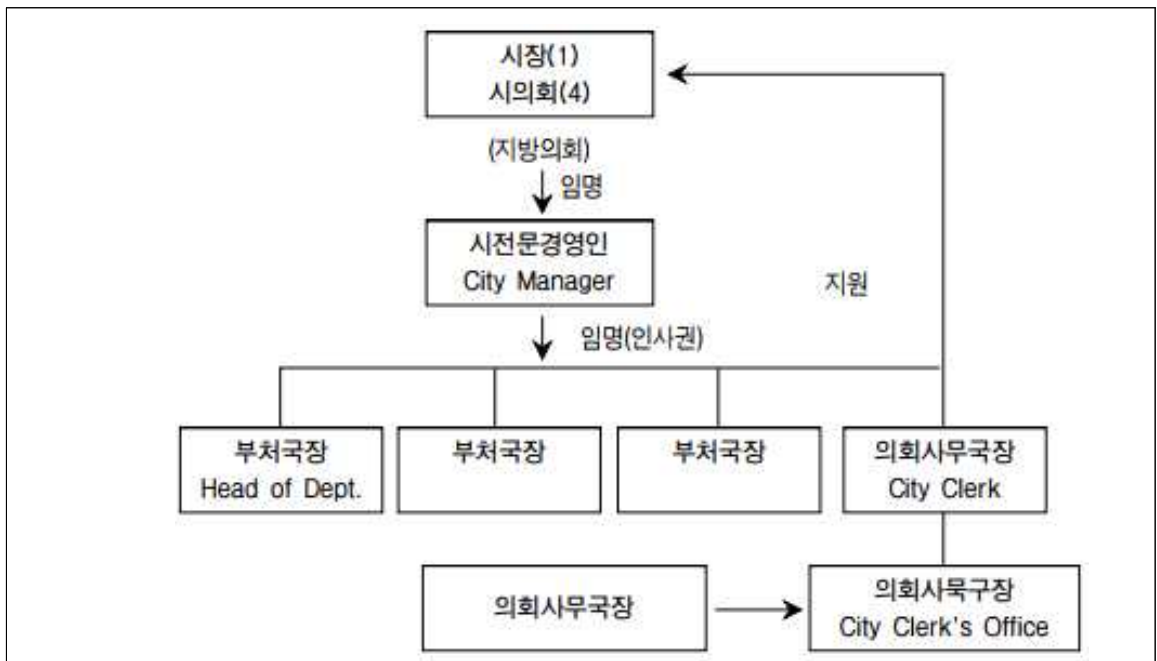
■ 시-전문경영인형 알라바마주 피닉스시

- 알라바마주에 위치한 피닉스(Phoenix)시정부의 경우, 시의회 의원은 임기 3년을 수행하며,
- 소선거구제에 의해 현재 3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한 명씩의 의원을 선출하고 대선거구로 1명, 모두 4명의 시의원이 직선됨
- 분리된 선거제도로 선출된 시장이 당연직 의장을 겸함으로써 시의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의회가 임명하는 집행기관의 총책임자인 시전문경영인(City Manager)은 행정기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부 공무원의 임명, 인사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시의회사무국(City Clerk's Office)은 의회사무국장(City Clerk)이 의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함



- 의회-시전문경영인 체제가 의회와 집행기관의 분리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시장형 기관구성에서 독립적인 조직과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함
- 시전문경영인이 집행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듯이 의회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의장이 직접 갖거나(주로 작은 지방정부의 경우), 보통은 의회사무국장(City Clerk)을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함

[그림 3-4] 피닉스시 의회-시전문경영인형 시정부 의회사무기구



4) 시사점

■ 의회 중심의 지방정부

- 미국은 현재 다양한 기관형태를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마다 선택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의회중심의 기관통합형이 주류를 이루어 왔음
- 현재 의회-시장형 기관분립형은 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나 2만 5천명 이하의 소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음
 - 이 형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경우를 의미함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시민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각각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나누어 맡아 양 기관이 시민에게 각각 책임을 지는 전형적인 기관분리형조직운영으로 그 원리와 특성상 의회와 시장 중심의 집행부 간 조직운영의 독자성, 각 기관의 인사권 독립 등이 확보되어 있음

- 의회-시전문경영인 체제의 기관구성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인사권이나 조직 운영권은 시장이 아닌 시전문경영인이 갖게 되지만, 시장은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는 시전문경영인을 의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의장으로서 참여하여 영향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거의 모든 지방정부가 의회 중심의 집행기관 운영방식을 채택한 것은 실용적 사고방식의 결과로써, 과거 독립의 역사로부터 유래하여 영국과 독립전쟁을 시작한 이후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는 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의회 우월주의가 지배적이다. 이때 지방정부의 주인은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 보았고, 행정부는 단지 의회가 결정한 정책과 예산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의회의원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합형을 선호하였던 것임
-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의회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단체장을 겸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80%의 지방정부의회가 행정부의 단체장을 겸직하고 있고, 나머지 인구가 많은 20%의 대도시 경우에는 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있음

■ 지방의회에 대한 확실한 지원체제

- 의회-시전문경영인 형태의 기관구성 및 운영은 전문행정가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강조한 운영체제로써,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권과 인사권은 전문 행정가인 시전문경영인이 총괄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이는 행정의 전문성에 의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가 모든 권한을 갖게 됨
 - 따라서 의회-시전문경영인 체제는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권한 관계에서는 역시 지방의회가 모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의회 우월주의에 기초한 기관운영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직을 겸하는 시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장이 집행기관의 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회의 대표자로서 갖는 정치적 의미 때문임
- 의회중심의 의회-집행부 기관통합형 지방정부 운영원리는 기관통합형을 기본으로 하는 유럽 국가의 지방정부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조직원리라고 할 수 있음
- 선진국에서는 경험적으로 의회 중심의 합의제 책임정치가 갖는 우월성을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및 인사권 행사 때에 보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홈룰제도를 통한 제도의 다양성 추구

- 미국의 모든 주정부는 시정부(municipality)를 창설하고 그 권한을 제정하며 시정부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자치정부의 인사 및 행정조직 형태를 포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자율적 기관



구성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한 결정을 지방정부의 기본헌장(charter) 또는 자치정부의 기관구성조례와 같이 특별법(special act), 분류법(classified law), 선택법(optional law), 홈룰(home rule) 등 네 가지가 방식으로 제도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법 틀을 만들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주정부에 의해 창조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범위와 기관구성 형태 등을 지방정부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홈룰방식으로 규정하여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이 방식이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이 됨
- 연방국가 뿐만 아니라 단일국가인 영국과 대륙법계 국가인 스페인 등과 같은 나라들도 2000년 이후 적극적으로 미국의 홈룰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운영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음

4. 영국의 지방의회

1) 지방정부의 분류

- 영국에서 카운티 지방정부(county councils)가 설치된 것을 보면, 잉글랜드 지역에는 1974년 6개의 대도시 카운티 정부(metropolitan county)가 탄생됨
 - 대도시 카운티가 다시 대도시 기초정부(district)로 세분되었으나 1986년 모두 폐지되고 district 또는 협의회에서 그 기능이 이관됨
 - 1995년부터 Birmingham, Bristol, Leeds, Liverpool, Manchester, Newcastle, Nottingham, Sheffield 등 8개 대도시는 주요핵심도시그룹(Core Cities Group)으로 공동대처하면서도 다른 도시정부와 차별된 기능적 특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카운티 정부로서 당해 지역의 지역수도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영국의 기초정부는 주로 도시기초정부(metropolitan districts)와 농촌기초정부(non metropolitan districts or shire districts)라고 할 수 있으며 36개의 도시기초정부(metropolitan districts) 및 238개의 농촌기초정부(non metropolitan districts or districts)가 있음
 - Districts의 명칭은 다양하여 cities, boroughs, royal boroughs, metropolitan boroughs, 또는 단순히 district로 사용됨
- 대처정부가 정부혁신정책의 하나로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통합형 지방정부가 나타나기 시작했음
 - 예를 들면, 1992년 지방정부법에 근거하여 Avon, Cleveland, Humberside, York 등은 카운티 정부와 기초정부(district)가 통합하여 1996년부터 통합지방정부로 대체되었고,
 - 1997년 다시 13개의 통합지방정부가 탄생되어

- 1998년부터는 총 45개의 통합지방정부, 런던시 및 라이트섬 등을 포함해서 모두 47개 통합 지방정부(unitary authorities)가 만들어졌음
 - 이들 통합지방정부의 주민 수는 35,000명에서부터 1백만 명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1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의 주민 수를 갖고 있도록 통합되었음
- 지금까지의 지방정부 종류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10> 영국 지방정부의 현황

(1996~2006)

구 분	1996년	2006년	면 적 (km ²)		인 구 (명)	
계	472	471	241,752		56,192,000	
England	392 Districts 274 London 33 Metropolitan districts 36 County 35 Unitary 14	388 Districts 238 London 33 Metropolitan 36 County 34 Unitary 46 GLA 1	130,423	53.9%	49,089,000	83.5%
Wales	Unitary 22	Unitary 22 Welsh Assembly 1	20,766	8.6%	2,921,000	5.0%
Scotland	Unitary 32	Unitary 32 Scottish Parliament 1	77,080	31.9%	5,149,000	8.6%
Northern Ireland	Unitary 26	Unitary 26 Regional Assembly 1	13,483	5.6%	1,663,000	2.8%

- 잉글랜드 지역에는 교구를 중심으로 1만 여개의 읍면동 구역(civil parishes)이 있고, 이들 구역은 이미 1894년부터 설치된 것으로써 이 중에는 약 8,700개에 구역의회가 존재하고 있음
- 이들의 주민 수는 1백 명에서 8만 명까지 다양하며,
 - 200명 이하의 선거권자가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구역의회 대신 구역회의로 대체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런던지역에는 1965년, 다른 지역의 대도시권은 1974년 폐지되었으나 지금은 다시 구역의회로써 활동을 하고 있음
 -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확대 움직임과 민주적 참여를 가까이서 보장하는 민주성의 중요성과 항상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음



- 중앙정부도 1997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nd Rating Act)으로 구역의회의 설치를 장려하고 있으며, 10% 이상의 유권자가 구역의회 설치를 청원하면, 해당 자치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부수상실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영국 중앙정부도 그만큼 지역주민과의 근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2) 지방의회 운영체계

■ 의원내각제형 지방의회 운영체제

- 영국은 중앙정부 통치구조와 유사하게 지방정부들이 영국 고유의 의원 중심 책임내각형 집행부(Cabinet System)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지배적임
- ‘내각책임제’ 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히 영국적인 의원내각제를 일컫는 개념으로서 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내각이 의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이며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고 있음
- 영국 의회주의 모델(British model)로서 내각책임제의 통치원리는 오히려 권력의 통합(fusion of powers)을 기저로 하여, 집합적으로 ‘정부’ 라고 하는 수상과 내각 위원(총 약 100여명의 상·하원의원)들이 국회 내 다수당의 지도자들 중에서 선별되어 통치기구를 관장하고 운영하는 제도임
- 의회 중심의 책임내각형 집행부는 영국의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이미 기관구성 다양화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인 2000년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었던 제도였음
- 기관구성 다양화 정책을 시행한 2000년 이후에도 가장 폭 넓게 활용되는 영국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기관통합형 제도임
- 지방의원 중심의 내각형 지방정부의 기관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본적으로 영국 지방정부는 주민직선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정치적 리더(Leader)를 집행부 수장으로 선출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게 함
 - 정치리더는 지방의원 중에서 집행부의 각 부처를 책임질 소수의 지방의원을 의회에 추천하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부(Executive)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으로 활용하는 조직임
 - 이러한 지방의원 중심의 집행부에 다시 고위직 지방공무원 중에서 수석행정관을 비롯한 감사관, 수석재무관, 시법무국장(고위공무원단) 등을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우선 임명하고, 전체 집행기구의 각 부처국장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체 인사권도 동일한 방법으로 행사하여 집행기관을 구성·운영함
 - 집행부를 구성하지 않은 평의원들은 감사·조사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에서 활동하고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고위공무원, 평의원간의 갈등 또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내 조례, 규칙 등으로 필요사항 및 관련절차를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사전에 갈등 해소를 유도하고 있음
- 그러한 점에서 중앙부처 역시 지방정부 내에서 집행기관과 평의원간의 엄격한 역할 분리를 권고하고 있지 않음

■ 지방의회 운영체제 다양화 정책으로 새로운 지방정치 구조를 지향

- 영국 중앙정부는 2000년 지방정부법으로 지방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치적 경영체제의 실행시스템(Executive systems of political management)을 제도화함
- 이를 위한 실천수단으로 자치기본조례(New Council Constitutions)에 근거한 지방정부들의 새로운 기관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들을 도입하였음
 -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지도력을 기르기 위하여 선출직 시장과 내각제(a directly elected executive mayor with a cabinet), 시장과 의회관리자형(a directly elected mayor with a council manager), 간선직 지도자와 내각제(a cabinet with a leader) 등으로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음
 - 과거 간선형에서 직선시장을 뽑는 지역주민의 권한을 강화하였음
 - 모든 지방의원들을 위한 중요하고 명확한 역할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방의회는 주민대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존경을 필요로 하고 효과적인 정치 지배 구조를 가져야만 하므로 혁신 이전의 영국 지방정부의 위원회 체계(committee system)는 중대한 결정이 보통 다른 곳에서 내려지는, 혼란스럽고 비능률적인 구조였다는 판단이 있었음
- 많은 지방의원들이 의회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하고, 지방의회 모임에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정부는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치 지배 모델들을 제공하고자 함
- 각 기관구성 모델은 의원 뒷자리에 앉아 아무 할 일이 없는 역할로부터(backbench role) 집행부 역할을 분리하여 모든 의원들에게 중요하고 명확한 역할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함
- 시장은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며 관리자가 지방의회에서 임명되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
- 직선 시장을 원하는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투표(local referendum)를 통하여 대중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도록 하여 부가적으로 직선 시장을 선출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청원할 수도 있음
-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지방의회 중심의 내각 책임제형 지방정부 조직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부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책임성 강화 등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개혁작업으로 추진됨

- 기본적으로 새로운 통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정부 내에서 집행과 정책기능을 분리하고, 지역주민과 더욱 가까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정치와 행정의 분립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여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을 높이려고 한 것임
- 그 결과 현재 지방정부들은 leader cabinet authorities 형이 81%(316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주민들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길 원하기도 한 것이지만 강력한 리더가 정책을 추진하길 원하고자 한 운영체제로의 전환이기도 함
- 이 조직형태에서 집행부를 구성하는 지방의원 수는 평균 7명, 대도시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평균 8명(런던자치구와 카운티 정부의 경우) 등으로 나타남
- 주로 8만5천명 이하 작은 지방정부의 기관유형으로 추천된 것은 4번째 유형인 streamlined committee system이었고, 59개 지방정부는 leader cabinet 형태가 변형된 유형을 채택하였으며, 시장제(mayor-cabinet authority)를 채택한 지방정부는 10개(3%), 그리고 시장직선제 하에서 시전문경영인형(mayor-council manager authority)을 채택한 지방정부는 1개임

■ 의정활동 지원제도

- 영국 지방의회 운영체제상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 귀속되어 있음
- 지방선거에 의해서 집행부를 교체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고위공무원단(officer orps)도 전체적으로 재임용 대상이 됨
- 지방 고위직공무원의 정치적 임용제도도 지방의회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각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조례(자치기본조례, basic constitution)를 통해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의원과 부처를 책임지는 고위공무원간 업무분장, 역할분담을 사전 규정함
-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기구를 총괄, 지휘하는 의회사무국장(a chief officer or very senior manager to support overview and scrutiny)을 임명하여 의정활동 지원팀을 활용하고 있음
- 드물게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독립적 신분을 가진 의회사무국장(an independent facilitator)을 임명하여 평의원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기도 함
- 지방의원의 주민대표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좌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문직 공무원을 지원하고 있음
- 평의원 중심의 감사-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집행기관에 소속된 지방의원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3) 시의회 운영사례 : 리버풀시의회

■ 의회중심의 운영체제

- 리버풀시(Liverpool City Council)는 2007년 현재 90명의 시의원이 있으며, 4년의 임기를 수행하고, 1/3 지방의원이 매 3년마다 선출되고 있음
- 리버풀시의 기관구성 형태를 보면, 시의회에서 시정부 리더인 지방의회 의장 겸 시장(Council Leader, Lord Mayor)을 선출하고, 리더의 추천으로 지방의원 중에서 집행부를 구성하는, 시의회 의장-시장 겸직의 통합형 기관구성 형태의 지방정부임(Council Leader and members of the Executive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Leader)
- 정치리더가 집행부의 장이면서 시장(Lord Mayor)이고, 동시에 의회의장을 겸직하여 집행부를 지휘 통솔하고, 의회 의장으로서 의회의 총회 등을 주관함
 - 집행부(Executive Board)는 지방의회의 한 부분으로(“The Executive is the part of the Council”) 지방정부의 일상적 업무수행을 책임지며, 리더와 9명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됨
 - 이들은 매 격주마다 회의를 갖고 시정부를 관리하고 있음
 - 집행부는 시장, 집행부 의원,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과 주요 국장들(Executive Directors, Resources, Chief Finance Officer)이 관리함
 - 8개의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가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지원하며, 시 선거구를 중심으로 11개 지역위원회(Area committees)도 활동하고 있음

■ 리버풀 시의회의 지방공무원인사권

- 리버풀 시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가 흠몰인 자치기본조례(Basic constitution)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총회(Full council)에서 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서 행정부처를 책임질 고위공무원단(Chief Officers)을 임명함
- 리버풀 시의회는 통합형이므로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직원(Council's Staff, Council's employees)과 고위직 공무원단은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회를 지원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공무원간 상호 업무절차 등의 관계성은 실무규칙(code of practice)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규칙은 리버풀시정부의 자치기본조례(Basic constitution) 제5장에 명기되어 있음(A code of practice governs the relationships between officers and members of the council)
 - 이러한 내용들은 지방정부의 자치기본조례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통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이 다른 하위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임명권을 가지며, 수석 행정관의 인사권을 다른 부처 책임자들인 고위직 공무원단에게 위임하여 권한행사를 할 수 있음
 - 인사권은 공식적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에 기초하여 인사위원회(Appointments and Disciplinary Panel)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
 - 고위공무원의 직무는 리버풀 시정부 자치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 시법무관(City Solicitor), 시감사관(Monitoring Officer) 또는 의회사무국장 및 의회업무 담당 자들에 대해서는 자치기본조례(제14조 3항)에 그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
 - 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정부 전체의 법률관련 법무담당업무를 관리 및 감사하며 지방의회의 윤리위원회 사무도 지원함
 -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지방 고위직 공무원단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총괄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

4) 시사점

■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운영체제 다양화 정책

-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에 있어서 새로운 기관구성 형태를 채택함에 전체 지방정부 중 약 1/3(36%)의 지방정부는 쉽게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였다고 하고, 63%는 대체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고, 5% 정도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
- 새로운 지방정부 자치기본조례를 채택한 40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03년 1927명의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로운 자치기본조례가 도입된 이후 leader-cabinet authorities형태에서 리더십이 강화되었다고 인정함
 - 2003년 조사에서 지방의원 729명 중 74%가 다양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정하였고, 지방공무원은 444명 중 74%, 지방정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346명 중 66%가 동일하게 응답함
- 강력한 리더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지방의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전체 중 1/2 이하의 숫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함
 - 약 47%가 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
- 조사대상 중 111개 지방정부는 주요 제도적 장점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정책결정을 유도한다고 답하였음
 - 64개 지방정부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책결정을 유도한다고 하였고, 41개 지방정부는

강력하고 리더십에 강점을 가진 제도라고 응답함

- 단점으로는 집행기능을 담당하지 않은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그 효과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으며(109개 지방정부), 이들 중 지방의회의 역할에서 scrutiny의 기능에 대한 혼란을 갖고 있다고 응답함(34개 지방정부)
- 영국의 지방정부 다양화 정책은 현대화 작업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기회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음
 - 영국의 중앙정부는 현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새로운 구조틀(framework)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도입하였음
 - 중앙정부는 탁월하고 주도하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범지방정부(beacon council)를 선택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는 특정한 서비스 분야 혹은 전체적으로 시범지방의회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지방의회 중심의 운영체제 지속

- 영국은 지방정부에 대하여 기관구성 다양화 정책을 시행한 2000년 이후에도 시장-의회 통합형인 의원내각책임제(Cabinet System)가 가장 폭 넓게 활용되고 있음
 - 지방의원 중심의 집행기관 운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기관구성 운영형태상 시행정 전문고위직(수석행정관을 비롯한 감사관, 수석재무관, 시범무국장 등)에 대한 임명은 시의회 승인을 거쳤음
 - 전체 집행기구의 각 부처국장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동일한 방법으로 행사하여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정 활동상 지원받기 위하여 의회사무기구를 총괄, 지휘하는 의회사무국장(chief officer or very senior manager to support overview and scrutiny)을 임명함
 - 지방정부 조례(자치기본조례, basic constitution)를 제정하여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의원 과 부처를 책임지는 고위공무원 간 업무 분장, 역할분담 등에 대하여 사전 규정하여 지방정부 운영을 책임지고 있음

■ 주민참여 및 지방의원의 주민대표성 제고에 치중

- 좀 더 빈번하게 치루는 지방선거는 모든 분야의 유권자들이 그들의 지역대표자들에게 결정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확신시켜주는 행위이므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감을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지방선거제도를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양화하였음
- 영국은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을 의도함
 - 점차 지방정부의 역할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다른 조직이나 중개자(민간위



탁, 아웃소싱) 등을 감독·통제하는 규제자 혹은 조정자(regulator), 감독자(monitor)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임

- 영국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조직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민원해소 등에 노력함으로써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는데 노력하고 있음
- 그러한 개혁의지가 기관구성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유형의 지방의회 운영체제를 선택하게 하고 있음
- 정책집행자로서의 지방정부는 촉매역할을 하는 조연자(facilitator)로 필요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지역 주민의 서비스 제공에 관계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개인이나 기업에 재정적 원조(Start-up grants and loans)를 제공하는 정책촉진자로서의 역할임
- 예술가, 창조자, 사회사업가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원조를 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들이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의 운택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에서 서비스계약자(service contractor)로서의 전략적 지위로 전환하려는 것이기도 함

5. 일본의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운영체계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대립형임

- 일본은 기관통합형의 중앙정부 구성과는 달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시장형의 분립형 기관구성을 취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면 고유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 예산 결정권, 결산승인권, 지방세·사용료·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업무 결정권, 계약허가 및 체결권, 특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권, 행정사무감사권, 행정사무조사권, 청원의 수리와 처리, 지방공공단체의 공익관련문제에 관한 의견제출권 등이 있음
- 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으로는 검사·조사권, 감사청구권, 설명요구권, 의견진술권, 단체장 불신임결의권 등 견제·감시권을 행사함
- 관계행정청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갖고 있으며 주민과 기타 관계인에 대해서 조사권과 청원수리권을 행사함
- 4년 임기의 지방의원 정수는 지방자치법에서 그 상한선을 정하고, 주민의 수를 고려하여 조례로써 규정함
 - 도도부현은 40~120명(예외 : 동경도는 130명), 시는 30~100명, 정과 촌은 12~30명 사이임

- 의원정수 감축을 위한 특례조례(시정촌의 통폐합 및 경계변경에 따라 현저하게 인구의 증감이 있었던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조례로서 증감)의 제정이 가능함

■ 일본의 지방의회는 내부조직을 구성함

- 지방의회 내부조직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 도서관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임기 내로 하고 상임위원회 임기는 보통 2년임
-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구 규모별로 그 수가 결정되는데 시정촌은 약 4-6개이고 도도부현은 8-9개로 운영함
-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의회 조례로써 위원회 명칭·정수·소관업무 등을 규정하며 의원들은 각각 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해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결의에 의하여 비공개도 가능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배치와 구성은 의장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의회의장은 사무국장 과 서기장, 서기, 기타 직원 등의 임명권을 행사함(일본지방자치법 제138조 5항)
-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함
- 일본에서는 분립형 기관구성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의회에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이것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관운영체제를 유지함
-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상호 인사교류 등 인적자원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음
- 일본은 出向(슌코우)이라는 인사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단체장이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지방의회로 파견하고 있음
- 일본 지방의회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의회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무기구 직원의 수를 한 사례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도도부현(都道府縣) 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사무직원 수는 0.73명 정도(靜岡 0.53명~東京 1.13명)인 것으로 나타남

2) 시의회 운영사례

■ 동경도의회

- 동경도 의회는 도내 42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직접선거로 선발되는 127명으로 임기는 4년임
-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의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출되고, 사직(사임)은 의회의 허가가 필요함
-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장의 질서유지, 의사정리, 그 외에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권



을 가지며,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함

-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안과 청원, 진정 등을 심사하고, 그 부문에 속한 도의 사무를 조사함
 - 종류로는 총무위원회, 재정위원회, 문교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후생위원회, 경제항만위원회, 건설주택위원회, 공영기업위원회, 경찰소방위원회 등이 있음
 -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기 중에 한하여 의회의결에 의해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지만, 의회의결 된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폐회 중에도 심사가 가능함
-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4회(2, 6, 9, 12월),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소집하며 회기는 예산심의 정례회는 60일, 그 외에 정례회는 30일, 임시회는 10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매회기 초에 의회의결로 확정함

■ 가나자와시(金澤市)

- 가나자와시는 중핵도시(1994.6월: 중핵시제도 도입)로 주민직선의 시장, 2명의 부시장, 회계관과 14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음
 - 부시장(助役)은 시장에 의해 선임되며 4년 임기로 의회의 승인 받아 임명됨
 - 부시장이 각 부서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함
- 가나자와시는 2명의 부시장(助役)-재정과 비재정분야(시장 사고시 직무대리 맡음)로 나누어 업무분장을 하고 있음
- 시의회의 사무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의장이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집행부와 파견형식의 인사교류를 시행함

3) 시사점

- 일본의 의회사무기구는 조사연구의 의정보좌 역할보다는 주로 의사운영 등 행정관리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음
 - 일본 지방의원의 지위가 명예직과 전업직의 중간 형태로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로 의원 스스로 조사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임
- 일부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시정촌)의 지방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이나 의원보좌관과 같은 의정보좌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곳도 있음
 - 예를 들면, 인구 1만 5천명 정도의 内原(우치하라)町이나 인구 5천명 정도의 里美(사토미)村 등의 지방의회에서는 사무기구는 사무국장 1명과 서기 1명만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함
- 일본은 기관분리형의 견제와 균형적 기관운영체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과 관련한 인사교류제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게 집행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지방의회로 파견되는 인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이지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과 집행기관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장기간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의회 사무직원을 확보하기 어려움
- 의회 사무직원이 집행기관을 의식하면서 사무의 중립성과 일체감을 결여하고 있는 문제가 많이 표출되고 있음
- 영미 지방의회 운영체제와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단지 인사권 독립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의정활동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중요한 판단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분리형 기관구성에서 기관 간 인사교류의 활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기관 간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인사교류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분리형 기관구성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이 지방의회에 귀속되는 원칙은 규범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의회사무직원이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함
- 의회사무기구 가운데 특히 지방의회의 의결기능이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은 전문성 확보 뿐 아니라 소속기관에 대한 충성심과 소속감이 강조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대립형 중심의 지방의회 운영체제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집행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 인력의 인사권 독립이 필연적으로 요구됨

6. 프랑스의 지방의회

1) 지방정부의 분류

- 프랑스는 1982년 신 지방자치법 “꼬뮌 기초자치정부, 데парта망 도(道)중간 자치정부, 레지옹 지역자치정부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Loi relative aux droits et libertés des communes, des départements et des régions)을 제정하면서 3개 형태의 지방정부를 설치함

■ 기초의회의 구성

-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선거(élection municipale)는 본래 1884년부터 매 6년 마다 치러져 왔으며 1982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혼합투표방식(scrutin mixte)으로 바뀌면서 비례투표에 의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다수득표의 장점을 살리는 투표방식을 채택함
- 지방의원의 정수도 주민수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정함



-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기초의회(conseil municipal)를 구성함
- 시장은 소속정당의 지방의원 선거명부를 대표하는 제1순위의 대표가 다수당 지방의원의 과반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 소속정당의 동료의원들 가운데에서 부시장 등 지방정부의 집행부(exécutif)를 조직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함

■ 도(Departement) 의회의 구성

- 중간계층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데빠르뜨망은 행정구역인 각 Canton(깡똥)에서 1인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의 단기명 2차 결선투표제(scrutin uninominal à deux tours)를 채택함
 - 1차 투표 당선을 위해서는 유효투표의 절대다수로서 유권자 1/4이상의 득표가 필요함
 -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들만 2차투표 후보가 됨
- 기본적으로 도의원의 정수는 15~76명으로 다양하며 여러 Canton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함

■ 레지옹(Region)의회의 구성

- 도를 선거구 단위로 하여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거를 하게 되며 유효투표의 5% 이상 득표가 되어야 지방의회 의석 배정이 됨
 - 레지옹 지방정부 의원정수는 보통 31명~209명 사이가 되는데,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었을 경우 1/2의석을 배분받은 후 나머지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명부를 포함하여 후보명부의 득표수 비례에 따라서 나머지 의석이 배분됨
 - 만일 제1차 투표 시 과반수를 얻은 후보명부가 없는 경우에는 10% 이상 득표한 후보명부자들만 제2차 투표의 대상이 됨
- 후보명부의 정당 간 연합을 통한 새로운 선거후보 명부를 구성할 수 있음

2) 지방의회 운영체제

■ 의회중심의 기관통합형

- 지방의회는 확실적인 기관통합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지방의회는 의결기구이자 정책 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지방의회 의장은 동시에 집행기구의 책임자인 시장 및 도지사가 되어 단체장 역할도 함께 담당함
- 확실적인 의회중심의 집행기구는 지방의원들 중에서 각 분야별 책임을 맡은 의원들이 부시장직을 수행하는 대의회제 형태의 지방의회를 운영함
 - 지방의회는 자치기구 그 자체로서 자치행정에 관한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며, 공무원 조직은 지방의회 결정에 준비·보좌하고 의회의 결정대로 시행하는 정치와 행정의 분립원칙에 따른 역할을 담당함

■ 정당중심의 책임성을 증시하는 지방의회 운영

- 지방의원 및 단체장을 선출하는 프랑스 지방선거에는 정당 참여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선거인단 명부 리스트 제1순위로 차기 시장후보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당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반드시 지역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통례가 되고 있음
-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 바로 중앙의 상·하원의원으로 선출되는 정치적 발판으로도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 내의 정치조직력을 기반으로 후보자의 지위가 상승되어 중앙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함
- 시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들 상당수가 중앙의 상·하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정치적으로 지방의 이익을 중앙에 잘 대변하는 겸직제도의 장점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겸직제도의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는 바로 소수 정치가들이 이러한 겸직통로로 정치적 독점지위를 오랫동안 누리게 됨으로써 참신한 정치가의 발굴차단, 부정부패의 깊은 골 등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음
- 정당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민들이 시장의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시장이 속하고 있는 소속정당을 모르는 경우도 빈번한 것을 볼 수 있음

■ 지방의원의 겸직허용 제도

- 프랑스는 지방의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로써 중앙의 정치가 중 약 3/4의 상·하원의원이 지방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겸하고 있어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한 사람이 여러 기초정부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한 곳 이상에서 지방의원으로 선출되었을 때에는 선거결과 후 10일 이내에 한 의원직을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선출직 의원의 경우 다음의 공직은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유럽회의의원, 광역도의원, 도의원, Paris시 의회의원, Paris시 외의 인구 2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인구 1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의 선출직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 지휘관급 경찰공무원, 공안경찰관, 수사관, 경찰서장 등 특정 고위직 국가공무원들에 대하여 지방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
-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지방의원들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정책집행력 등을 보장함



■ 의정활동 지원제도

- 지방의원직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단체장(지방의회 의장이자 시장)·부단체장·특정업무를 위임받아 공무를 집행하는 지방의원 등에 대해서는 특정직무수행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일반 지방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 시 지급경비(수당)는 공무원의 보수기준과 관련해서 결정·지급하고, 공직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등 개별적인 실비변상을 병행하고 있음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민·형사상 보호는 1992년까지 1974년 법 규정에 근거하였으나 1992년 2월 3일 법에 의해서 지방의원의 민·형사책임과 직업상의 보호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하고 있음
- 개인직업을 가진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직장을 결근하게 되는 경우 이의 정당성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그 보장을 강화하고 있음(1992년 11월 16일 시행령)
- 주민 10만 이상의 지방의원 및 시장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시간 초과에 관한 보상수당 지급을 하고 있음
- 퇴직과 관련해서 프랑스는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1992년 이전까지 시장과 부시장에게만 적용되었던 퇴직보상급여를 1992년 2월 3일 법에서는 지방의원 모두에게도 퇴직보상급여 혜택을 확대시켰음
 - 의정활동 급여를 받는 모든 지방의원은 국민연금제도 이외에도 별도의 보충퇴직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납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경상경비로 규정해 지급함

■ 2003년 헌법수정으로 조례의 입법권 강화

- 프랑스 헌법수정으로 조례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즉, 2003년 수정헌법 제72조 2항과 제3항에 근거하여 수상(중앙정부)의 법규제정권에 의한 관할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법규제정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하였음
 - 중앙정부 법규제정권이 일차적이고, 지방정부의 법규제정권은 이차적인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함
 - 과거에는 간접적인 의미를 가졌으나, 2003년 헌법수정으로 이 부분을 명문화하여 ‘직접적인 이차적 법규제정권’ 성격을 갖게 되었음
 - 지방의회의 조례가 법률의 적용을 위한 조치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규제정권의 성격이 아님
- 법률 집행을 위한 조치, 절차와 관련된 이차적인 성격의 법규제정권을 의미하게 되었음
 -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 내용의 집행방식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방정부의 법규제정권에 부여할 수 있음

- 법률 집행을 위한 여러 조치 및 절차를 결정하는 권한을 어느 한 관련 지방정부에 부여한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그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법률집행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음
 - 관련조항을 보면, 프랑스 헌법 제72조2항은 “지방정부는 관할지역 내에서 가장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소명을 가진다” 고 하였음
 - 제73조3항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된 조건 하에 지방정부는 선출직 지방의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됨
- 이들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규제정권을 갖게 됨
- 조례제정권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공법상 법규제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쟁송대상으로, 행정기관 내부적인 계서권에 의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차원에서 법적 지도감독 등이 이루어지게 됨

3) 시의회 운영사례 : 파리시의회

- 파리는 20개 아롱디스망(區: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 없음/ 준자치구적 성격: 파리의 특성)으로 구성되며, 주민직선에 의하여 구의회가 구성되고, 각 구의회에서 구청장을 선출함
 - 구의원의 일부가 파리시 의회를 구성하면서 파리시의원을 겸직하게 됨
 - 주민이 구의원 선출→일부가 시의원 됨
- 구정과 시정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형성함
- 시장, 부시장은 시의원 중에서 시의회가 간접 선출하며, 전문경영인인 사무총장은 행정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부시장 역할을 하지만 시장에 의해서 임명되며, 시장직속의 직속보좌기관(시장비서실)을 제외한 모든 행정부서를 지휘·조정함
-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휘권, 인사권도 포함하고 있음
- 부시장은 시의회에서 선출하게 되고 지방의원이 후보자임
- 파리의 경우에는 20명의 구청장이 당연직 부시장이 되며, 각 부시장 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고 이들은 시장의 순수한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함
 - 제1부시장이 나머지 부시장의 업무영역을 총괄 조정하고, 부시장마다 담당업무 분야가 따로 있음
- 파리의 집행부 조직은 시장직속의 6개 보좌기관과 시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 16개 부서로 기본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 직속보좌기관으로 시장참모실, 대외공보실, 파리시장 홍보고문실, 감사실, 자치단체협력실,



의회사무국장 등이 있음

- 행정기관은 재정경제국, 인사관리국, 법무국, 정보·통신·조달국, 개발·경제활동·고용촉진국, 보건·복지국, 사회개발센터, 청소년·체육국, 문화국, 도시개발·건설국, 환경국, 주택관리국, 공원녹지관리국, 도로교통관리국, 문화재보호관리국, 방재안전국 등이 구성되어 있음
- 시장 및 집행부 지방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실의 비서실장, 전문보좌관 등의 임용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특별채용제도에 의한 별정직(정책보좌관, 전문보좌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직 및 전문보좌관 등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임용하고 있음
- 집행기관의 하나인 법무국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에 의한 의정활동 지원을 이중으로 받음
- 프랑스 지방공무원법 (1984년 1월 26일 법 제38조)은 개방직 공무원 임용제도를 규정함
 - 시험임용제도와 대조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특별채용제도임
 - 선출직 지방의원 중 정치리더인 시장에게 부여된 지방고위공무원 중 개방직(statuts des emplois de direction)에 대한 자유재량 방식의 공무원 임용제도임

4) 시사점

- 프랑스의 지방의회는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고, 지방의원 중에서 집행부를 구성하여 직·간접적으로 폭 넓게 집행기관의 정책집행에 참여하고 있음
-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전문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강력한 자유재량 방식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주로 고위직급에 한정되어 의회의 인사권이 행사됨)
 - 예를 들면, 별정직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 고위직급(statuts particuliers des cadres d'emplois administratifs pour les catégories A급)에 대해서 직선된 지방의회 및 의장(시장 겸직)이 필요에 따라서 법에 근거한 정수로 자유재량 임명직제를 운영하고 있음
- 시장 및 집행부 지방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실의 비서실장, 전문보좌관 등의 임용에 대해서도 정치적 임명제도를 활용하기도 함
- 특별채용제도에 의한 별정직(정책보좌관, 전문보좌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직 및 전문보좌관 등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임용하고 있음
 - 주로 2개 직렬에 해당하며, 집행내각부에 속한 정책보좌관제도(Emplois de cabinet)도 이에 속하며, 이들은 선출직 리더의 정치적 조언자, 전문적 보좌인력으로서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동안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자유재량직렬에 대한 정수와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으로 명시함
 - 이들 자유재량직의 정수는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 수를 고려하여 최대 임용 가능한 정수를 규정함

- 이들은 주로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의 부처 국장(directeur général des services), 광역자치단체의 부처 부국장(directeur général adjoint des départements), 인구 8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총국장(시전문경영인, secrétaire général)과 기술국 부국장, 인구 15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사무총국장(secrétaire général adjoint) 등임
- 이상과 같이 프랑스 지방의회는 핵심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괄적인 인사권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결정권 및 정책집행권을 모두 행사할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비록 획일적인 기관통합형 제도를 유지하고는 있음
- 지방정부 내부적으로는 영미 국가의 지방정부와 같은 시전문경영인제도나 위원회제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운영체제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7. 스페인의 지방의회

1) 지방정부의 분류

- 총면적 505,957km²의 스페인 인구는 4천 111만 명(81명/km²)(2005년 기준), 수도는 마드리드(2백 82만명)이고, 주요 도시로는 바르셀로나(1백 45만명), 발렌시아, 세비야, 사라고사 등이 있음
- 총면적에 대한 인구분포를 보면, 도심지역에 총인구의 78%가 거주하고 농촌지역은 22%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 인종은 스페인인 74.4%, 카탈루냐인 16.9%, 갈리시아인 6.4%, 바스크족 1.6%, 기타 0.7%로 구성되어 있음
- 단일국가지만 헌법 제2조에 하위 정부체제(sub-national governments)로서 “지역(region)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3계층제로 구성된 지역정부 중심의 자치분권형 단일국가임
- 자치공동체로서 17개 자치지역정부(comunidad autónoma, autonomous communities, region)가 있으며 바르셀로나와 발랑시아 등 2개 자치시(Ciudades Autonomas)와 52개 도(provincias, provinces), 8,082개 기초자치정부(municipios)가 있음
- 기초자치정부 중에서 90% 이상이 주민 5천명 미만임

2) 지방의회 운영체제

■ 지역의회 중심의 지방분권체제

-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지역정부의 의회에 헌법에 근거하여 입법권을 배분하였음
- 연방정부체제 하의 주정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정부가 지방분권체제의 중심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제도 하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프랑스와 같이 기관통합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단체장이 점차 강력한 정치적 리더로써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상의 최고 책임자가 됨
- 스페인 국가는 기초, 도, 지역정부로 구성되면서 지방정부는 헌법상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음
 - 헌법 제137조에서 자치권, 지방정부 종류 등을 규정하였고,
 - 제138조에서는 지역정부의 자치권을,
 - 제140조에서는 기초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직접비밀평등선거를 규정하였음
 - 제141조에서는 도지방정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지방정부는 기초정부의 연합체이며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조직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제141조2항에서 도지방의회(diputaciones)가 도지방정부 집행부와 행정기관을 구성함
- 1978~1983년 사이에 설립된 17개 자치지역정부(self-governing communities 또는 regions, comunidades autonomas)의 자치권은 규모와 재정력 등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양하게 나타남
 - 가장 지역자치권이 강한 지역정부들은 주로 Basque, Catalonia, Galicia, Andalucia 등의 지역정부임
 - 이들 지역정부의 자치권은 헌법 제151조에 근거하고, 지역의회의 자치입법권(Statute of Autonomy, Estatuto)은 헌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명시해 두고 있음
 - 광범위한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역정부는 지역의회를 중심으로 기관통합형 조직과 내각책임제 형태의 집행부를 구성하여 정책집행을 책임지고 있음

■ 지역의회는 헌법과 상위법률의 범위 내에서 입법권 등의 권한을 행사함

- 지역주민의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단원제의 자치주의회와 지역의원이 선출한 지역도지사가 지역정부의 집행부를 구성·운영함
- 지역의회(Regional Parliaments, Asamblea Legislativa)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Ley Orgnica) 하에서 지역정부 영역 범위 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권을 행사함
- 지역의회는 지역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가법률 집행을 위한 입법지원을 함
- 지역의회는 광역 자치정부의 관할구역을 선거구로 하여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의원들로 구성하며, 의원 정수는 자치지역에 따라 최대 135인에서 최소 33인까지 다양함

■ 지방정부의 지사는 지역의원 중에서 선출하여 국왕이 임명함

- 지역도지사(Presidente de la Comunidad Autonoma)는 자치지역의 행정부 수장으로써 집행부

- 구성, 행정입법명령(Decretos)의 제정, 정책계획안 확정 및 집행, 그리고 자치지역을 대표함
- 집행부인 정부회의(Consejo de Gobierno)는 도지사가 임명한 각 부 장관들로 구성되며 지역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집행, 정책집행 및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행사함
 -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부(Delegacion del Gobierno, Delegate General)가 지역 내에서 국가의 지방행정청(regional offices)을 지휘하고 국가의 행정을 운영함
 - 필요에 따라 자치주의 운영에 대한 지도·조정 등을 행함
 - 52개 도정부(provinces) 마찬가지로 기관통합형으로 기초정부의 지방의원들 중 선출된 의원들로 도의회(provincial assembly, diputacio provincial)가 구성됨
 - 도의원 가운데에서 집행부의 장(Presidente)을 선출하여 각 집행부의 책임자인 정무위원회(La Comisino de Gobierno)를 중심으로 도행정을 운영함
 -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도를 대표하는 Deputy-Delegate(과거에는 Civil Governor)가 도지역 내의 국가행정(노동분야, 경찰, 국도, 항구, 재정, 건강보험, 교육분야 등)을 지휘함
 - 광역자치정부 수준에는 중앙정부의 기관으로서 이전에는 민정장관(Gobernador Civil)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에 대신하여 중앙정부 대표부 지부(Subdelegacion del Gobierno)가 설치되어 있음

■ 스페인 지방정부의 재원은 지방세, 국가이전수입, 지역간 형평기금 임

- 기본적으로 지역정부가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원은 주로 지역정부의 세원(regional taxation), 국가이전수입, 지역 간 형평기금 등 3가지의 재원으로 구성됨

■ 기초의회의 운영체제

- 헌법 제148조 1항의 2에서 기초정부의 영토규정은 지역정부의 권한에 귀속됨
- 입법체계상으로도 지역정부의 법체계 하에 귀속을 받는 기초의회(corporación municipal)는 시장, 기초의원들로 구성되며 그 수는 인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민 5천명 이상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집행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시장(alcade)과 다른 지방의원(concejales)을 모두 합쳐 총 기초의원의 1/3을 넘지 않는 인원 으로 집행부를 구성함
- 시장은 지방의원 중에서 집행위원을 자유롭게 지명하며, 행정기관의 활동을 감독함
- 시장은 100명 미만의 기초정부에서는 직선되고,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의 경우에는 지방의원 중에서 간선되고, 250명 이상의 기초정부에서는 정당명부에 의하여 다수당 지방의원 후보명부에서 지방의원들에 의하여 간접 선출함
- 시장의 권한은 1999년 법률로 강화되었고,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는 자치경찰권, 공무원 임면



권 등을 행사함

- 기초정부의 주요 재원은 사업소세와 재산세, 사용료 및 수수료, 중앙정부의 포괄교부금, 지방채 등이 됨
- 스페인에서 정부 간 재정지출 배분비율을 보면, 중앙정부 58.1%, 지역정부 28.2%, 기초정부 13.1% 등임

3) 시사점

- 스페인은 단일국가이지만 연방국가의 주정부와 같은 지역정부를 구성하여 강력한 자치권과 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지역간 갈등문제를 잠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 있음
 - 지역사회 스스로 갈등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정부의 개별적 권한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가능해 지도록 하였음
 - 지역적 특색에 맞는 지방정부 운영체제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 중심의 정책집행력을 보장해 주고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게 하였음
- 단일국가이지만 연방체제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정부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치권을 헌법에 보장함으로써 지방의회 중심의 정책집행력을 강화하였음
-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홈룰제도 운영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실하게 지키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살리고 있음

제4장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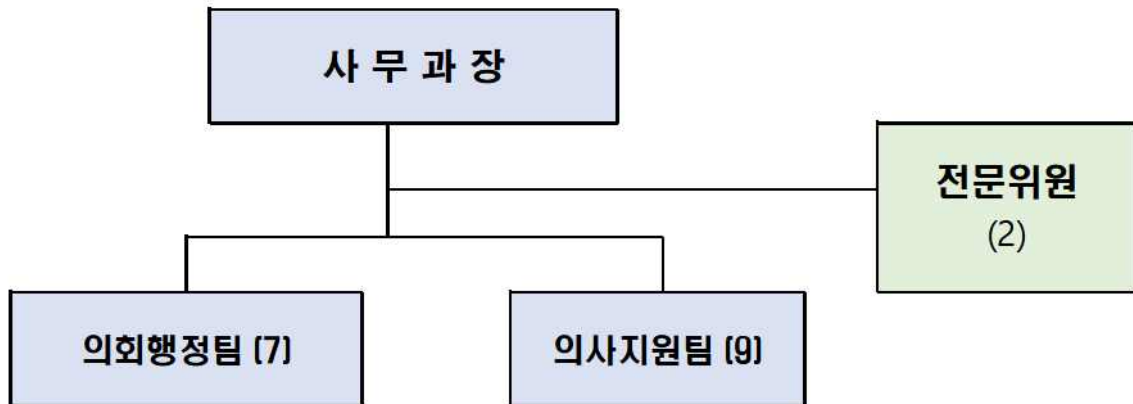
제1절 현황분석

1. 조직구성

■ 조직총량 : 1과 2팀 1실

- 의회사무과 소속기구로 의회행정팀, 의사지원팀, 전문위원실 등을 설치 운영함

[그림 4-1] 응진군의회사무국 조직구성 현황



※ 정원 총 19명 (17명, 공무원 2명), 현원 총 18명 (16명, 공무원 2명)

2. 기능배분

1)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의 전체 기능

- 의회사무기구 정원 등 조직관리
-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관리
- 의회관련 자치법규 정비
- 일반서무, 문서·홈페이지 관리
- 의회 및 의원 관련 계획 수립(도서방문, 비교시찰, 국외출장 등)
- 의원 주관 행사 추진(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 의원 재산 및 병역신고
- 의원 연구단체 업무 지원
- 의원 신분사항 관리(행동강령, 각종위원회 관리)
- 의정활동사진 촬영·관리, 언론홍보
- 의장 의전, 운전·수행비서
-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
- 회기(정례회·임시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간담회 포함)
- 회기 관련 업무 총괄
- 특별위원회 운영
- 특별위원회 의사운영 지원 및 보좌
- 의원요구자료 관리
- 청원, 진정 접수 및 처리
- 기록물 및 서고 관리
- 군정질문 및 5분발언 관리
- 각종 의안의 접수 및 배부
- 의결문서의 이송 등 처리
- 의회 언론(기사) 관리
- 회의운영 기록보존(속기·녹음)

2) 전문위원

■ 전문위원 전체 기능

- 의안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 수집·조사·연구
- 위원회 위원 질의자료 제공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의회 의결사항 관련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취합·분석 지원
-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및 참석지원

3. 시사점

1) 현황

■ 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업무총괄

■ 전문위원

- 상임위원회별 업무소관 없음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특별위원회

■ 의회행정팀(의정팀)

- 의회행정팀 행사, 예산, 회계, 부속실, 비서 등 기능
-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관리
- 의원 연구단체 업무 지원
- 의회 언론 관리

■ 의사지원팀(의사팀)

- 회의진행, 의사진행, 회의록작성, 속기록 작성
- 의안접수 및 배부, 청원 등

2) 문제점

■ 사무과장

- 신규기능을 배분할 수 있는 부서가 없음
- 입법·예산, 감사 등 기능을 소관할 부서가 없음

■ 전문위원

- 전문위원별 소관 상임위원회 없음. 상임위별 업무 분장 필요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특별위원회



■ 의회행정팀

- 비공식적 기능의 비대화
 - 의장수행, 부속실기능, 비서기능 등
- 기관 유지관리 기능의 집중
 - 예산기능과 회계기능의 부서집중
 - 감사기능의 미약

■ 의사지원팀

- 의사기능과 민원기능의 구분이 없음
- 청원·민원 등의 기능전문성 확보가 미흡함

■ 조직구조

- 계선조직과 참모조직의 구분이 없음
 - 참모조직으로 공보·홍보·감사·입법 등의 기능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용진군의회사무기구의 조직구조는 홍보 등 참모조직의 기능을 계선조직으로 배분함

<표 4-1> 용진군의회사무기구의 사무배분 문제점

구분	현황	문제점
사무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과 업무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산, 감사 등 기능을 소관할 부서가 없음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원회 별 업무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 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소관이 없음
의회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운영 종합 조정 및 동향관리 • 예산 지출 업무,계약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급여 및 연말 정산 • 의회사무기구 정원등 관리 • 직원 복무 및 교육관리 • 의회관련 자치법규 정비 • 홍보물 발간 및 배부 • 의원연구단체 업무지원 • 의정활동 사진 촬영 관리 언론홍보 • 의회언론 관리 • 부속실 운영, 행사일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적 기능의 비대화 - 의장수행, 부속실기능, 비서기능 등 • 기관 유지관리 기능의 집중 - 예산기능과 회계기능의 부서집중 - 감사기능의 미약 • 공보기능과 홍보기능의 구분이 없음 • 전문위원실에 업무 재조정, 업무 지원

구분	현황	문제점
의사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기관련 업무총괄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운영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운영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운영 및 지원 의원요구자료 관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운영 및 지원 의안접수 및 배부, 청원 등 의결문서의 이송 등관리 정책지원관 소속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기능과 민원기능의 구분이 없음 청원·민원 등의 기능전문성 확보가 미흡함 전문위원실 업무 재배분
조직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선조직과 참모조직의 구분이 모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기능은 참모조직으로 설치가 타당 참모조직으로 홍보·감사·입법 등 필요

제2절 기능분석

1. 기능분석 개요

1) 기능분석의 목적

■ 조직 소관업무의 적정범위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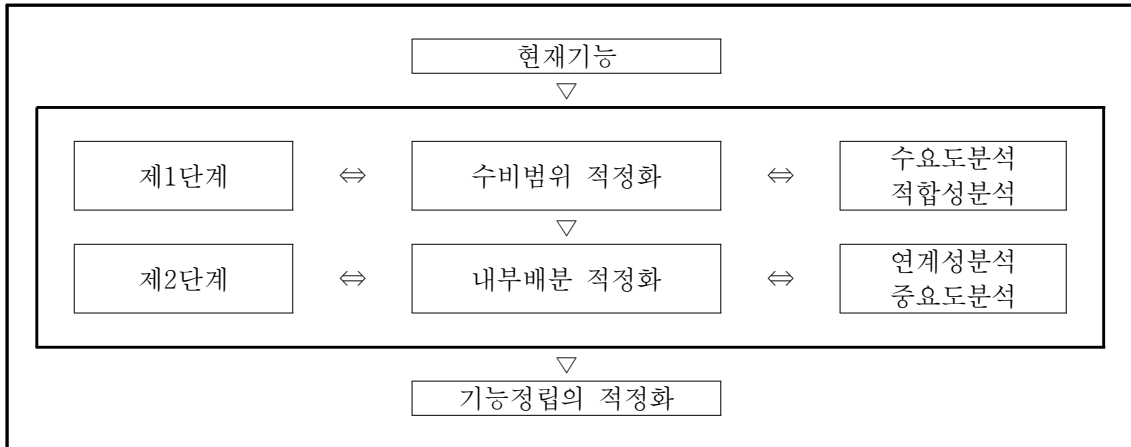
- 기능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부서의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제고(提高)하도록 부서별 기능을 배분하는 데에 있음
 - 다만, 부서별 기능배분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으로 적절한 기능인가에 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
- 이에 따라, 기능분석의 가장 첫 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인가에 관한 판단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별 업무의 적정배분

- 기능분석의 목적은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한 각 기능의 적정배분임
-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 업무의 적정배분이 목표임



[그림 4-2] 기능분석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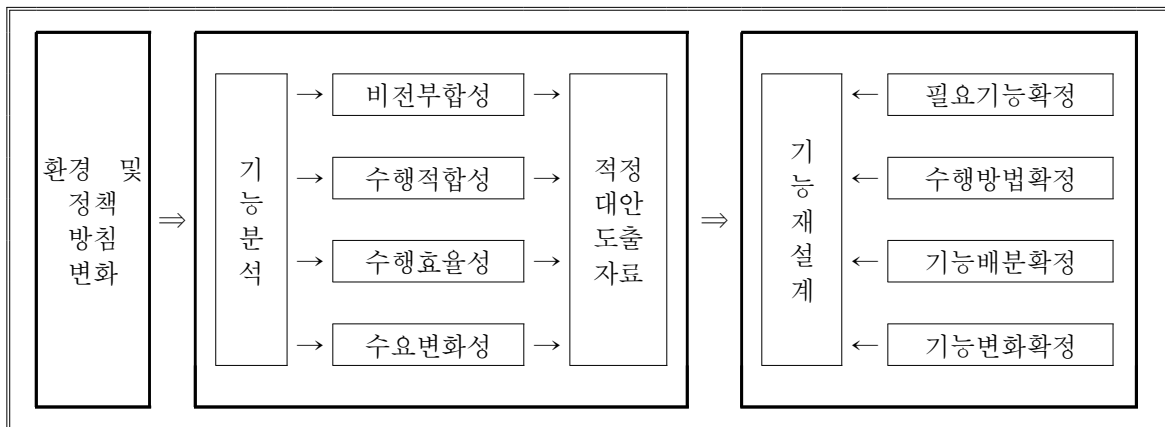


2) 기능분석의 기대효과

■ 효율적 기능 수행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기능분석은 조직의 비전, 환경변화 및 운영방식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 기능 수행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최소한의 의의가 있음
 - 조직의 기능은 조직의 비전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며, 조직체제의 운영방식에 따라서도 상응하는 조정이 이루어짐
 - 기능의 효율적인 작동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기능분석이 요구됨

[그림 4-3] 기능분석의 체계



3) 기능분석의 체계

■ 기존기능에 대한 분석 & 신규기능 분석

- 기존기능에 대한 분석은 업무범위를 확정하는 적합성 분석과 부서별 배분 적합성을 규명하는 연계성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별 수요추이를 분석하는 중요도 분석을 실시함

- 기존기능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신규업무의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수요도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기능분석 결과를 도출함
- 기능분석의 방법은 각 분석유형별로 타당한 방법을 적의 활용하여야 하나,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을 공히 활용함
 - 다만, 적합성 분석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연계성 분석에서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기능분석의 절차

■ 적합성 분석

- 적합성분석은 단위기능별로 조직이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기능인지를 판별함
- 적합성분석의 결과로서 민영화, 민간위탁, 공공위탁을 결정함으로써 조직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기능의 수비 범위를 도출함
- 적합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 등의 방법을 수행함

■ 연계성 분석

- 연계성분석은 단위기능별로 기능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기능을 범주화하고,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함
- 연계성분석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의 방법을 활용함

■ 중요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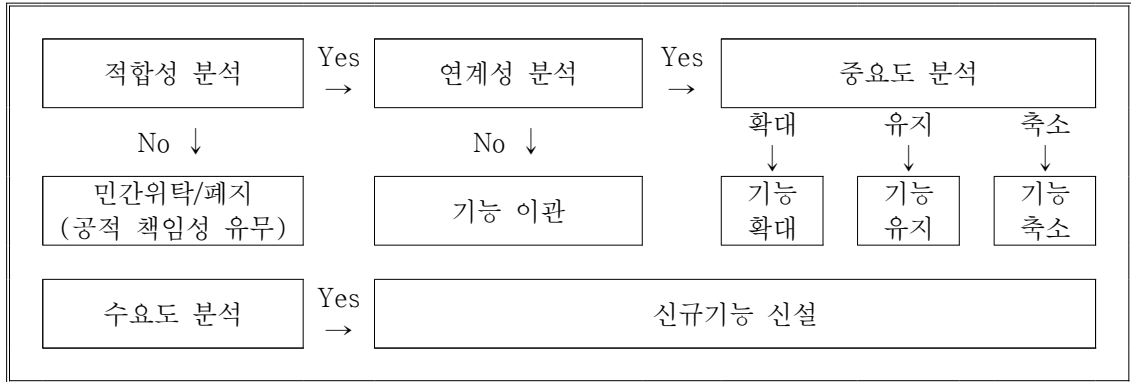
- 중요도분석은 단위기능별로 향후 기능수요 정도를 조사하여 해당 기능의 강화, 유지, 축소, 폐지 등을 판단함
- 중요도분석을 위해서 조사표조사와 전문가 워크숍 등의 방법을 적용함

■ 수요도 분석

- 신규기능에 대한 분석은 수요도분석임
- 조직의 비전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신규기능을 발굴하여 제시함
- 수요도분석은 조사표조사와 전문가 워크숍을 활용함



[그림 4-4] 기능분석의 절차



■ 기능분석의 방법은 각 분석유형별로 타당한 방법을 활용함

- 기본적으로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을 공히 활용함
- 다만, 적합성 분석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연계성 분석에서도 유사 기관의 사례를 검토함

<표 4-2> 기능분석의 방법

분석유형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결과
수요도분석	- 조사표 조사 - 전문가 워크숍	- 조사표 조사 : 공무원	- 신규기능 발굴
적합성분석	- 조사표 조사 - 벤치마킹 - 전문가 워크숍	- 조사표 조사 : 공무원	- 직접수행, 민영화, 민간위탁
연계성분석	- 조사표 조사 - 전문가 워크숍	- 조사표 조사 : 공무원	- 유지, 분리, 이관, 통합
중요도분석	- 조사표 조사 - 전문가 워크숍	- 조사표 조사 : 공무원	- 유지, 강화, 축소, 폐지

2. 기능분석결과

1) 적합성분석결과

■ 위탁할 기능

- 현재 수행기능 또는 향후 수행할 기능 중 위탁할 기능은 없는 것으로 제시됨
 -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기능 중 민간위탁 또는 공공위탁할 기능은 없는 것으로 제시됨

2) 연계성분석결과

■ 이관할 기능

- 의원발의 입법지원기능은 부서신설(예: 정책지원팀, 입법팀) 후 해당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의 입안과 조례안의 평가기능을 분리함
- 연구단체의 연구결과 입법화 기능은 부서신설(예: 정책지원팀, 입법팀) 후 해당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언론홍보, SNS 관리 등 의원 및 의회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예: 언론홍보팀) 후 업무 개편 필요
 - 의회행정팀의 홍보기능을 분리함

■ 이관받을 기능

- 이관받을 기능으로 제시된 기능은 없음

3) 중요도분석결과

■ 폐지할 기능

- 폐지할 기능으로 제시된 기능이 없음

4) 수요도분석결과

■ 신규기능

- 신규기능으로 제시된 기능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인사·조직 관리기능의 수행이 요구됨
 - 일반적인 인사관리, 채용, 복무, 징계, 퇴직 등을 관리기능이 신규기능으로 제시됨
 - 또, 인사관리 중 성과평가 기능의 수행을 위해 기능배분을 담당할 조직부서의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인건비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부서와, 소속직원의 징계에 관한 업무를 소관할 감찰 및 감사 기능이 신규기능으로 제시됨

5) 설문조사 결과와 타 시 군의회 사례분석의 시사점

- 지방의회 사무과는 지방의회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좌기관이면서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속기구로 지방의회의 일반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 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의 핵심적 기관임

-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그에 속한 인력의 존재 목적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조 및 보좌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역량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이 결정되는 비서기구로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음
- 옹진군 의회사무과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구조와 기능’, ‘성과관리와 효과적 인력운영’ 등에 대하여 직원들의 인식조사와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음. 직원 설문조사는 향후 사무처의 조직효율화와 직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임.
-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는 중간 또는 그 이상으로 나타났다음.
- 그러나 ‘업무분장의 명확성’ 이나 ‘업무 중복’, ‘부서 간 업무편차’ 등에 있어서 불만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업무성과 관리에 있어서도 체계성이나 공정성, 객관성의 측면에서 볼 때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음.
- 효과적인 인력운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성과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업무난이도에 따른 인력 배치’, ‘직무적합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이 많았음.
- 사무과 조직개편 시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법제지원’, ‘홍보’, ‘인사’, ‘사업평가’, ‘후생복지’, ‘감사’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히, 법제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법제전담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신규채용을 통한 인력 확보를 검토해볼 수 있음
 - 또한 정기적으로 공무원의 법제(법률과 제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법률실무능력을 제고할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행정법 또는 자치법규 입안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내용과 법령 해석, 집행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부서 간 또는 동일 부서 내 부서원 간 업무량 편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업무량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특정 부서와 부서 내 특정 인력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욕 저하로 조직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장기 인력관리 계획의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성과평가의 체계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등의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부서원 간 업무와 성과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업무량이 과도하게 특정 부서와 직원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는 그만큼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또한 ‘의회사무과 조직개편 시 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부문’으로 예산 집행 감시를 지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음. 그런 점에서 예산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음.
- 2021년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된 정책지원관 인력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정책지원 전담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타지방자치단체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서울시 강북구의회와 같이 정책지원팀에 배치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강북구의회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성동구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한 사례임.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면 전문위원, 전문위원실의 위원회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제3절 직무분석

1. 직무분석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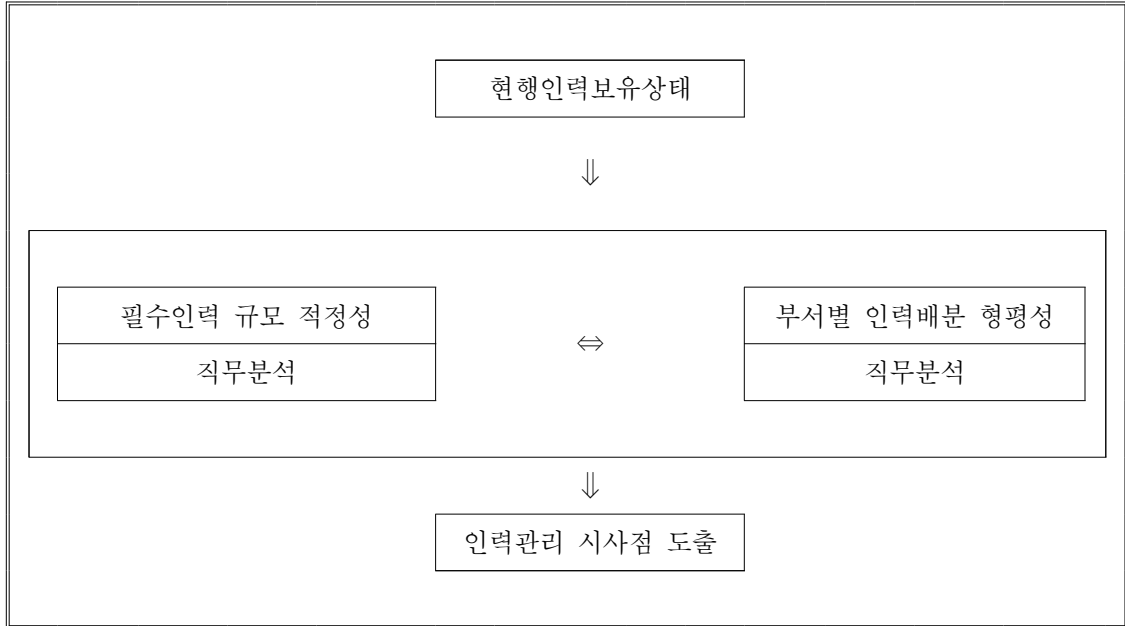
1) 직무분석의 목적

■ 부서별 인력배분의 형평성 확보

- 직무분석은 진단 대상 조직의 필수인력규모의 도출과 부서별 인력의 형평성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직무분석은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하는 관리활동임
-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직 내 부서 간 업무량의 형평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 4-5] 직무분석의 목적



2) 직무분석의 활용

■ 인력재배분 대안 도출

- 인력 재배분은 인력을 업무에 맞추어, 그리고 부서별 업무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재배치하는 것임
- 첫째 단계에서는 담당별 기능조사표(수행기능별 인력소요정도), 신규기능에 따른 추가인력수(사전조사 시 인력조정 근거내역자료, 수요도 조사결과, 담당별 기능조사표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 타시군지방의회 사례) 등을 참조하여 확정된 기구개편안을 토대로 재조정된 기능의 수행인력을 파악함
- 둘째 단계로는 진단과정에 참여한 전문가의 workshop을 통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관적 보완과정을 수행함
- 셋째 단계로는 전문가workshop에 의한 주관적 보완과정을 통해 기본인력조정안을 토대로 필수인력규모를 반영하여 최종 인력조정안을 작성함

3) 직무분석의 절차

■ 직무분석 4단계

- 제1단계는 준비단계로 분석대상직무, 직무분석의 목적, 필요성에 대한 교육, 수집할 정보의 종류 등을 결정함
- 제2단계는 설계단계로 자료의 출처와 인원수,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등을 결정함

- 제3단계인 자료수집 및 분석단계에서는 직무요인 파악,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의 재검토 및 자료의 분석과 종합화함
- 제4단계에서는 최종결과로 부서별 인력운영현황(과부족인력 산출결과 등)을 제시함

<표 4-3> 직무분석의 절차

단계	이론적 절차	실제 절차
준비단계 (1단계)	• 분석대상직무의 선정	• 중앙정부 부처 청사 전체 직무
	• 직무분석의 목적결정	• 적정인원의 선정
	• 조직구성원에게 직무분석의 필요성 인식	• 직무분석 SHEET설명회 개최
	• 수집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 명시	• 인적 사항과 직무사항
설계단계 (2단계)	• 자료의 출처와 인원수 결정	• 옹진군의회 전체 직무, 전체 직원
	• 자료수집방법 결정	• 설문지법(직접면접에 의하여 보완)
	• 자료분석방법 결정	• excel, SAS패키지 이용분석
자료수집 분석단계 (3단계)	• 직무요인의 특성파악	• 업무량, 평균근무시간 등
	• 자료의 수집	• 설문지(조사표)회수
	• 수집된 자료의 재검토	• 직접면접방법활용
	• 자료의 분석과 종합	• 통계패키지 활용 분석
결과정리단계 (4단계)	• 결과정리	• 부서별 인력운영현황

4) 필수인력규모 추정

- 필수인력규모는 법적 규정시간의 근무를 토대로 현재 업무량 대비 필수추가인력을 의미함
- 실제 총업무량과 법정근무일수로 조정한 1일 평균근무시간을 토대로 필수인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연평균근무일수와 1일 평균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
- 연평균근무일수는 국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근무일수, 1일 평균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8시간을 적용함



- $T_1 = D_i \times W_i$: 실제 총 업무량<식 1>
- $T_2 = \frac{T_1}{LD}$: 조정한 1일평균근무시간.....<식 2>
- $T_3 = ((T_2 - S_i) \times M_i) / S_i$ 사업부서별 부족인원<식 3>

D_i 는 i라는 과의 평균 근무일수를 의미함
 W_i 는 i라는 과의 평균 업무처리시간을 의미함
 LD 는 법정근무일수를 의미함
 M_i 는 현원을 의미함
 S_i 는 1일 기준근무시간을 의미함

2.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용진군의회의 조직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에 관련하여 설문을 구성하였고, 조직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인식을 분석하고자 함

2) 설문응답률

- 용진군 의회사무과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였고, 설문조사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진행함. 부서별 설문참여율은 <표 4-4> 와 같음

<표 4-4> 의회사무과 설문응답률

(단위: 명)

부서명	설문응답자 수	응답률
전체	14	100%
의정행정팀	7	50%
의사지원팀	3	21.4%
전문위원실	1	7.1%
기타	3	21.4%

주: 응답자의 기본 기재사항만 누락한 경우는 기타로 구분함

3) 조직운영의 분석결과

■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전체적 평균은 3.21점으로 보통수준임

- 조직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불균형한 업무배분과 업무구분에 대한 모호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함. <표 4-5>참조
- 조직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정비, 직원 전문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분장, 업무분장 명확화 등을 제시함.

<표 4-5> 조직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구분	조직운영상의 문제점	조직운영상의 해결방안
의정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균형한 업무배분 • 부서별 업무분장 미흡 • 업무구분 모호 • 업무분장에 대한 직원들 간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정비 • 업무분장 명확화
의사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분장의 전문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전문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분장 필요

4) 업무량의 분석결과

■ 의회사무과의 1일 평균 실제업무에 소요된 시간은 약 4.96시간임

- 의회사무과의 1일 초과근무 시간은 평균 53분임 <표 4-6>참조

<표 4-6> 의회사무과 업무량

구분	1일 평균 실제업무시간	1일 평균 초과근무시간
의회사무과	4.96 시간	5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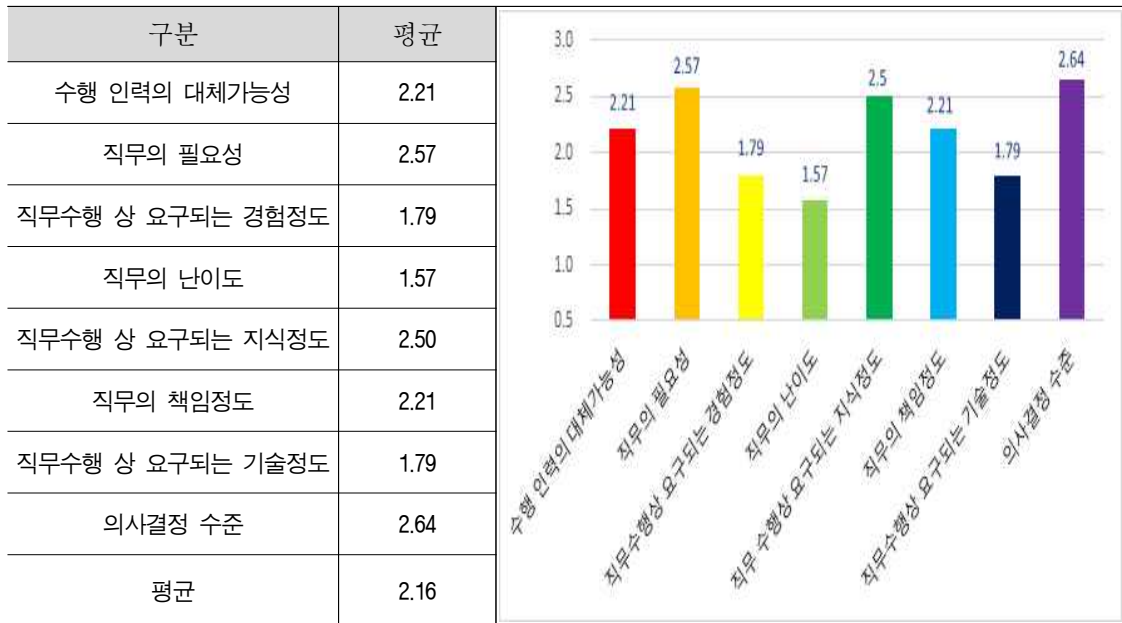
5) 직무수준의 분석결과

■ 의회사무과 직무수준의 분석결과는 전체 평균은 2.16점으로 나타남.

- 의회사무과의 직무수준에 대한 수행인력의 대체가능성, 직무의 필요성, 직무난이도, 직무책임성, 직무의 의사결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는 <표 4-7>와 같음.
- 의회사무과의 직무수준 전체 평균에 비해 직무의 의사결정수준(2.64점), 직무의 필요성(2.57점), 직무 수행상 요구되는 지식정도(2.50점), 수행 인력의 대체가능성, 직무의 책임정도(2.21)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분석결과 의사사무과 구성원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수준은 매뉴얼, 규정에 준하는 실무지식이 있어야 하며, 재량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많고 응용하여 판단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직무수준으로 조사됨.



<표 4-7> 의회사무과의 직무수준



6) 조직개편의 분석결과

■ 조직개편에 대한 입법홍보팀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의정보도자료 게재를 위한 웅진군청 기획예산실 중 의회 보도자료 게재 및 배부 업무가 의회사무과로 이관을 희망하는 업무로 분석됨

- 조직개편에 있어 이관을 희망하는 업무에 있어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의정입법 홍보 및 의원연구를 위한 입법홍보팀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웅진군 의회사무과로 이관 받을 업무에 있어서는 신문사에 보도자료 게재 및 배부의 업무가 기획예산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의회사무과로 이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표 4-8> 이관을 희망하는 업무에 대한 의견

이관할 업무 내용	이관 희망 조직	주요이유	인력변화예측
홍보 및 의원연구단체	의정행정 ⇒ 입법홍보(신설)	정책지원관의 사무와 전문적 체계화	1명 감소
신문사에 보도자료 게재 및 배부	기획예산실 ⇒ 의회사무과	신속한 보도자료 배부	현행유지

- 의회사무과의 신설업무 및 조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4-9>와 같이 제시함.

<표 4-9> 신설업무 및 조직에 대한 의견

신설필요분야	이유 및 근거
입법홍보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입법기능 강화와 활성화된 의정입법부분 홍보로 군민에 활동사항 적극 홍보 필요
의정(홍보)지원	의정행정팀은 총무팀 개념으로 의장 및 의원 수행 전담팀이 필요함. 각종행사, 협의회 수행, 사진촬영 & 의전담당자 등)
운전	인력 부족으로 현 직원들의 외부 출장 및 업무가중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 의회사무과와의 상호업무 협조가 필요한 업무는 인사·교육·포상, 보도자료 스크랩 및 게재, 의안처리 및 의사일정 조율 등으로 제시함. <표 4-10> 참조
- 의회사무과와의 상호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서는 행정자치과와 기획예산실로 제시함

<표 4-10> 협조가 필요한 업무와 부서에 대한 의견

부서간 상호업무 협조 필요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서
인사·교육·포상 등	행정자치과
보도자료 스크랩 및 게재	기획예산실
의안처리 및 의사일정 조율	기획예산실



제5장 조직재설계

1. 조직개편안: 제1안(현행인력을 재배분, 팀장 1명(직급 변경 요청))

1) 기능배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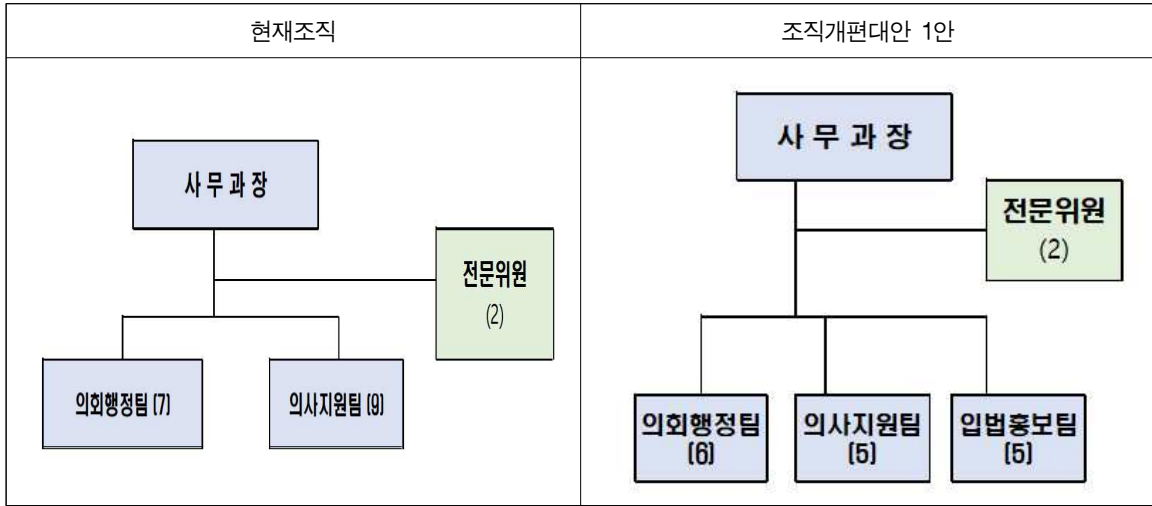
■ 입법, 홍보지원 기능 확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2022.1.13.)에 따라, 입법지원 및 홍보 기능을 확대
 - 현재의 전문위원실(상임위원회별 인력배분) 현행대로 운영을 유지하되, 입법홍보팀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을 소속하게 하고, 의회주요 기능중에 하나인 입법기능과 언론홍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책지원관 인원 3명 및 홍보 관련 인력 1명과 부서관리자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교육·훈련 기능 강화
 -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력관리(경력관리)기능은 채용뿐만이 아니라 복무, 퇴직 등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기능을 의미하는 바, 이와 관련한 기능 강화가 요구됨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도 개정되어 의회사무과 직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하며, 아울러 의원 교육 프로그램 또한 강화가 필요함

■ 의회운영조직과 의정지원조직의 구분

- 의회운영조직으로 의회행정팀, 의사지원팀을 설치하고, 의정지원조직으로 입법홍보팀을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함(입법 및 홍보기능강화)
- 현재의 전문위원실은 기능은 현행유지하되, 향후 지방분권의 확대에 따라 인력의 증감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조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검토함
 - 전문위원의 직급이 5급 상당으로 팀 단위 조직으로 설치하는 경우, 부서장(6급)과 직급이 맞지 않는 한계가 있는 바, 현시점에서 직급 및 인력 한계가 있음
 - 향후에는 전문위원실의 기능도 확대하여 의안에 대한 검토·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총 정원 19명 유지범위 내 팀장 1명 직급 변경

[그림 5-1] 조직개편 1안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과 2팀 1전문위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행정, 의사지원, 전문위원실
검토 요건	기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위탁 대상 기능 없음 ■ 기능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간 연계성 높음 ■ 기능수요 변화(신규기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시행(2022.1.13.) (의회소관부서로 전환)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배분, 기능배분 등으로 총무기능 수행부서 수요 증가 - 인건비 관리 등 재무관리 기능 수요 증가 - 의원의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에 따른 인사관리 기능 확대
	한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변경사항	비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과 3팀(+전문위원): 의정, 의사, 입법홍보, 전문위원 - 의정팀: 문서, 보안, 관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의전, 대회협력 등 - 의사팀: 본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 조정 등, 위원회 의사진행 등 - 입법홍보: 언론홍보, 자치법규 정비, 연구단체 운영 ■ 인천광역시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국 3팀(+전문위원): 의정, 의사, 정책 지원, 전문위원 - 의정팀: 문서, 보안, 관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의전, 대회협력 등 - 의사팀: 본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 조정 등, 위원회 의사진행 등 - 정책지원팀: 의원연구단체운영 지원, 정책지원관 관리
	개편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및 인사 기능 강화 - 입법홍보팀 신설(언론홍보 및 정책지원관 중심 운영) - 전문위원실 인력 증가(상임위원회별 배치)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과 3팀 1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행정팀, 의사지원팀, 입법홍보팀, 전문위원실



2) 인력배분안

■ 조직개편안에 따른 용진군의회사무기구의 인력규모는 총 19명(의회사무과장 1명 포함)임

- 현재 정원(19명: 의회사무과장 1명 포함) 총 수는 유지하면서 1팀 신설
 -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의 시행 일정에 맞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의 확대됨에 따라, 부서별 인력감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인력대비, 업무 조정 및 팀 신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직급 변경(7급 → 6급)
- 신규기능으로써 의회홍보기능을 담당하는 인력과, 정책지원관 인력을 반영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인사관리 및 인건비 예산 등의 기능을 소관하는
 - 의회행정팀의 인력은 의회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함
 - 언론홍보, SNS 등 의회 홍보 기능을 강화함
 - 현재 의사지원팀 소속인 정책지원관 3명을 신설되는 입법홍보팀 소속으로 재배치하고 의회행정팀의 홍보기능을 입법홍보팀으로 이관

<표 5-1> 용진군의회사무기구 인력배분 대안 1

팀	정원	증감	조정안	비고
전체	19	0	19	
의회사무과장	1	0	1	• 사무과장
의회행정팀	7	-1	6	• 홍보 기능 및 의원연구단체 이관, 의회행정에 집중 • 인사권 독립에 따른 기능추가
의사지원팀 (공무2포함)	9	-4	5 (공무2포함)	• 업무재배분. 회의진행 및 의사운영에 집중
입법홍보팀	0	+5	5	• 입법 기능 및 홍보기능 확대에 따른 팀 신설 • 입법지원, 홍보 업무, 의원연구단체 • 팀장 1명(직급 변경), 정책지원관 3명, 일반직 1명
전문위원실	2	0	2	• 상임위원회 운영 및 심사 기능 강화

2. 조직개편안: 제2안

1) 기능배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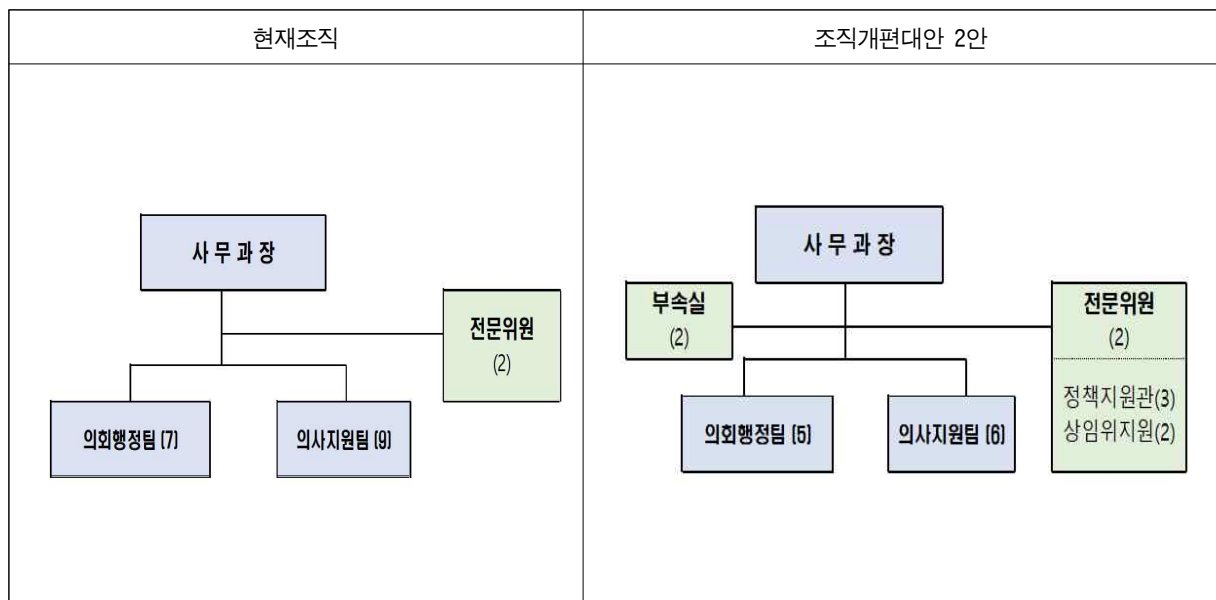
■ 입법지원기능 확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을 시행(2022.1.13.)에 따라, 입법지원기능을 확대
 - 현재의 전문위원실(상임위원회별 인력배분)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지원관 3명과 전문위원 2명, 일반직 1명을 전문위원실로 업무 재조정과 함께 재배치하여 전문위원소속으로 위원회 업무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게 하고 복무는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게 함.
 - 채용된 정책지원관 활용 방안을 포함
- 현재 의회행정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또는 의장보좌기능(부속실 또는 비서실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 후, 의회행정팀은 인사관리를 포함한 모든 총무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존치

■ 계선조직과 참모조직의 구분: 전문위원실 기능 강화 및 운영변경

- 계선조직으로 의회행정팀, 의사지원팀, 정책지원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실 기능을 강화하고 , 참모조직으로 부속실을 독립 설치하여 운영함

[그림 5-2] 조직개편 2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웅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체계 개선연구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과 2팀 1실 - 의회행정, 의사, 전문위원실 	
검토 요건	기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합성 - 위임·위탁 대상 기능 없음 ■ 기능연계성 - 기능 간 연계성 높음 ■ 기능수요 변화(신규기능 등) -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시행(2022.1.13.) (의회소관부서로 전환)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배분, 기능배분 등으로 총무기능 수행부서 수요 증가 - 인건비 관리 등 재무관리 기능 수요 증가 - 의원의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에 따른 인사관리 기능 확대 - 기타 독립적인 감사기능 수행이 필요
	한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비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포시 - 의회사무과 3팀(+전문위원): 의정, 의사, 입법홍보, 전문위원 - 의정팀: 문서, 보안, 관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의전, 대화협력 등 - 의사팀: 본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 조정 등, 위원회 의사진행 등 - 홍보팀: 언론홍보, 자치법규 정비, 연구단체 운영(정책지원관) ■ 인천광역시 동구 - 의회사무국 3팀(+전문위원): 의정, 의사, 정책 지원, 전문위원 - 의정팀: 문서, 보안, 관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의전, 대화협력 등 - 의사팀: 본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 조정 등, 위원회 의사진행 등 - 정책지원팀: 의원연구단체운영 지원, 정책지원관 관리
개편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안 - 현행 2팀 체제 유지 -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상임위원회별 배치 및 업무재조정)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국 2팀 1실 - 입법 및 의원 지원기능을 전문위원실(업무분장 포함)로 일원화 	

2) 인력배분안

■ 조직개편안에 따른 웅진군의회사무기구의 인력규모는 총 21명(의회사무과장 1명 포함)임

- 현재 인력(19명: 의회사무과장 1명 포함) 대비 2명 증원 규모임
- 신규기능으로써, 총무기능을 담당하는 인력과, 정책지원관 재배치로 인한 홍보 인력 반영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인사관리 및 인건비 예산 등의 신규기능을 소관하는 의회행정팀의 인력은 부속실 등 재배치 (부속실 업무, 의전기능 등 그대로 수행)
 - 정책지원관 3명을 전문위원실에 상임위원회 별로 배치하여 입법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부록 : 타시군 사례 벤치마킹 참조)

〈표 5-2〉 응진군의회사무기구 인력배분 대안 2

(단위: 명)

팀	정원	증감	조정안	비고
전체	19	2	21	• 입법지원, 인사 등 신규기능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인력 3명 증원
의회사무과	1	0	1	• 사무과장
의회행정팀	7	-2	5	• 의회행정 특화, 인사기능 추가 • 의회운영 종합 조정 및 동향관리 • 예산 지출 업무,계약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급여 및 연말 정산 • 의회사무기구 정원등 관리 • 직원 복무 및 교육관리 • 언론기능 및 홍보기능 강화
의사지원팀	9 (공무2포함)	-3 (공무1 포함)	6 (공무1포함)	• 회의진행 및 의사운영 특화 • 회기관련 업무총괄 • 의사운영 및 지원 • 의안접수 및 배부, 청원 등 • 의결문서의 이송 등관리 • 입법기능, 의원 개별지원 기능 분리
전문위원실	2	+5 (공무1 포함)	7 (공무1 포함)	• 전문위원 2 + 정책지원관 3 + 직원 1 일반행정의 형태로 상임위원회 지원기능 강화. 입법 기능 전문성 확대(위원회 별구분) + 공무 1 • 의원연구단체 업무지원 • 의회관련 자치법규 정비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운영 •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운영 •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운영 •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운영 및 지원 • 의원요구자료 관리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운영 및 지원 • 정책지원관 소속업무
부속실	0	2	2	• 의회행정팀에서 업무이관 및 인력 재배치

3. 조직개편안: 장기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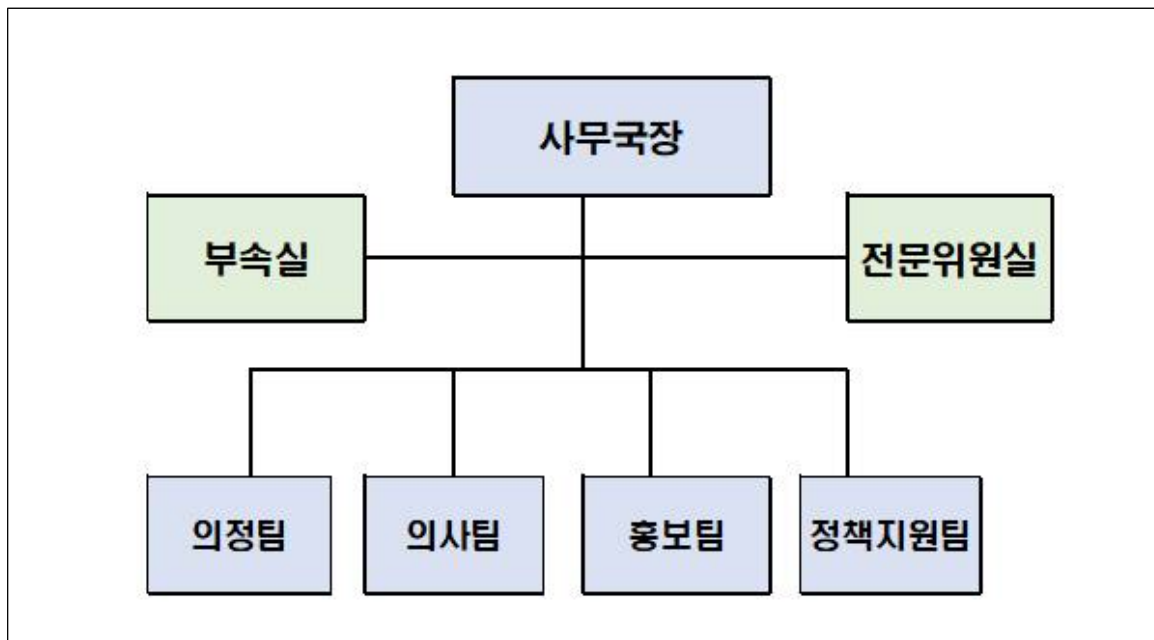
■ 응진군의회사무과의 이상적인 조직구성형태로 장기적인 지향점으로 제시함

-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임과 동시에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나, 지방의회사무기구는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없음
 - 기초자치단체 집행부의 각 부서는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바, 감독 대상이 됨
 - 이와 다르게, 의회사무는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관위임사무로 위임받아 수행하



- 는 사무가 없는 바, 상위 기구와 동일한 행정기구설치의 규모와 인력배분 규모가 요구됨
- 특히, 입법지원기능의 경우, 기초의회의 입법지원사무는 상위법령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해야 하는 바, 상위법령만 검토해도 되는 광역의회의 입법지원기능 보다 그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기구로서의 최대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배분 및 기구개편대안을 제시함
- 향후 사무과 → 사무국 격상으로 조직확대(정부에서 의회기능강화 일환 사무과장 직급 상향 가능)

[그림 5-3] 조직개편 3안



4. 지방의회 지원체계 개선방안

1) 지방의회 지원의 의의

■ 지방의회 운영환경의 변화

- 민주화의 커다란 흐름 속에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이 되었으며, 지난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2022년 7. 1. 제9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였음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지방을 운영하는 중요한 양대 축 중의 하나이며,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핵심적 주체이고 기관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다음으로, 예산·결산의

- 심의 및 심사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기도 함
- 청원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도 함
 -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우리의 지방자치 성과를 결정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보증하는 기제라 할 수 있음
-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활동하기 시작한 후, 지난 30여년 동안 지방의회는 적지 않은 활동을 해왔음
- 지역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지방의 각종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및 확정, 집행기관의 감시와 통제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편임
 - 많은 안건을 처리했지만 대부분이 집행기관에서 발의한 것이라는 점,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출신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앞세운 점, 소수이긴 하나 일부 의원들의 부도덕한 행동의 노출 등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음²⁾
- 이러한 측면에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집단들의 평가 역시 부정적이며, 1995년 지방의원, 의회사무처 공무원, 집행기관 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보통 57.3%, 만족 7.9%, 불만족 32.7%로 의정활동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임
 - 지역주민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59.3%, 불만족이라는 응답자가 39.6%에 달하여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³⁾
- 지방자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출범된 지방의회가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역량을 잘 갖추고 활동했을 때, 지방의회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
 -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역량제고는 지방의회의 각종 의정활동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초 활동이며, 이러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역량제고도 필요하지만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마련도 필요임

2) 지방의회 지원의 논리

- 2) 이러한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의원의 자질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전문성의 취약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중요한 영향변수의 하나라는 점은 기존연구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음(박종득 외, 2001; 최근열 외, 2000).
- 2) 지방의회활동의 긍정적 측면은 자치단체의 자주권과 자율권 신장, 주민참여기회 확대, 지역특성 및 잠재력 개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 대 정부활동의 활발한 전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민생 및 지역사회 당면과제 해결노력 등임. 지방의회활동의 부정적 측면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의정활동경험부족에 따른 의회운영 차질, 지역개발사업을 둘러싼 의원 간 갈등, 일부 의원들의 부조리, 전문성 부족, 형식적인 민원처리 등임(지방의회백서, 1996).



■ 지방의회 지원의 의미

- 우리나라는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몇몇 지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 제도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지원하는 제도들임⁴⁾
 - 의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설치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의한 지원제도임
 - 둘째, 전문적 지식의 지원체제임
 - 의원들의 해당지역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 및 기초의회에 두고 있는 전문위원제도 등임
- 지방의회 사무조직은 지방의회 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시·도와 시·군·구 기구의 명칭이 약간씩 다름
 -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시·도의회에는 사무처를, 시·군·자치구의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요 활동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구로써 지방의회가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임
 - 지방의회 사무조직은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함
- 전문위원제도는 지방의원들이 의안심의·처리 등의 입법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지원제도임
 - 지방의원이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지만, 지방의원들은 실생활에서 생계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의원들은 제한된 시간과 전문성의 결여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 및 전문위원 등의 제도를 통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또 다른 한 축인 집행기관은 많은 전문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맡아 직접 집행하거나 지원하는 체제를 잘 구축하고 있음
 - 주민의 대표 합의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하여 입법기능, 의결기능, 행정에

4) 지방의회 사무기구(사무처, 사무국, 사무과)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주요 기능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구이며, 지방의회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조직체를 구성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존재 의미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하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체제로서 사무기구라는 조직과 관계된 인력(직원)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집행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제도 및 지원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치경찰업무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율성 확대에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지원 기능의 확대·강화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음
- 전문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지원제도의 개선과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의 필요성

-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다양하며, 대표적인 필요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의회의 많은 정책기능에 대한 대응력 제고의 필요성임
 - 해당 지역의 조례제정, 개정, 예산과 결산 승인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정책집행을 감시 및 비판함으로써 집행부의 통치권 수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점점 더 복잡다기해지는 현대사회의 지역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함⁵⁾
 - 지방의원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만 되는 것도 아니며, 특정분야의 업무만을 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해야 하는 신분임
 - 지방의원은 자기의 전문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의 필요한 도움이 있어야만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정이며,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도 하나의 이유임
- 둘째, 현대 사회의 지역 정책기능의 전문화에 따른 대응력 제고의 필요성임
 - 지방의원이 처리해야 하는 지역 조례의 제·개정이나 특정 정책에 대한 지원 및 감시활동에는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임
 - 지방정부의 조례안의 발의활동은 단체장 발의가 압도적으로 많아 입법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의회는 오히려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정을 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 단체장 주도의 입법 활동을 견제하려는 데 초점을 둔 제한적인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5) 현대의 지방정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음(Buchanan, et.al.,1960).



- 지방의회의 기능도 적고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 수도 적은 데서 기인하기는 하지만 지방의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잘 정비된다면 의원들의 전문 분야의 대응능력은 많은 부분 개선될 것으로 봄
- 셋째, 지방의회 인력운영의 독립성 확립의 필요성임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직무감독권을 부여하면서도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것은 상호 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비롯한 인사발령권 등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하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권한이 의회사무기구의 보좌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 지방의원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명령통일의 원칙이나 지휘의 일원화 원칙 등 행정관리의 원칙이 인사권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전문영역의 정책보좌기능 보장 필요성임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사무처(사무국, 사무과)는 전문위원 등의 전문직보다는 행정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은 일반관리직 중에서도 총무와 내부인사업무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을 위한 자료담당의 인원은 명목적이거나 미미한 실정임
 - 전문위원이나 보좌관제의 필요성은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지방의원 보좌관은 의원 개인에 대한 지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 기능을 강화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이 됨
 - 전문위원과 의안담당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특화된 전문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요구됨
 - 각종 법률, 조례, 규칙, 행정사례, 선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분석역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행정사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조사, 분석할 역량도 보유하여 의장과 의원을 잘 보좌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의회 및 의원들의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전문직의 지원이나 전문보좌관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 다섯째, 소의회제에 적합한 제도운영의 필요성임
 -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약 1천만 명 정도 더 많은 프랑스의 지방의원 수는 50만 명이 넘어 우리나라 지방의원 총수의 138배에 이르고, 영국은 10배 이상 많은데 그만큼 우리나라 지방의원 1명이 하는 일을 프랑스에서는 120명이 하고, 영국에서는 10명이 더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

- 외국보다 적은 수의 의원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방의회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임
- 우리나라는 소의회제를 채택·운영하는 체제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적절한 지방의회 지원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여섯째,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 필요성임

- 지방의회의 역량은 지방의회의원 및 의회조직이 변화에 대응하고 현재나 미래의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산출해내는 제반 보유능력임
- 지방의원의 역량은 우선, 역할기능 부문에서 지역주민의 대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입법을 비롯한 최종적 의결기능을 원활하게 처리하며, 정치적으로 체제유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해야함
- 지위·권한 측면에서 의결권, 행정감시권, 청원수리 및 처리권 등을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함
- 지방의원들이 이러한 역량을 잘 발휘하려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제도가 잘 구비되고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 사무기구의 기능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을 분류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구성차원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조직유지 차원의 의회자체 관리유지를 위한 기능임
 - 조직관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모든 행정업무를 포함하며, 회계·경리, 건물·시설물 관리, 문서처리, 인쇄작업, 우편물발송, 인사관리, 사무실배정 등이 해당됨
- 둘째, 의회운영의 차원의 의회 특정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임
 - 위원회의 회의장 준비·관리, 의사진행, 입법지원체제의 운영, 전문위원 운영, 보좌관계의 운영 등이 속함
- 셋째, 기능차원에서 의회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일체의 필요한 업무들임
 - 예산심의, 청문회 개최, 정책사업평가, 정보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됨

3) 지방의회 지원체계의 일반적인 문제점

■ 첫째, 조직의 자율권이 취약함

- 법령의 기준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와 인원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는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⁶⁾, 제2항에 의해 시·도 의회사무처, 시군구 의회사무국·의회사무과는 이러한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⁷⁾
- 지방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양적으로 많아지고, 질적으로 복잡해질수록 의회사무기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사무조직이 이러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정된 인사 관련 제도로도 다소 부족한 실정임
- 지방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 주민의사 수렴활동, 대화와 협상활동 등의 전반적인 정책활동 능력이라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총체적인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조직의 자율성 제고,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 등이 매우 중요함

■ 둘째, 정책조사·연구기능이 취약함

- 현재 지방의회 정책조사연구기능에 관하여 사무기구의 분장사무규정에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의회행정팀과 의사지원팀의 사무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조사연구 실적이 거의 없는 등 매우 미약한 실정임
- 전문위원은 너무 다양하고 많은 업무가 부과되고 인력도 제한되어 전문 역량을 발휘하기 쉽지 않음
 - 전문위원과 관련된 업무는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전문위원의 소관 안전에 대한 검토 보

6)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7)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고, 전문위원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위원회 의사진행,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준비, 소관 위원회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셋째, 의정보좌기구가 취약함

- 현재 전문위원은 법적으로는 의안심사와 회의진행을 담당하며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음
 - 전문위원은 집행기관 실무부서의 장보다 그 직급이 낮기 때문에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지방의회의 정책연구기능이라고는 의회의 피감사기관인 집행기관장이 임명하는 전문위원 밖에 없음.

■ 넷째, 직원 전문교육기능의 부재문제임

- 의회사무 중에서 일반 관리사무는 집행기관과 비슷하지만, 회의 및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나 연구조사에 관련된 사무는 집행기관의 사무와는 달라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함
 - 의회사무기구는 각종 안전심사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보조 및 의회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의회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초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직후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는 거의 없는 바,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훈련이 필요함

■ 다섯째, 부서간 전문위원실간 기능분담이 불명확 함

- 현재의 의회사무과 직원은 주로 의회행정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정보좌와 관련된 업무는 집행기관과 위원 간의 자료전달, 안전검토, 기 집행된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의 소극적인 보좌수준에 머물고 있음
 -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의회사무기구임
 -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일본이나 국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열악한 현실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대부분의 의회가 취하는 정책이 행정부서보다 전문위원실을 보강하고 있음
 - 전문위원실이 새로운 업무개발 없이 기존의 행태와 같이 회의진행보좌, 현지 확인 수행 등과 같은 행정, 연락업무에 종사할 경우 이 또한 실익이 없음⁸⁾

8) 다만,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인사제도의 개선으로 일반직보다는 전임계약직 등으로 할 경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논의가 있음. 즉, 제한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미약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집행하기 위한 의회의 자치권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러한



4) 지방의회사무기구의 활성화 방안

■ 첫째, 사무기구 등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의 확대·강화가 필요함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
- 각 지방의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운영권을 대폭 허용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편
 - 의회사무기구는 부족한 의원의 전문성을 보좌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하나 현재의 의정지원 기능은 주로 사무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직원의 인사권도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어 사무직원의 양질의 의정활동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음

■ 둘째,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을 부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요구와 능력에 알맞게 짜여 지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구를 일률적으로 구성했음지라도 자치 실시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행정 기구의 요구를 새롭게 측정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여야 함
 - 모순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⁹⁾에 의해 이러한 보장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지방의회가 현행 법이 허용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권 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201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였으나 아직도 지방의회가 사무기구의 조직권을 적극적이며 창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임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조직권을 제약하는 법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권을 확대해줄 필요가 있음

■ 셋째, 입법조사관의 설치가 필요함

- 사무과의 올바른 기능은 의회의 정책결정능력과 매우 깊은 상관관계에 있음
 - 입법정보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의회가 입법정보의 수집을 로비스트나 행정부에 의존하였으

이유로 인해 주민과 공무원을 통한 인식조사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매우 낮게 평가되기도 하였음.(송광태, 2003)

9) 지방자치법 제91조 제 1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되기 전, 동법 제103조 제 1항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나 의회의 행정부 종속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생기자 의회의 독립된 정보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¹⁰⁾

- 의회의 입법보좌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은 지방정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능력을 제고함에 있어서 사무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 의회사무처 입법조사관(광역의회의 경우)이 의회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행 정직 공무원과 직무가 다른 점과 전문적인 역량발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조사직은 전 문직으로 분류하여 엄격히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방의회에도 필요한 자문기구의 구성과 활용

-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정책입안활동과 활발한 심의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자문 에 응할 수 있는 자문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¹¹⁾
- 자문위원에는 지방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의회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학술연구기관의 연구원과 전직 지방의회 사무처나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다섯째, 집행기관과의 권한배분관계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권한 배분의 문제로서 양 기관의 권한 배분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은 제도적으로 집행기관우위의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 고, 실질적 권한 행사에 있어서도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 여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재의결된 사항에 대한 대법원에의 제소권, 집행정지결정신청권, 선결처분권과 같은 강력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도 단체 장에게 주어져 있는 등의 불균형의 개선이 필요함

10) 따라서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결정 능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전문보좌관의 규모가 보좌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음.

11) 지방자치가 발달한 영국의 경우에도 집행부 최고의 관료가 법률전문가였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 치단체에서 시법원이나 시법무관 등의 제도를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법률적 문제에 대처하고 지방의원들의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는 실정임(최덕규, 2002).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장기적 개선안

■ 정원 및 예산 확충을 통한 기능별 확대

○ 기능배분

- 입법지원기능 강화 : 입법지원 전분부서 도입으로 자치단체의 법령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조례, 국가 법령 등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임.
- 지방자치단체 현안대응 : 기초의회는 특히 지역의 문제에 집중해야 하므로, 사무국에 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력(부서) 기능이 필요

○ 기구개편대안

- 전문 부서 신설 : 입법지원 및 현안대응을 위한 전문 부서를 신설하여 역량을 강화.
- 정보 및 리서치팀 강화 : 입법과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구를 담당하는 팀을 강화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
- 협의 및 공청회 강화 : 지방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 및 공청회를 강화하고 지방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도입.

○ 상호협력 강화:

-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입법 및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의회가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지방의회 구성원 간의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문성 향상과 협업 강화를 촉진.

2. 과도기적 개선안

■ 현 정원내 기능별 재배치(제1안)

○ 입법홍보 지원기능 확대: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의회 권한을 바탕으로 전문성 강화로서 입법지원기능 확대

■ 정원을 2명 증원하여 기능별 재배치(제2안)

○ 전문위원실 운영 개편 : 상임위원회별 인력과 업무 재배분

- 상임위원회별 인력과 업무를 재배분조정하고, 현재 의사지원팀 소속인 정책지원관을 각 상

입위원회에 소속하여 전문위원과 협력하여 입법지원 기능 강화.

- 현재 3명의 정책지원관이 채용되어 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전문위원이 존재하나 소관 상임위원회와 업무 분장이 없음.

○ 신규 부서 설립

- 의장보좌기능 전담 부서 신설 : 현재 의회행정팀에서 수행하는 의장보좌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 (의회행정팀 7명에 비서실 2명 포함되어 있음)
- 의회행정팀의 기능 재정의 : 의회행정팀은 인사관리를 포함한 총무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지

○ 인력 증원 및 재조정:

- 인력 증원: 현재의 19명(현원 18명)에서 2명 증원하여 신규 기능 수행.
- 전문위원실 확충으로 의회전문성 확보, 입법 및 의원지원 기능 집중
- 기존 의회행정팀 인력 조정 : 인사관리 및 총무 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부속실 신설 하여 7명의 의회행정팀 인력을 재배치(의장보좌기능 부서(부속실) 신설시 의회행정팀의 비서실 2명 배치)
- 입법과 홍보기능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입법업무를 전문위원실 기능강화를 위한 증원으로 함.
- 의회행정팀의 기능을 인사기능과 감사기능을 추가로 담당하도록 함.

- 과도기적 조직개편으로 입법지원 기능의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면서도 총체적으로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지방자치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조직을 재정비함

3. 제도 개선과 의정지원의 방향성 확보

- 조직개편안은 조직구성권이 의회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및 집행부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함. 단기적인 개편이 쉽지 않은 이유임
-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하며 그 중추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기능으로서 전문성 강화와 의정지원 활동의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추후 각 분야별 세부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활동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안 수정이 필요할 것임.

4. 상임위원회 신설됨에 따른 개선방안

■ 기본방향



- 현대 사회의 문제가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의회 활동도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이 대부분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함
-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의회 지원기구의 확대와 보좌 인력의 전문화 또한 중요함
- 또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신설 및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
- 상임위가 2023년 상반기 신설됨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분장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 등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

■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방안

- 옹진군의회에 상임위 신설에 따라 정비를 검토해야 할 자치법규는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옹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이 있음
- 먼저 의안, 질서, 징계, 표결, 회의록 관련 규정 등 많은 조문에서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와 「옹진군의회회의규칙」에서 중복되고 있음
-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는
 1. 조 번호 오류 문제
 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겸임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보임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6. 법령 표기,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의 오류에 관한 사항
 7. 간사 선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
- 위에 언급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례 정비를 한 신·구조문대비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제시한 대비표 사항 외에 상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임

<표 6-1> 「웅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생략)	제1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상임위원회와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생략)	제2조(상임위원회와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신설> 나. 다. (생략)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라.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웅진군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에 추가하여 겸임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 된다. ----- -----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로 한다.	제4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임 또는 개선된</u> ----- -----. ③ <u>제1항</u> -----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생략)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u>의장 선거</u> 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 ⑤ (생략)	제5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u>의장선거</u> <u>의 예</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위원회) ① <u>법 제64조</u> 및 제65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6조(특별위원회) ① 「지방자치법」 제64조 ----- ----- 1. ~ 3.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웅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체계 개선연구

<p>② ~ ④ (생략)</p> <p><신설></p> <p>제8조 (생략)</p> <p>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u>선임한다.</u></p> <p>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u>선임한다.</u></p> <p>제10조 (생략)</p> <p>제11조(간사) ① (생략)</p> <p>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u>호선으로 하며, 이를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회의 예비심사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제12조(소위원회) ① (생략)</p> <p>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u>보고한다.</u></p> <p>제13조(전문가의 활용) ①·② (생략)</p> <p>③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웅진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u></p> <p>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p> <p>제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 <u>선임 또는 개선한다.</u></p> <p>② ----- ----- <u>선임 또는 개선한다.</u></p> <p>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p> <p>제1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호선하고 본회의</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u></p> <p>제12조(전문가의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제31조</u>-----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3조(준용규정) ----- ----- ----- 「<u>웅진군의회회의규칙</u>」-----.</p>
---	---

- 「웅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는
-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해야 할 사무를 입법활동 등으로 범위에 제약을 둔 사항, 전

문위원실의 기능 강화를 위한 사항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된 「웅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음

<표 6-2> 「웅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생략)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무----- ---
제4조(전문위원) ① (생략)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조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장을 보좌하며,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웅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1. 규칙명 개정
2. 약칭, 띄어쓰기 사용 오류
3. 근거 법령 조문 오류
4.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문구
5. 전문위원 전문성 강화
6. 정책지원관 업무 강화
7. 정책지원관 복무 근거 규정 마련

- 위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수정한 「웅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음



<표 6-3> 「용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용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p>	<p>용진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진군의회사무기구설 <u>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u> 제6 <u>조 규정에 의하여</u>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u>조례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규칙은 「용진군의회 사무기구 <u>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u>」 제7조에 따라 --- ----- <u>조례</u> <u>시행에</u> ----- -----.</p>
<p>제2조(사무과장) ① (생 략) ② 사무과장은 다음 <u>각호</u>의 사무를 분장한다. 1. <u>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u> 2. ~ 14. (생 략)</p>	<p>제2조(사무과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각 호</u>-----. 1. <u>용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 2. ~ 14. (현행과 같음)</p>
<p>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u>지방행정사무 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 사무관 또는</u> 지방시설사무관 및 지방행정주 사로 보한다</p> <p>② 전문위원은 다음 <u>각호</u>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결산안, 청원, 진정서 등 소관 안전에 대한 <u>검토 보고</u>.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u>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 의 자료의 제공</u></p> <p><신 설></p> <p>4. (생 략) 5.·6. (생 략)</p>	<p>제3조(전문위원) ① ----- ----- <u>지방행정사무 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u> - ----- -----</p> <p>② ----- <u>각 호</u>-----. 1. ----- ----- <u>검토보고</u>. 2. ----- ----- <u>소속위원</u>-----</p> <p><삭 제></p> <p>4. <u>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 성 등</u> 3. (현행 제4호와 같음) 5.·6. (현행과 같음)</p>
<p>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 에 대하여 <u>지방의회의원</u>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u>각호</u>의 사무를 분장한다.</p>	<p>제4조(정책지원관) ① ----- ----- <u>용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 <u>각 호</u>----- -----.</p>

<p>1. ~ 4. (생략) <u><신설></u></p> <p>5.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p> <p>② (생략) <u><신설></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자료의 제공</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7. <u>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u></p> <p>8. <u>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u></p> <p>9. --- 「지방자치법」 제47조----- -----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정책지원관 임용, 복무,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침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따른다.</u></p>
--	---



[참고] 자치단체별 인구, 의회조직 현황(23.11.현재)

구분	자치단체 (인구수)	의원 정수	위원회 수	본청 공무원 수	의회 공무원 수	의회 부서 수	의회부서 명칭
서울특별시	종로구 (139,606명)	11	3	1,292	32	3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중구 (121,300명)	9	3	1,231	25	5	의정팀 / 시책사업추진반 / 의사팀 / 공보팀 / 정책지원실
	용산구 (215,397명)	13	3	1,318	32	4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성동구 (278,035명)	14	3	1,322	28	4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광진구 (336,294명)	14	3	1,422	35	5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 정책지원팀
	강북구 (289,372명)	14	3	1,354	41	5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 정책지원팀
	도봉구 (307,470명)	14	3	1,319	38	5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의정홍보팀 / 정책지원팀
	서대문구 (306,927명)	15	3	1,374	44	5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 정책지원팀
	금천구 (228,274명)	10	3	1,162	33	4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의회홍보팀
	영등포구 (375,276명)	17	3		40	5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 정책지원팀
부산광역시	중구 (38,831명)	7	2	518	14	1	사무과(의사계 / 전문위원)
	서구 (104,268명)	7	2	637	13	1	사무과(의사계 / 전문위원)
	동구 (88,008명)	7	2	647	16	1	사무과(의사계 / 전문위원)
	영도구 (106,816명)	7	2	659	15	1	사무과(의사팀 / 전문위원)
	동래구 (271,670명)	14	3	804	22	1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계 / 의사계)
	남구 (254,455명)	13	3	715	28	4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정책지원팀)
	북구 (274,481명)	14	3	1,152	24	3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금정구 (216,770명)	12	3	834	20	3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강서구 (142,777명)	7	0	680	17	1	사무과(의사계 / 전문위원)
	연제구 (203,004명)	11	3	745	15	3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계 / 의사계)
	수영구 (174,994명)	9	2	660	17	1	사무과(의사계 / 전문위원)
	사상구 (203,445명)	11	3	772	18	3	사무국(의정팀 / 의사팀 / 전문위원)
	기장군 (179,084명)	9	3	840	21	3	사무과(의정팀 / 의사팀 / 정책지원팀)
대구	중구 (87,387명)	7	2	638	18	2	의정 / 의사

광 역 시	서구 (161,149명)	10	3	771	24	3	의정 / 의사 / 정책
	남구 (140,132명)	8	3	715	10	1	의정
	달성군 (262,525명)	12	0	1,011	20	3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인 천 광 역 시	중구 (158,181명)	7	2	938	20	3	의정 / 의사 / 전문위원
	동구 (59,806명)	8	2	718	25	3	의정 / 의사 / 정책지원
	미추홀구 (405,499명)	15	3	1,199	29	5	사무국(전문위원 / 총무팀 / 의사운영팀 / 정책지원팀 / 의정지원팀)
	연수구 (390,896명)	13	3	996	26	4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기록팀 / 기획홍보팀)
	계양구 (282,158명)	10	3	963	25	4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정책홍보팀)
	강화군 (69,137명)	7	2	785	20	2	의정 / 의사
	옹진군 (20,452명)	7	3	631	18	2	의회행정 / 의사지원
대 전 광 역 시	동구 (106,957명)	7	3	739	25	4	전문위원 / 의정 / 의사 / 의정홍보
	서구 (284,870명)	13	4	1,159	39	6	전문위원, 의정팀, 운영지원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홍보팀
	동구 (218,465명)	10	3	882	33	4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중구 (224,143명)	11	3	849	28	6	전문위원, 의정팀, 의정홍보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속기팀
	유성구 (365,082명)	14	3	910	33	5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홍보팀, 운영지원팀, 정책지원팀
	대덕구 (170,297명)	8	3	791	22	2	의정 / 의사홍보
울 산 광 역 시	중구 (207,179명)	10	3	684	23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계, 의사계, 의정홍보계)
	남구 (308,438명)	14	3	905	28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홍보담당)
	동구 (1523,419명)	7	1	578	18	2	사무과(전문위원 / 의사담당)
	북구 (216,567명)	9	3	702	18	3	사무과(전문위원 / 의사담당 / 의정담당)
	울주군 (219,428명)	10	3	1,065	29	2	의정 / 의사
경 기 도	의정부시 (465,019명)	13	3	1,464	35	5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의회홍보팀 / 정책지원팀)
	수원특례시 (1,196,894명)	37	5		70	8	의정담당관, 전문위원의정팀, 인사채용팀, 의사팀, 속기팀, 홍보팀, 입법팀, 정책예산팀
	용인특례시 (1,076,098명)	32	5		75	8	의정담당관, 의정팀, 의사팀, 인사운영팀, 의정기록팀, 입법지원팀, 홍보팀, 정책지원팀, 전문위원
	고양특례시 (1,075,898명)	34	5		68	8	전문위원, 의정담당관, 의정팀, 인사팀, 의회홍보팀, 운영지원팀, 의사팀, 입법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용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체계 개선연구

)						원팀, 의정기록관리팀
	화성시 (939,302명)	25	5		53	6	전문위원, 의정팀, 운영지원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지원팀
	광명시 (280,270명)	11	3	1,183	28	5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홍보팀, 전문위원
	양주시 (265,155명)	8	0	1,073	28	6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정책지원팀, 홍보팀
	동두천시 (88,820명)	7	0	683	23	5	전문위원, 의정, 의사, 의회홍보, 입법정책
	과천시 (81,143명)	7	0	595	18	3	전문위원, 의정, 의사
	의왕시 (158,242명)	7	0	755	21	5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정책지원팀, 전문위원
	구리시 (187,620명)	8	1	812	27	5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정책지원팀, 전문위원
	오산시 (229,370명)	7	0	810	23	4	사무과(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전문위원
	군포시 (262,587명)	9	3	997	23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입법홍보팀)
	하남시 (329,559명)	10	3	1,085	28	5	사무국(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 정책지원팀 / 전문위원)
	여주시 (114,344명)	7	0	986	18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이천시 (223,525명)	9	3	1,213	24	5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홍보기록팀)
	안성시 (189,322명)	8	1	1,107	20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김포시 (486,008명)	14	3	1,627	35	5	사무국(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행정복지팀, 도시환경팀)
	광주시 (391,760명)	11	3	1,330	25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포천시 (143,690명)	7	1	1,055	26	4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
	연천군 (41,639명)	7	0	720	16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양평균 (124,822명)	7	0	940	21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정책팀)
	가평균 (62,125명)	7	1	794	18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88,741명)	8	0	705	21	4	전문위원,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태백시 (38,720명)	7	0	629	16	2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삼척시 (62,937명)	7	0	886	22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정선군 (34,323명)	7	0	661	16	4	전문위원,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속초시 (82,168명)	7	0	704	19	3	전문위원,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고성군 (27,353명)	7	0	547	21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소통팀)
	양양군	7	0	539	17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27,729명)						
	인제군 (32,003명)	7	0	570	18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사담당, 의정담당)
	홍천군 (67,346명)	8	0	807	18	4	전문위원,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횡성군 (46,409명)	7	0	586	16	3	전문위원,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영월군 (37,430명)	7	0	643	17	3	전문위원,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평창군 (40,645명)	7	0	802	20	3	전문위원,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화천군 (23,113명)	7	0	475	19	3	전문위원, 사무과(의사담당, 의정담당)
	양구군 (21,179명)	7	0	472	17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철원군 (41,490명)	7	0	684	18	4	전문의원, 사무과(의정, 의사, 입법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130,645명)	13	3	1,244	29	5	사무국(전문위원, 총무팀, 의정홍보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단양군 (27,737명)	7	0	648	21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영동군 (44,353명)	8	2	718	20	4	사무과(전문위원, 정책홍보팀, 의정팀, 의사팀)
	보은군 (31,073명)	8	2	679	20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홍보팀)
	옥천군 (49,011명)	8	2	734	23	4	사무과(전문위원, 의사팀, 의안팀, 정책지원팀)
	음성군 (91,339명)	8	0	944	17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진천군 (85,751명)	8	0	818	19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괴산군 (36,527명)	8	2	741	21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증평군 (37,435명)	8	2	470	20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충청남도	공주시 (102,295명)	12	3	1,118	25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보령시 (96,068명)	12	3	1,124	23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서산시 (176,052명)	14	3	1,231	28	5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정책지원팀)
	태안군 (60,866명)	7	0	738	19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금산군 (50,150명)	7	3	686	18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지원팀)
	논산시 (110,833명)	13	3	1,110	26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계룡시 (46,478명)	7	0	380	15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당진시 (170,097명)	14	3	1,170	31	5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홍보팀)
	부여군 (881명)	11	3	881	23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용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체계 개선연구

	(61,252명)						
	서천군 (49,242명)	7	2	744	20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지원팀)
	홍성군 (97,345명)	11	3	913	24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청양군 (30,077명)	7	1	667	18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예산군 (78,529명)	11	3	805	20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전라북도	김제시 (81,578명)	14	3	1,142	40	5	의회사무국(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 전문위원)
	완주군 (97,304명)	11	3	894	31	4	의회사무국(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전문위원)
	진안군 (24,532명)	7	2	637	18	3	의사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무주군 (23,314명)	7	1	537	22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장수군 (21,036명)	7	2	571	24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임실군 (26,053명)	8	2	652	26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순창군 (26,751명)	8	2	636	18	3	의사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고창군 (51,737명)	10	3	849	26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홍보팀, 정책지원팀)
	부안군 (49,390명)	10	3	735	25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홍보팀, 정책지원팀)
	광양시 (152,327명)	14	3	1,103	32	4	의회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전라남도	담양군 (45,386명)	9	3	676	22	5	사무과(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홍보담당, 입법지원담당)
	장성군 (42,518명)	8	3	620	18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의회행정팀, 의사지원팀)
	곡성군 (26,893명)	7	2	613	16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구례군 (24,359명)	7	0	526	16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고흥군 (61,242명)	12	3	762	26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보성군 (37,785명)	8	3	610	16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회행정팀, 정책기획팀, 의정지원팀)
	화순군 (61,310명)	10	3	773	26	4	사무과(전문위원, 의회행정팀, 의사운영팀, 정책지원팀)
	장흥군 (35,119명)	7	1	649	19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강진군 (32,748명)	8	3	669	21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홍보팀, 의사팀)
	완도군 (46,805명)	9	3	728	22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의회행정팀, 의사운영팀, 의정지원팀)
	해남군 (64,735명)	11	3	874	21	4	전문위원실, 사무과(의사팀, 의정홍보팀, 정책지원팀)
	진도군	7	0	609	16	3	사무과(전문위원, 의사팀, 의정팀)

	(28,998명)						
	영암군 (52,404명)	8	3	755	19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무안군 (90,410명)	9	3	779	28	5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회행정팀, 의사운영팀, 의정지원팀, 정책지원팀)
	영광군 (51,926명)	8	3	722	17	4	의회사무과(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전문위원실
	함평군 (30,604명)	7	3	606	18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신안군 (38,074명)	9	3	804	22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사팀, 정책지원팀, 위원회팀)
경상북도	울릉군 (9,090명)	7	0	401	14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영주시 (100,208명)	14	3	1,130	28	5	사무국(전문위원실, 총무팀,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영천시 (100,253명)	12	3	1,097	21	4	사무국(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의사담당, 의정홍보담당)
	문경시 (69,052명)	10	3	981	23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예천군 (55,450명)	9	0	753	14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경산시 (266,843명)	15	3	1,293	29	4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홍보팀, 정책지원팀)
	청도군 (41,836명)	7	2	636	14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사팀, 의정팀)
	고령군 (30,190명)	7	0	590	14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사팀, 의정팀)
	성주군 (42,207명)	8	0	687	12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사팀, 의정팀)
	칠곡군 (110,951명)	10	3	845	20	3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군위군 ()	7	0	539	16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성군 (50,165명)	13	3	859	18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청송군 (24,033명)	7	0	523	16	3	의회사무과(의사팀, 의정홍보팀, 전문위원실)
	영양군 (15,736명)	7	1	495	16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영덕군 (34,154명)	7	0	600	13	2	사무과(전문위원, 의사담당)
	봉화군 (29,753명)	8	0	681	15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울진군 (46,681명)	8	0	709	17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경상남도	통영시	13	3	1,048	27	5
창원특례시 (1,010,820명)		45	5		68	6	사무국(총무팀, 의사기록팀, 관리팀, 의회홍보팀, 입법예산팀, 전문위원)
고성군 (48,488명)		11	3	738	21	4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의사담당, 정책지원담당)
사천시		12	3	990	22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용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체계 개선연구

(109,009명)						
밀양시 (102,239명)	13	3	1,086	26	3	사무국(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의령군 (25,587명)	10	3	628	16	3	의회사무과(의정팀, 의사팀, 전문위원실)
함안군 (60,323명)	10	3	747	18	3	의회사무국(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창녕군 (57,275명)	11	3	806	20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하동군 (41,784명)	11	4	714	17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남해군 (40,946명)	10	3	683	17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함양군 (37,038명)	10	3	651	17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산청군 (33,800명)	10	3	650	16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입법지원담당)
거창군 (60,150명)	11	3	778	22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합천군 (41,354명)	11	3	784	22	4	의회사무국(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정책지원담당)



“소통하는 의회, 함께하는 의정”

부록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회 운영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옹진군의회 의회운영발전연구회

2023. 12.

【 부록 차례 】

1. 조례안①	1
2. 조례안②(축산, 인구, 관광 등)	285
3. 회의운영 및 상임위 운영 예시	439

- ☆ 별첨자료 조례안 1

□ 타 시·군에는 있으나 용진군에는 없는 조례안

구분	조례명	쪽
1	용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용진군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3	용진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4	용진군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5	용진군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6	용진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7	용진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4
8	용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9	용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34
10	용진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37
11	용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12	용진군 유희토지 적극 활용 및 지원 조례안	41
13	용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7
14	용진군 특산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안	52
15	용진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54
16	용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57
17	용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2
18	용진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65
19	용진군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68
20	용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0
21	용진군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	75
22	용진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77
23	용진군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80
24	용진군 군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84
25	용진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93
26	용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7
27	용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9
28	용진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02
29	용진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105
30	용진군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111



31	용진군 모자보건 조례안	114
32	용진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7
33	용진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23
34	용진군 군민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126
35	용진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0
36	용진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5
37	용진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43
38	용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47
39	용진군 복지협치 기본 조례안	157
40	용진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6
41	용진군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6
42	용진군 에너지복지 조례안	179
43	용진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2
44	용진군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85
45	용진군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8
46	용진군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92
47	용진군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8
48	용진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201
49	용진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7
50	용진군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210
51	용진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3
52	용진군 농업·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6
53	용진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9
54	용진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21
55	용진군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227
56	용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36
57	용진군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조활동 지원 조례안	244
58	용진군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7
59	용진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0
60	용진군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52
61	용진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262
62	용진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0
63	용진군 인사청문회 조례안	275
64	용진군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2

용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용진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참여) ① 용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군수와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을 「용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필요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에너지”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2. “친환경에너지 시설”이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장소) 군수는 제1호부터 제3호의 장소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4호부터 제5호의 장소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군 청사
2. 군 공공청사 및 산하기관(행정복지센터·읍면주민센터, 사업소 등)



의 청사

3.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군 예산 지원으로 지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
4. 관내 공공기관, 1인 이상 사업장
5. 관내 민간시설 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및 공동주택 등

제5조(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주민들이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용진군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는 별지서식의 위기가구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금융 등을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 ① 군수와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해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 지역공헌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공헌포인트제도)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공헌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역에 공헌한 자에게 공헌 실적에 따라 점수(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제6조에 따른 용진군 지역공헌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제3호는 군민의 추천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기부 활동
 2. 정책제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등 각종 군정에 참여하는 활동
 3. 그 밖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활동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용진군 관내에 주소, 거소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자에게만 부여한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공헌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따른 포인트 부여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포인트의 사용) ① 제2조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자는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는 부여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제5조(지역공헌활동의 지원) 군수는 지역공헌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웅진군 지역공헌활동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지역공헌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지역공헌활동에 대한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역공헌활동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지역공헌활동과 관련된 군민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헌활동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학·사회복지학·커뮤니케이션학 또는 복지·공동체 분야 전문가
3. 관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 전문가
4. 자원봉사 및 군정참여 경험이 풍부한 군민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회원이거나 임직원 또는 회원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공헌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이란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및 군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
2. “공익소송”이라 함은 용진군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군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 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3. “공익소송비용”이란 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용진군의 군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익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 공익소송 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7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
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
4.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제8조(지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군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세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



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송당사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진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용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용진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용진군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군민 참여방안 및 참여 군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용진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4. 올바른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과 활동비 지원
5. 걷기 활동 활성화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
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사용제한)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걷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효율적인 걷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용진군 걷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걷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걷기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자문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걷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걷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 부서 국장

2. 걷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걷기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또는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 등과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 및 자문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지원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4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기록·관리) ① 군수는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되, 이 경우 성별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록·관리를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실시하는 것

으로써 당사자 간 상담을 통해 자립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은 물론 지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공동생활가정”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경험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거주시설로 기술훈련 등 실제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립생활의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8.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 지원, 공동생활 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 개조사업(편의시설) 지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의 지원 및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

-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



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안정적 자립생활 및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술습득 등 역량강화교육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지원서비스
 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10. 그 밖의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과 서비스
- ② 군수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장애인과 장애인의 임의·법정 대리인등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군수에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 지원 대상)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주거서비스

제8조(주거 서비스) 군수는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주택 개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자립생활기술을 습득하려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10명 이하로 하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위치한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



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여성장애인, 전문가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보조 서비스
2. 동료상담 지원 및 인식개선 운동
3. 정보제공서비스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6. 지역 내 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예산과 결산) 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 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과 조치)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재정상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지원



제16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군수는 법 제55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보장구 수리 지원) 군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의 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용진군민,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용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용진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율 제고 및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5. 독서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
6.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안전·위생·방역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애 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
3. 독서왕 선발대회 및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취약계층 대상 책 배달 및 책꾸러미 대여 서비스
5.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
6. 다독자 독서 포인트 지급
7. 독서 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8. 다문화 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 사업
9. 작은도서관 운영비·도서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10.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상품권,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근거)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바우처 지원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생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용진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산모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

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

제5조(지원신청) 바우처를 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출산(예정)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여부 확인) 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인이 제4조의 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바우처 금액 및 지원방법은 지침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중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바우처 종료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



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유휴토지 적극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의 유휴토지 적극활용 및 관광 산업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휴토지 6차산업화 촉진 및 용진군을 대표하는 향토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휴토지"란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태조사결과 본래 목적이나 용도에 활용되지 아니하거나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는 등 이용 효율이 낮은 토지를 말한다.
2. 유휴토지 적극 활용 : 유휴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①물건 등의 판매를 위한 가설점포 ②소규모 체육시설 ③농외소득 활동 ④작은 도서관 ⑤공원녹지·조경·휴양·운동시설 등 공원시설 ⑥시텃밭 조성 등 시농업 활동 ⑦음식판매자동차 영업 ⑧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⑨어린이 놀이기구 ⑩주차장 ⑪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유휴토지산업"이란 유휴토지를 이용한 전통산업 등의 유휴토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서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유휴토지산업 적극활용시설"이란 유휴토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업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유�휴토지의 적극활용·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유�휴토지 적극활용 및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유�휴토지의 적극 활용을 위하여 유�휴토지 재배 농가, 생산자단체, 가공·창업·유통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유툄토지 재배 및 생산자단체 지원
2. 전통산업 전승 및 적극활용
3. 유툄토지 가공·유통·판매
4. 유툄토지 식품 가공·유통·판매
5. 유툄토지관련 창업·보육, 기업·단체 지원
6. 유툄토지관련 홍보·행사·축제·연구·개발
7. 유툄토지산업 적극활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부터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

다.

- ② 군수는 유희토지의 품질향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유희토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유희토지제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현저히 브랜드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동브랜드 등 상표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유희토지산업 적극 활용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설치) 군수는 유희토지산업의 적극 활용·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유희토지산업 적극 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유희토지산업 적극 활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희토지 관련 가공품 생산 및 유통, 판매, 홍보, 신제품 개발
2. 유희토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군수정보 수집 및 활용
3. 유희토지의 산업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창업보육



4. 그 밖에 제5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위탁) ① 유희토지산업 적극 활용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유희토지산업 적극 활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적합한 법인·단체, 대학에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희토지산업 적극 활용시설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유희토지산업 적극 활용시설 관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웅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위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 기간 등) 유희토지산업 적극 활용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범위에서 상호 협의 하에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여부의 결정은 만료일 3개월 전에 결정한다.

제11조(사용허가) ① 제10조에 따라 유희토지산업 적극 활용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및 운영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용료의 요율,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연체료율 등에 관하여는 「용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수탁재산을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희토지산업 적극 활용시설의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의 취소통보를 받은 즉시 수탁받은 재산



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유희토지산업 적극활용시설 운영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탁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웅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웅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웅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용진군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진군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용진군 청사신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용진군 청사 신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
3.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부지 매입비, 건축비 신청사 건립 관련 부대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용진군 청사신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실장, 해양치유담당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용진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 나. 청사신축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명

-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



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세무회계과장이 된다.

제14조(회의록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세무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팀장

제17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특산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 특산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웅진군 특산품”이란 웅진군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웅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웅진군 특산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군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업) ① 군수는 웅진군 특산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웅진군 특산품 관련 신기술 개발 지원
 2. 웅진군 특산품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3. 웅진군 특산품 관련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4. 웅진군 특산품의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5. 웅진군 특산품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적극활용
 6. 그 밖에 웅진군 특산품 연구·개발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용진군 특산품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진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용진군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접지이익”(接地利益)이란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치유를 받을 수 있는 생활 건강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용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군민의 접지이익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관리
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
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용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용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옹진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범위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재난·안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1. 용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군민단체 등 노동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용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군민사회단체, 필수업무 종사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종량제봉투 배부
3.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모니터 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

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하 “모니터 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2. 지정지침 이행여부 확인
3.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4. 물가안정 캠페인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모니터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모니터 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군수는 모니터 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군수는 위촉한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마다 1회 이상 방문하여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



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 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군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홀몸노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군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개선 및 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
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군수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용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상공인 상가”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용진군내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 소외계층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스포츠복지 진흥사업) ① 군수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용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용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인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용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용진군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용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군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용진군의 책임을 정하고 군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모든 군민이 누구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누리고,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군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군민건강관리”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건강주치의”란 용진군 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 “건강주치의 사업”이라 한다)에서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역사회자원을 개발·육성 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군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군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제5조(군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군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건강지표 및 군민 건강관리실태 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군민건강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군민건강위원회

- 제7조(군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민건강관리에 대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역중심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옹진군 군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언한다.
1. 군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국민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언된 사항을 보건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 중 용진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용진군의원
2. 국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용진군민
3.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학교보건·산업안전·보건 관계자
6. 시 관계 공무원

④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장 건강주치의 사업 등

제16조(건강주치의 모집 및 의료지원 사업) ① 군수는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용진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사업 의료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③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는 용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기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17조(지원) 군수는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의료기관의 포괄적 건강관리 등 사업수행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감독·평가) 군수는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및 단체에 사업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 감독 및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비용 신청) 사업수행 의료기관이 건강주치의제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관리내역 및 청구 비용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환수조치) 군수는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21조(보건기관 확충)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기관을 확충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4.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8. 군민 건강관리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제4장 보칙

제22조(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 군수는 군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① 군수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
2.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및 주민건강조직 지원
3.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 지원
4.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및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용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건강 통계·정보 관리) ① 군수는 군민 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시의 건강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견수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시행 시에는 군민과 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4조와 제21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2조와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용진군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용진군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용진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③ 군수는 「인천광역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원은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용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군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청년기본소득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급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로 용진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

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결정·지급)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가 정한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용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용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그리고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
5.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운용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 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용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용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포상) 군수는 노인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용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



협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용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용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용진군(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위탁기준 및 방법)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



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용진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용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용진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용진군의회 의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 21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7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선정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용진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징수)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옹진군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준용)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 등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농어촌마을공동체”란 농어촌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 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추진 한다.

1.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과 농어촌마을의 개성과 다양성을 상호 존중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권리와 책무) ① 농어촌 주민 누구나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사업) 군수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군수·군수와 협의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급식
2. 공동육아
3. 마을공부방
4. 공동영농, 공동어로
5. 흑한기 및 흑서기의 공동쉼터 운영
6. 공동생활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체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참여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참여자 수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사업 종류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

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③ 군수는 지원사업 종류의 선정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 인천광역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군수·군수와 협의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용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용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모자보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진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畸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

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妊)”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9. “고위험 임신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신부로서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신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모자보건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부 건강관리 사업
2. 산전·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3.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
4. 임신부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
5. 산모, 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6. 난임부부 지원 사업
7.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8.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유축기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산
후 양육 지원 사업
9.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10.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11. 다태아(多胎兒) 임신부 임신·출산 지원 사업
12. 다태아로 출생한 영유아의 건강 증진 지원 사업
13.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14. 그 밖에 모성보호 등 모자보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제5조(임산부의 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
에 관련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
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
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
3.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어린이공원자문단”이란 어린이공원 등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문단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성의 기본방향)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객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놀이공간 조성
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
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

제5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등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3.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 제거)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보충, 소독 등)
5.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6. 각종 시설, 안전 및 위생 점검·지도
7.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지원
8.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이동의 안전과 정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명령 및 단속(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아동의 참여와 군민권, 놀이와 여가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지도·교육 지원
10.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원활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조성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설계 디자인
3. 주민참여 교육계획
4. 유지·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2.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교육,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
 5. 조경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수당과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업무의 성격상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 공원녹지과
2.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 담당업무 부서

제8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이런 명칭의 조례 없음) 제5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

생 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용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조치 및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용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체계 개선연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군민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대응 능력 향상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용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웅진군 관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3.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4.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용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용진군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③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용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홍보활동) 군수는 주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국민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의식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교육기관”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①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군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군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군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5. 그 밖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군수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안전교육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① 군수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민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 안전교육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2.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전교육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체험관 설립·운영 등) 군수는 군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군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군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웅진군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서점(도서관)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학습사업소장
2. 경제담당국장
3. 용진군의회 의원
4. 용진군 대표도서관장
5.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7.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8.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포상) 군수는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 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어르신 영양·건강사업”이란 건강 취약 계층인 노인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



다.

② 군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옹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정책과제
3. 연도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분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기초조사 등)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건강증진) 군수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어르신 영양·건강사업 지원) ① 군수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식사 지원, 영양 관리 예방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8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③ 어르신 영양·건강 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어르신 영양·건강관리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진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복지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관심 있는 용진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 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진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대 연합회 등 군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



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용진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군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



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 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웅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적 예측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용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 다. 「용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각종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빅데이터 책임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
2.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보장에 관한 사무
5. 빅데이터 시책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

② 빅데이터 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하되**, 주관부서가 보좌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으로 한다.

③ 군수는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들 수 있다.

제7조(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3.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7.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빅데이터의 구축, 관리,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8조(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제공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빅데이터 관련 예산의 운용 계획
4. 그 밖에 빅데이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빅데이터의 구축 및 관리, 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웅진군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공무원
 - 가. 빅데이터 책임관
 - 나. 기획 및 정책 평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 다. 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2.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웅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군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으로 하되, 주관부서가 보좌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촉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⑤ 위촉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① 군수는 빅데이터를 수집·분석 및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군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빅데이터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빅데이터 책임관은 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빅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요청 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빅데이터 책임관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경제·관광·교통·교육·복지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
3. 빅데이터 활용 교육
4.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5.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군에서 보유한 빅데이터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과 협의하여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도입·활용할 수 있다.

제16조(빅데이터 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용진군 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의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군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군수는 빅데이터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18조(빅데이터의 제공범위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
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군수는 빅데이터센터 및 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

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① 군수는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빅데이터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업
2. 제16조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3. 제17조에 따른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4. 제19조에 따른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진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간기관·단체·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을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준수의 의무)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
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복지협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 분야의 의제 발굴 및 정책 입안, 예산 수립 및 시행, 정책평가 및 반영 등 복지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지협치”란 군민과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용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예산, 조례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복지혁신 및 실천방안 등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사안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복지협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복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복지협치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협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복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협치에 군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



고, 참여자들의 복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복지협치 기본계획 등) ① 군수는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한 복지협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시행 하되, 「용진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른 ‘용진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복지 분야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으로 같음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협치 정책의 기본방향
2. 복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복지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복지협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복지협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복지협치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복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복지협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3.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복지혁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진군부군수(이하 “부군수”이라 한다), 용진군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용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른 용진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중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하는 사람
5. 사회복지 및 여성·가족 등 관련부서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6. 용진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7. 인천복지연구원, 인천여성재단,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장애인종합지원센터



- 터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및 복지협치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
8. 그 밖에 복지협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간 협의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 등은 회의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자문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과별 정책 의제 발굴
2.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3.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4. 분과별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조사·연구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⑤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복지협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검토 및 조정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일정 등의 연계 및 조정
4.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지원
5.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복지협치에 필요한 지원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5명 이상
2. 군의원
3. 복지협치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위원회의 간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전담기구) 군수는 복지협치에 관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복지협치 군민회의) ① 군수는 용진군의 복지 협치 공감대 확산과



홍보를 위해 군민이 참여하는 복지협치 군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복지협치 군민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등) ① 군수는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 선정 등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그 협력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민간과 군, 군의회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복지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복지협치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복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국내·외 복지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3. 복지협치 유관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4. 군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5.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개최
6. 복지협치사업의 집행 및 관리체계 구축
7.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복지협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④ 군수는 복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백서 발간 등) 군수는 복지협치 정책의 추진사항 등을 군민에게 알려 복지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하여 복지협치 백서를 발간한다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의 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2. “지역공동체 사업”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경제, 교육,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주민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주민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을 지향한다.
3.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5.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지역공동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용진군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사업의 정책방향
2.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방안
3.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방안
4.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방안
5. 그 밖에 지역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역공동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등)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관련된 업무 성격에 따라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사업
 2.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
 5. 그 밖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와 지원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 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 할 경우

②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사업비를 환수한 보조사업자는 환수한 날 부터 3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제2장 용진군 지역공동체 육성 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정책 및 사



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용진군 지역공동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지역공동체 사업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역량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역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재정적(국·도비 포함) 지원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위원회 진단 및 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주민자치위원 및 민간인 4명 이내
3. 지역공동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민간단체 활동가

5. 「용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용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용진군 공동체 지원센터

제21조(설치) 군수는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용진군 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주민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및 컨설팅
4. 지역공동체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5. 지역공동체의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6. 지역경제·도시재생·일자리·농축산·관광분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연계사업 추진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24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센터 공간의 활용 및 개방) ① 지원센터 사무공간 이외의 시설(회의공간, 숙박시설 등)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시민 개방공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 행사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맞추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진군에 등록된 단체
 - 다. 그 밖에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주민자치사업) 군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제도·정책연구·개발·평가 사업
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대회
4.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
5. 다른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6.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7.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민자치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4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용진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체계 개선연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에너지복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이란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 및 소외계층 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에너지복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용진군 에너지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복지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에너지복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



용 소외계층 현황과 에너지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냉·난방연료 지원 사업
2. 주택개량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3. 액화석유가스 배관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사업
4.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복지위원회) ① 군수는 에너지복지 시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진군 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용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에너지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용진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군민의 일부 필요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군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군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군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옹진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
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명품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품강소기업과 프리(PRE)-명품강소기업”(이하 “강소기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군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강소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소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강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선정 대상 등) ① 군수는 본사와 사업장이 군에 소재한 중견·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1. 기술개발, 품질개선 등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
 2. 자동화, 정보화 등 그 밖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3. 생산·매출·수출부문에서 신장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
- ② 군수는 여성기업과 벤처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선정 대상 결정에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원내용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심사) 군수는 강소기업 선정 심의를 위하여 강소기업선정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원)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용진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지원중단 및 선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0조의 강소기업 지원을 중단하거나, 강소기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소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채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
3.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2조(지정서) 군수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고 표지판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기간) ① 명품강소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할 수 있다.

② 프리(PRE)-명품강소기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관리) 군수는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3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4차산업 기업) 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
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것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
5.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6. 3D프린팅 : 3D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또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컨설팅 등의 서비스 산업을 포괄
7.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산업
8. 기타 군수가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4차산업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4차산업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산업 기업 육성 기본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및 구 관내 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2. 4차산업 기업 육성 추진방향 및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군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을 4차산업 육성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7조(4차산업 기업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의 4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4차산업 육성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용진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진군 기업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의 경제 및 사회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분야에 적용·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고용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산업경쟁력의 강화 등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2. ICT융복합 기술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기술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

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지능형 로봇 :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5. 인공지능(AI)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6. VR(가상현실)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
7. AR(증강현실) :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
8. 그 외 군수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점검하기 위하여 용진군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시행에 따른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용진군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용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명
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전담기관 지정·운영) ① 군수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3. 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 자료 작성 및 지원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5.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전담기관이 지정목적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기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를 전담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산업 군 간 연계를 영위하는 초 연결 산업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례 및 활용교육
4. 그 밖에 4차산업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포상) 군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웅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항공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항공기"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이나 사전 프로그램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
2. "무인항공기산업"이란 무인항공기를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웅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항공기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인항공기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항공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인항공기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항공기산업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무인항공기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항공기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무인항공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무인항공기산업 육성사업) ① 군수는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2. 무인항공기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무인항공기 창업 및 경영지원
4. 무인항공기 전문인력 양성
5. 무인항공기 시험비행장 조성
6. 무인항공기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 및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
7. 무인항공기 기술·군수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
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용진군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이를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청년 창업자가 구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4.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경영, 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5. “청년창업지원센터”란 구가 청년들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6.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7.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
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6.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
7. 사업화 자금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창업과 창업기 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명칭) ① 센터의 명칭은 “용진군 청년창업지원센터” 또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별도의 명칭은 공모 등의 방식으로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 유치
5.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6.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② 센터는 제1항의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창직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년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옹진군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 수립
2.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4.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5.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6. 센터의 운영규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용진군의회 의원 1명
2. 창업지원 전문가
3. 창업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창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경우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1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군수는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용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용진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반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홍보)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

작·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관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매촉진) 군수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과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1조(포상)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용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의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의 비용의 일부
2.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
3. 반려동물 산업제품 및 기술 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농업·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체험교육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도·농간 교류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5. “농업·농촌체험교육”이란 다양한 농촌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일련의 농촌체험학습을 말한다.
6. “교육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7. “체험교육 운영자”란 농업·농촌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8. “아동·청소년”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시행) 웅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웅진군 농업·농촌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체험교육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거나,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자
2. 교육과정 또는 체험교육 소재를 갖춘 자
3. 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갖추거나 또는 갖추 수 있는 자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체험교육장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체험교육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2. 체험교육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3. 체험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체험교육 운영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심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농촌체험교육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용진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자연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체험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교육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농업·농촌체험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가** 조사·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체험교육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군수는** 체험교육 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지원사업 보조금의 신청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용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용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체험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4조(산림교육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피해 축산농가 등 지원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② 군수는 사전방역을 통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③ 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농가이행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4. “재난관리”란 「재난안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사람



2. 가축전염병 관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군수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권고사항) 군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

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용진군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산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재난관리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용진군의회 의원
 2. 농업기술센터소장
 3. 축수산과장
 4. 축산 또는 수의(獸醫), 환경, 보건, 재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에는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축방역팀장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참여자 지원) ① 군수는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전염병 예방) ① 군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축 환경개선과 미생물 배양 등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가축전염



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과 동시에 피해예방 모범사례 등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과 협조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① 군수는 가축방역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단체·법인 또는 개인
2.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자(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외한다.)
3. 가축방역 활동에 공로가 큰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조치사항) ① 군수는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물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 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 나. 그 밖에 용기 및 포장 등化妆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자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산업
2. “화장품산업 사업자”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화장품 집적화 단지”란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교육·생산·관광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화장품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용진군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용진군 화장품산업지원센터”란(이하 “센터”라 한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는 법인격 및 명칭을 말한다.



제2장 화장품산업의 진흥

제3조(전문인력 양성)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지원) 군수는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화장품 집적화 단지 조성) 군수는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 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화장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화장품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6조(박람회 참가 지원) 군수는 중소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화장품산업 제품의 홍보·유통·판매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사 유치 및 지원 등) 군수는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 할 수 있다.

1. 화장품 산업 관련 기능대회
2. 화장품을 이용한 미인대회
3. 화장품 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4.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화장품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용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기관, 단체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화장품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진군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



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화장품 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용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화장품산업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화장품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화장품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산업 관련기관·사업자·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장품산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만료 전 위원이 「용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① 화장품산업 진흥시책 추진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화장품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은 「용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제17조(위치) 센터의 주된 위치는 용진군 소재에 두며, 필요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18조(재산) 센터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위치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금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명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를 경유하여 인천광역시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임원) 센터에는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마련
2. 용진군 CGMP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3.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4.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품질관리 등 실용화
5. 소재의 발굴 및 기술·경영인력 양성교육
6. 창업보육 및 화장품관련업체 유치·육성 지원
7. 센터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8.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9.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10. 용진군 등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11.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2조(수익사업) 센터는 제19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3조(재산출연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타 기관에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제24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용진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보고 및 감사) 군수는 센터의 경영상황을 보고 받고 서류의 제출 요구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과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준용) 보조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관계 법령에 따라 용진군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관계 법령”이란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나. 「문화예술진흥법」

다. 「지역문화진흥법」

라. 「예술인복지법」

마. 「그 밖의 법률」

2. “전통문화”란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기금”이란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용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용하는 용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이하 “진흥·증진”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문화예술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진흥·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예술인, 군 소재 문화예술·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 관련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진흥과 증진의 주체임을 알아보고 이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군의 해당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문화예술·지역문화의 향유주체임을 알아보고 그 기회확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용진군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진흥·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4조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진흥·증진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발전방안
4.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거나 구민, 예술인, 관련 전문가,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진흥·증진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진흥

가. 기반조성 및 확충

나. 공연·경연, 전시, 강좌, 행사 및 작품집 발간

다. 별표 1의 활동 활성화

라. 장애인 활동 육성 및 권장

마. 관련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장려

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의 교류행사 개최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지역문화 진흥

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

나.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

다. 별표 2의 활동에 관한 축제·행사 육성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라. 군 출신예술인 선양

마. 문화교양강좌 개설·운영. 이 경우 강사위촉 또는 초빙을 포함한다.

바.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예술인복지 증진

가. 역량강화 세미나 및 워크숍

나. 창작 공간 조성 및 관리

다. 창작(공연·경연, 전시, 작품집 발간 등을 말한다)발표회 등 행사 개최
라. 국내외 교류·협력행사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진흥·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 및 기금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문화시설(제6조제1항제3호나목의 창작 공간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군수 또는 해당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③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기간 중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해당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파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군수가 군의 다른 시설에 준하여 따로 정하는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한 사용자에
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전액

가. 시설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다. 사용예정 3일 전에 취소한 때

2. 50퍼센트: 사용예정 2일 전에 취소한 때

3. 30퍼센트: 사용예정 1일 전에 취소한 때

⑤ 군수 또는 해당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
하여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의 행사

2. 그 밖에 진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⑥ 군수는 시설의 사용허가에서 수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진흥·증진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능력을 갖춘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자(이 조례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에서 개설·운영하는 문화교양강좌에 필요한 실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
는 수탁자에게 해당 수강료의 징수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9조(진흥·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진흥·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용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진흥·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그 추진실적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2.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대상
3. 진흥·증진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반영
4. 제7조 및 제8조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용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용진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위원정수 외에 기관·단체 등의 예술인 중 1명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회피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결정족수의 재적위원에서 제외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척된다.

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때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때

-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때
 - 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때
 - 라. 본인이나 그가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때
 - 마. 본인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다목의 사유에 해당된 때
 - 바.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때
2. 당사자는 해당 위원에게 제1호 각 목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 또는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제1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표창) 군수는 진흥·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바지한 실적이 뛰어난 군민, 예술인,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진흥·증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이의신청, 해당 사업의 지도·감독

2. 「용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해당 사용료 징수
3. 「용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4. 「용진군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표창
5. 「용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회계처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조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조 참여자에게 소요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용진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조”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 및 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용진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사람 및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용진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용진군 내에 선적을 둔 선박 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원범위 및 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2.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조난사고 규모



및 구조활동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의 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용진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예술의 질서 확립과 거리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예술 장소로 제공할 수 있고, 거리예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거리예술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①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광장·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거리예술로 인



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거리예술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예술장소의 환경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거리예술 문화 진흥과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진군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의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예술 장소) 군수는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거리예술 질서유지) ① 군수는 거리예술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 불편, 환경 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예술의 시간제한 및 예술활동 금지 사항
2. 거리예술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 사항
3. 그 밖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예술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용진군 산하기관, 법인·민간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법인·단체에게 「용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미술·건축·음식·의상·공예·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존·관리·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통문화 육성) 군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3. 전통문화의 역사 문화적 가치공유를 위한 교육 및 강좌
4.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5. 학교 및 직장 내 학생·직원 등의 정서와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단체 활동 권장 및 지원
6. 전통문화 예술의 날 지정운영
7. 그 밖에 군수가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의 향토문화유산과 근현대 문화자원(이하 ‘문화자원’이라 한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여 지역문화자산을 확충하고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웅진군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2. “근현대 문화자원”이란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또는 「웅진군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3. “문화자원”이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향토문화유산과 근현대문화자원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웅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문화자원을 말한다.
4. “지역문화자산”, “지역문화자산화”란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의 정신적 축적물이나 소중한 재산으로 여겨 비

유적으로 일컫는 것을 뜻한다.

5 “건축자산”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제외한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 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6.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자원으로 선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소유자 등”이란 향토문화유산과 문화자원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8. “활용”이란 향토문화유산과 문화자원이 지닌 역사·예술·학술·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자원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① 문화자원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② 문화자원을 보존·관리함에 있어서는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자원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자원 보존·관리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문화자원의 발굴과 관



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자원의 발굴 및 관리·활용 등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에 있어 문화자원의 가치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자원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문화자원선정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문화자원의 발굴 및 관리·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웅진군 문화자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자원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문화자원의 환경보전·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자원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역사·문화·건축 분야 등에 대한 식견과 문화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군의회 의원
4. 업무 담당국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웅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문화자원의 선정 및 관리

제15조(문화자원 기초조사) ① 군수는 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자원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30일 내에 해당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자원의 선정) ① 주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문화자원의 선정 대상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사전 협의 및 동의를 거쳐 문화자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문화자원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하고 기록·관리한다.

④ 군수는 문화자원을 선정 및 취소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군보 및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선정된 문화자원의 소유자 등은 문화자원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자원의 선정취소)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문화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18조(보호구역 지정) ① 군수는 제2조 제6호에 따른 문화자원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문화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문화자원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문화자원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문화자원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문화자원이 소재한 관할 구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20조(보존 관리) 군수 및 관리자는 문화자원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수는 문화자원의 선정 현황과 보호구역의 선정사항 및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문화자원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문화자원 보호구역 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문화자원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4. 군수는 문화자원 진입로 정비·지역안정화사업·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① 군수는 문화자원의 유지 및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주민이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자원의 가치



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 ③ 군수는 문화자원의 보존·활용에 관련된 사업 또는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자원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보존·관리를 위한 활동
2. 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
3. 문화자원의 발굴·조사, 사료의 수집·보존·발간, 역사인물 연구 등 학술연구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문화자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문화자원 위탁) ① 군수는 용진군이 소유한 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에 해당 문화자원의 관리·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용진군 소유 문화자원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용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문화자원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군수는 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이 문화자원 정보에 쉽

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용진군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3. "사용·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 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기타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기장 임대에 따른 순이익"이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수익금(입장료, 광고권, 제3자에 대한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기타 등의 수입 일체를 말함) 중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대비 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우선 적용) 이 조례는 「용진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단이 용진군과 맺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권리위탁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용진군과 연고협약을 맺은 프로스포츠단에만 적용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군수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용진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인 '용진종합운동장 및 용진체육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용진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



나 매각할 수 있다.

제9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시책)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스포츠단체의 출자·출연 및 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각종 국내·국제대회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군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용진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프로스포츠단에 2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방법) ①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프로스포츠단과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다.

제13조(사용료) 군수는 프로스포츠단에 공공체육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용진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4항및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횡수별 등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용진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용진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감경 및 면제) 군수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료 감경

- 가.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해당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사업비만큼 감경
- 나. 그 밖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감경

2. 사용료 면제

- 가.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기타 관련단체가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 이상을 투자하여 건설한 경우
- 나.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사업비가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 대회를 위하여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이익의 공유) ① 프로스포츠단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용진군과 프로스포츠단이 맺은 계약에 따라 경기장 임대료에 따른 순이익(이하 "순이익"이라 한다) 발생 시 순이익의 1백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용진군과 공유한다.

② 프로스포츠단은 제1항에 따라 공유하는 이익을 군수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지역 유소년스포츠 육성
2. 지역 소외계층 지원
3. 낙후된 지역스포츠 육성에 재투자
4. 용진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5. 용진군이 요구하는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프로스포츠단은 제1항에 따른 순이익의 공유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순이익 산정 시 프로스포츠단이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사용·수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유하는 해당연도의 이익은 다음연도 이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프로스포츠단은 제1항에 따른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의계약) 군수는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용진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은 우선하여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3자에 대한 사용·수익)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용진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내용과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 ①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용진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② 프로스포츠단은 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총 공사비가 10억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0억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용진군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 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제출)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출자·출연 및 경비지원을 받거나,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①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업자 및 프로스포츠단
 2. 스포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용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하거나 농업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직업소개업소”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군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하거나 농업인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건비”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급이나 주급, 월급, 그 밖에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 인건비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소 및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정 인건비 제시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인건비 안정화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적정 인건비를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10일 이

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시정 소식지에 알려야 한다.

제6조(적정 인건비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서 정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적정 인건비 준수) 군수는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소 및 농업인은 농
 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유
 료직업소개업소의 경우에는 포상하거나 행정처분이 있을 시 감경할 수 있
 다.
2.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한 농업인은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적용 범위,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경제담당과장, 농업관련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구의회 추천 의원 1명
3. 관내 소재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유료직업소개사업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인력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7. 노무 및 임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적정 인건비 제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규정에 따라 용진군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대상)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용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용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 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요청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군수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군수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

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용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용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용진군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웅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웅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인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자료 조례안 2

용진군 조례안(축산 / 인구 / 관광 / 수산 / 어촌 분야) 제안

구분	조례명	비고	쪽
축산		없음	
1	용진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용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3	용진군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4	용진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안		18
5	용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4
6	용진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안		30
7	용진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8	용진군 친환경축산산업 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9	용진군 법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10	용진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42
11	용진군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2
인구	용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있음	
1	용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58
2	용진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안		62
3	용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66
4	용진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		69
관광1	용진군 관광진흥 조례	있음	
관광2	용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있음	



관광3	용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음	
관광4	용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있음	
1	용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74
2	용진군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8
3	용진군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3
4	용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6
5	용진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 지원 조례안		95
6	용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		99
수산1	용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있음	
수산2	용진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있음	
수산3	용진군 지역생산 농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음	
1	용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2
2	용진군 농수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6
	용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3
	용진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7
	용진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123
	용진군 농수산물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		128
	용진군 수산물 공동작업장 운영 관리 조례안		132
어촌	용진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있음	
	용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9
	용진군 농어촌 가로등 관리 조례안		150

웅진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웅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축산관련업”이란 축산업과 연관된 생산·처리·방역·유통·판매(축산분뇨, 사료, 동물약품, 동물병원, 반려동물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축사”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축산악취”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6. “축산환경 오염”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의 사업 영위와 종사자들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수질·토양·해양·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7.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오염된 환경개선, 쾌적한 환경상태 유지·조성 등을 위하여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축산단체”란 군에서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생산자단체, 조합, 협동조합, 협회, 작목반, 연구회 등(법인이나 임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의 건전한 육성과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속적 권리보호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축산업자 및 축산관련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군민은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군과 사업자의 해당 사업추진에 협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해야 한다.

1. 축산환경 오염행위 발견의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
2.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하여 무조건적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군의 축산환경정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42조의13제3항에 따라 매년 용진군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환경 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42조의2제4항제1호·제2호
3.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9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4. 군민, 축산업자, 축산관련업자 등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사항
5.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축산환경개선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이하 “저감·개선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자문하는 웅진군 축산환경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자문
2. 저감·개선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문의제의 발굴·채택, 여론수렴, 국내외 교류·협력 등에 따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축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2. 축산단체의 대표
3. 용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축산환경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경영팀장으로 한다.
- ④ 간사는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웅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엄수) 협의회의 위원 및 저감·개선사업의 업무수행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개인정보와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고 엄수해야 하며 해당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저감·개선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절차 등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축산환경 개선활동 지원) 군수는 군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 관련 조사·연구 및 개선기술의 개발
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개선기술의 보급
3. 축산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
4. 그 밖에 군수가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원) ① 군수는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악취 방지사설의 신설·개선 및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축산시설 악취관리 컨설팅
4. 축산시설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청소 등으로 증가된 폐기물·폐수 처리
5. 그 밖에 군수가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축산악취 저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제한) 군수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

경을 오염시켜 축산·환경 관계 법령(「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말한다)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홍보) 군수는 군민 및 사업자 등의 축산악취 및 축산환경 개선 인식 제고를 위한 자료의 제작·보급 등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축사 매입) 군수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가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의욕 고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시 도매시장 상품(上品)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산물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자가 노임을 포함한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계통출하”란 군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정부인가 축산물(공판장)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폐기처분”이란 생산비 차액지원 대상 농가가 농작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자체 파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소득안정 시책마련) 웅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용재원 마련) ① 군수는 제10조 및 제13조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전년도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농산물 가격 폭락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② 제10조 및 제13조의 사업을 위하여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의 1%를 운용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율무, 사과, 배, 포도, 대추, 오이, 호박, 파(대파), 양파, 부추와 사육한 한우, 육우, 돼지, 닭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으며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

② 차액지원한도로 농산물은 10,000제곱미터 이내, 한우·육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 돼지는 1,500두 이내, 닭은 15,000수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전금 및 변동직불금 등을 지원받는 농가는 제외한다. 다만, 시설재배 농산물은 5,0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차액지원한도 농산물 면적제한에는 제12조에 따라 폐기처분한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대상 농가) 지원 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웅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 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1. 농산물은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육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3.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4. 닭은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농가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비의 결정) 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전년도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률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생산비 고시) 군수는 결정된 생산비를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비 차액 지원)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생산비 차액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90%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폐기처분 지급기준) 폐기처분 농작물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 3일 이상 계속하여 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된 농산물로 한정할 것

제12조(폐기처분 방법 등) ① 지원 대상 농가는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자체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이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② 폐기를 하려는 지원 대상 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농협장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농협장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농협장은 전·중·후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고, 폐기물량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처분 농산물 지원) 제12조에 따라 농산물을 폐기한 농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1. 산지폐기 농산물의 생산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산지폐기를 위한 제비용

제14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농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비 차액 및 폐기처분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 웅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옹진군의회 의원 1명
 2. 농축산물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농협중앙회 옹진군지부장, 관내 지역농업협동조합장
 4.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비 결정
2. 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확대 범위 결정
3. 그 밖에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웅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웅진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의 위생적인 도살처리와 원활한 유통으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축산소득 증대를 위하여 옹진군축산물유통센터(이하 “축산물유통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축산물유통센터는 옹진군 00읍 00길 00에 둔다.

제3조(업무) 축산물유통센터는 다음업무를 관장한다.

1. 가축의 도살과 해체
2. 도체의 발골정형 및 식육의 포장처리
3. 기타 축산물유통센터의 운영 및 축산물유통에 관한 사업

제4조(일용인부) 도축해체작업, 발골정형 및 식육포장처리를 위하여 일용인부를 고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도축해체 또는 발골정형 및 식육포장처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도축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사용의 중지) 군수는 도축해체 신청 등 축산물유통센터를 사용하고 자 하는 자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축산 고유브랜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 및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상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웅진군내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 젓, 알, 꿀과 이들의 가공품, 원피(원모피를 포함한다), 원모피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뼈(골분을 포함한다), 뽕, 내장,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 화분 등을 총칭 한다.
2. "00000" 및 "00000"이라 함은 군에서 생산된 000 및 000를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상징마크"라 함은 다른 축종과 차별화하기 위한 상표를 말한다.
4. "사용권"이라 함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 웅진군 축산물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웅진군축산물브랜드상표"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권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품목 지정) 웅진군축산물브랜드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별표 1"의 상품 세목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사용대상품목에 대한 지원) 군수는 웅진군 축산물브랜드의 지속적인 생산량 및 품질 향상, 상품성 제고, 홍보,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생산장려금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표의 사용신청) ① 웅진군축산물브랜드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축산물 브랜드 관련 담당공무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상표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상표의 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브랜드상표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브랜드 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상표의 사후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표사용 축산물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



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리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경 또는 허위로 표시 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⑤ 상표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상표사용권의 취소) ① 군수는 상표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 1. 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2. 상표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 3.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 4.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 6. 기타 군수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축산물 브랜드상표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 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축산물브랜드 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① 축산물 브랜드 상표의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축산물브랜드상표의 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별 관련법규에 규정된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 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웅진군 축산물브랜드 상표사용허가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경제국장,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축산물 브랜드 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 허가 품목의 품질향상, 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를 임무로 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5. 상표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6. 기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산물브랜드상표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사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용진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9년까지 5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웅진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거나 「웅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군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농축산업 등 관련 민



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옹진군의회 의원, NH농협은행 옹진군지부장,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농업단체 대표 및 임원

2. 농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유통지원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웅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2. 기금출납원 : 유통지원담당

제16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군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사과, 복숭아, 수박, 참외, 감자, 고추, 양파, 토마토, 마늘, 배, 참깨, 한우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생산비 차액 지원은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제17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제18조(지원신청)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제19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① 생산비는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노동비, 기타 재료비 등 직접생산비 영수증 등 근거자료와 전년도 기준 물가정보지 노임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고시) 군수는 결정된 생산비 및 최저가격을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생산비 차액의 지원)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이내에서 지원한다.

제22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웅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축산이 공존하는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활성화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축산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수요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웅진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웅진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축산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자문
3. 재해시(전염병, 폭설, 폭우, 태풍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축산관련 현안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축산관련 단체의 장
2. 축산관련 법인대표 및 선도농가
3.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

4.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위원과 사전 협의하고 기관소속원일 경우 예는 그 소속의 장과 이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축산 관련 단체대표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담당자이며 필요시 위원 중에서 1명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용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 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웅진 축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웅진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웅진 축산인”이란 웅진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평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3. “축산업”이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4. “웅진군 축산농가협의회”란 웅진군 관내 가축을 사육하는 축종별 자생단체의 대표자 모임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개최) ① 웅진 축산인의 날(이하 “축산인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축산인의 날 행사는 웅진군이 주최하고 웅진군 축산농가협의회가 주관하며 축산 관련 기관·단체가 후원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4조(행사내용) 해마다 축산인의 날을 기념하고 웅진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하기 위해 다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축산인의 날 기념행사
2. 용진 축산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
3. 교육·문화·예술·체육행사
4. 이밖에 축산인의 날 목적에 적합한 행사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진군 축산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 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용진군 축산농가협회장이 되며 축산업무 담당과장과 농업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용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과 용진군 축산농가 협의회 소속 축종별 대표자 및 임원, 용진축산업협동조합장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축산인의 날 행사 업무 담당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용진 축산인의 날 시상 수상자 심사 및 결정

3. 이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해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다.

③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용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축산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진행을 위해 주관단체에 대한 행정적 협조를 하고, 「용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행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규정 등은 「용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용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진군 포상 조례」, 「용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용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 및 「사료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식가축 사육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가와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 제1호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초식가축"이라 함은 풀을 주로 먹고사는 가축을 말한다.
3. "조사료"라 함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량이 적은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4. "경종농가"라 함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축산업 육성) 웅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친환경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축산단지 및 친환경인증수수료지원
2. 가축을 입식하거나 축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융자금 신청 시 군

에서 조성한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3. 양축 농가의 각종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비
4.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강구 및 방제사업비
5. 축산물 가격 하락 시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보조금 또는 기금 용자
6. 축산물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7. 그밖에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4조(조사료 재배 생산농가 특별지원) 군수는 친환경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나 기계장비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유휴농지에 관내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 농가
3.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

제5조(지원제외) 웅진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조사료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미만 수확한 경우
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재배한 농가
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저품위로 생산한 농가
4. 기타 타농가와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이용 및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웅진군 친환경축산업 육



성 및조사료 생산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 원 :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정책과장, 축산농업협동조합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과 군수가 위촉하는 축산단체 대표 및 조사료 생산재배 농업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임무는 용진군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지원 및 조사료 재배단지 선정, 지원기준, 기계장비 등의 지원계획과 기타 조사료 재배 생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산담당이 된다.

제7조(사업의 신청 등)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4월말까지 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용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용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축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법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던 가축을 살처분, 도축, 물건을 소각·매몰한 축산농가를 지원하여 재활을 촉진하고 축산업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 과 “가축전염병”이라 함은법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농가) 가축을 사육하다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관련 법규에 의해 가축을 살처분, 물건을 소각·매몰한 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축산농가의 재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보상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농가 규모 및 재활능력 등을 참조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지원금의 용도제한) ①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은 본래 경영하던 업종 또는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지·축사·가축 등과 농·축산업 관련 부동산 또는 축산기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농가가 제1항의 용도와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 지원액이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용진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에 따라 친환경 녹색축산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약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녹색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가축사육에 적합한 시설, 가축이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가축의 사육 밀도가 준수되며 운송이나 도축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개체면역력을 증강시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 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에서 규정한 “무항생제 및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 농가를 말한다.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 이라 한다.) 지정 농가(업체)”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HACCP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업체)을 말한다.
 6. “축산물 유통업자 등”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시장·군수로부터 영업허가(등록, 신고)증을 교부받은 영업자를 말한다.
 7. “친환경축산 대상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한 가축 중 한우·젓소·돼지·닭·오리·양(염소)·사슴 등을 말한다.
 8. “가축 사육밀도”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 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축종별, 성장단계별 두 당 사육 적정 면적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9. “친환경녹색축산 농장(”이하 “녹색축산농장”이라 한다)”이란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으로서 자체 심사결과 동물복지형 축산(녹색축산)을 이행하고 있는 농장으로 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 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군수는 「웅진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친환경 녹색축산의 실천)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 축산물



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 허가를 받은 축산업 등록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허가 축사 등 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업체)은 동물복지형 축산을 이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방목장(운동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 관련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가축의 운송시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6. 운동장을 설치하는 농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유출 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및 지원

제5조(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 ① 군수는 친환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녹색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농장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가공업·판매업 등의 HACCP 지정 확대 방안
4. 항생제, 항균제 등 기타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6. 친환경 녹색축산 교육 및 홍보
7.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지원
11.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은 「웅진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에 의한 웅진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의 축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녹색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웅진군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①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협회),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농가 등의 친환경 녹색축산 정보 교류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농장 등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협회)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② 축산분야 정책사업 우선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2.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3.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 농장
4.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 또는 심사 중인 농장
5. 축산업 등록농가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장
6.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여가 높은 농장 등

제12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축산물 소비촉진 및 평가

제13조(소비촉진) ① 군수는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학교급식) 군수는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가 친환경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친환경 녹색축산 추진 평가) ① 군수는 매 연도 말 기준으로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축산물 인증 실적
2. 친환경축산 육성 정책추진 의지(예산 확보 등)
3.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실적
4. 가축사육업(축산물가공업 등 유통업) HACCP 지정 실적
5. 친환경축산물 유통·판매지원 실적
6.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해양배출 감축 노력) 등
7.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실적 등

제4장 친환경축산물의 표시 및 제재사항

제16조(친환경축산물의 표시) ① 군수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 HACCP 지정을 받은 친환경 축산물에 대하여 「용진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조례」 제16조에 의거 친환경 축산물 인증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축산물 유통·판매업자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 판매장내에 별도의 판매대를 마련하여 친환경축산물 관련 인증 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7조(녹색축산농장 지정신청 및 지정, 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농장 HACCP지정을 함께 받은 농장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에 대하여 「웅진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조례」 제17조, 제18조에 의거 도지사에게 녹색축산 농장 지정을 신청하고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지정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각각 변경 및 지정 취소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서 유효기간) 교부받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친환경 녹색축산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년 단위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지정의 취소) ①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이 친환경 녹색축산을 실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취소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업을 포기하는 등 지정의 원인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의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효력을 상실한 경우
4. 허위 과대광고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행정기관의 지시사항 미이행 등으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20조(제재사항 등) ① 군수는 「웅진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조례」에 따라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매우 저해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용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축산분야 지원 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법」, 「친환경농업육성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업체)
2. 친환경 축산물 인증,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친환경녹색축산 실천농장 지정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5조에 따라 도축업 등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한은 「축산법」 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따르고 농림사업 등 축산분야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기한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2년으로 한다.

제21조(축사 이전) ① 군수는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마을, 도로, 강(호수) 주변에 위치한 축사에 대하여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도록 권고한 이후에도 축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분야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22조(방역 및 소독) 군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축산농가는 농장과 출입자, 이동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의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웅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웅진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용진군의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소비자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① 군수는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역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5조(경쟁력 강화 사업) 군수는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업 축산농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가축개량·증식 및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
4. 사료 및 사료작물의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5.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
8. 말, 사슴, 꿀벌 등 육성,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제한) ① 옹진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비의 부당사용 사유, 중도회수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에 따른 제한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업의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옹진군이 직접 지원하는 경우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웅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축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웅진군 축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웅진군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축산인의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웅진군의회 군의원
2. 웅진군 축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
3.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임기 중 이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 수행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반기별 1회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정책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옹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웅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웅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웅진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변경
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4.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진군 인구늘리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장,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등 담당공무원
2. 교육, 농산업,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로컬푸드 등과 관련된 사회단체, 기업체, 협의회 등의 임직원 및 회원
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활동가,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 현안에 밝고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주민

제9조(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주민 의견 수렴 및 추진단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사업별, 읍·면별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별 분과장은 과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 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구감소대응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
2.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실행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대응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위원회 및 추진단에 참석한 위원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웅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유입시책”이란 웅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유입을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제2조제2호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전입세대원”이란 제2호의 전입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혼부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을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웅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인구유입시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입세대 : 단독주택 수리비, 주택 설계비
2. 귀농인 : 농업용창고 설계비, 영농정착금 지원
3. 군에 전입을 신청하는 장교, 부사관, 또는 군무원 : 전입장려금
4. 전입세대원 : 정착지원금

5. 신혼부부 : 금융기관으로부터 군에 소재한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유입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① 제1항제5호의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전세대출 지원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4조(신청 및 절차) ① 인구유입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주소지의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구유입시책추진협의회 설치) 군수는 인구유입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웅진군 인구유입시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웅진군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유입대책에 관한 협의 및 추진
2. 인구유입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자격 심의
4. 인구유입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유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① 인구유입시책 추진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군민,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군부대, 공무원 등 인구유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③ 협의회 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회의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유입시책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웅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인구유입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인구유입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 「웅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멸위기에 놓인 용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진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의 수립·변경
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4.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수 또는 용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추진단의 구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진군 인구늘리기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단장은 단원 중에 호선하고 단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2. 교육,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다문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과 관련기관 단체의 대표자



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전문가
4. 그 밖에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주민

제7조(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주민 의견수렴 및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업분야, 일자리 분야, 주거·복지분야, 교육분야 등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야 부서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구감소대응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
2.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실행
4.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비의 지원 등) 위원회 및 추진단에 참석한 위원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 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웅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 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 출산·고령사회 정책

나.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 그 밖의 저 출산·고령사회 극복으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웅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정책 중장기 비전) 군수는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걸친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군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가 포럼 운영) ① 군수는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럼개최에 필요한 경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군수는 저 출산·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웅진군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저 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군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저 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7. 저 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신활력경제정책관, 건설도시과장, 기획예산실장, 보건소장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웅진군의회 의원 중 2명 이내
 2. 저 출산 및 고령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변호사, 시민 단체 대표자 등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⑦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로 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정기위원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저 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웅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 및 연구)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 및 위원회참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저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민간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결혼지원) ① 군수는 옹진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군민이 혼인신고 후 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결혼비용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1명에게만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결혼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임신·출산·양육 지원) 군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다자녀가정 지원)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및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① 군수는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직장 및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저 출산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여가·사회활동 장려) 군수는 노후의 여가·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6조(기업·단체 등 지원) 군수는 군의 저 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전입세대지원)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용진군에 신규 전입하는 전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인센티브 지급) ① 군수는 「용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저 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또는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 인구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용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용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웅진군 주민복지과장, 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관광약자),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웅진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관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용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웅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웅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영농,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개발하여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2. "농촌관광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과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관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수립, 육성과제 발굴, 주민교육과 전문 인력육성,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한다.

1. 농촌관광 기반조성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2. 각종 체험 메뉴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3.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보급
4. 농특산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공급 시스템 구축
5.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관광대학 운영
6. 농촌관광 촉발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및 교류분야

7. 그 밖에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육성해야 할 시책

제4조(사업의 신청 등)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농촌관광의 육성분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취소) 군수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의지가 없고, 현저히 미흡할 때
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7조(사업비 확보)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매년 농촌관광추진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가 자문 및 교육) 농촌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농촌관광 사업지원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농촌관광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발전적인 사업시행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웅진군농촌관광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관광관련업무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농촌관광관련전문가, 민간인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관광사업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육성사업 및 지원대상·범위의 심의
- 3.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
- 4. 그 밖에 군수 및 위원회 발의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장소·출석위원 성명·회의 안건과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련업무 부서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회의참석이 미온적이고 위원회운영에 소극적일 때

제17조(지역농업 및 농촌관광개발센터 설치) ① 지역농업 및 농촌관광의 체계적인 연구와 추진을 위하여 지역에 지역농업 및 농촌관광 개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지역농업 및 농촌관광개발센터는 지역농업 및 농촌관광사업의 개발과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농업 및 농촌관광사업의 발전과 국제화 능력 향상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관광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관광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웅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관광개발, 환경, 조정, 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등 관광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웅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웅진군 관광 진흥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2. 관광정책 결정 시 타당성 검토
3. 관광자원의 활용 방안
4. 관광개발 및 관광 상품 개발
5. 관광 진흥 방안으로서의 주요시책 및 관광마케팅 전략
6. 그 밖에 웅진군 관광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업무 주무담당이 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웅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하거나 제작·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
2. “기념품 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판매점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으로부터 기념품 보관·판매 및 운영 관리 일체에 대해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기념품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라 한다)란 군에서 기념품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여 관광지내 설치한 무인판매기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2. 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기념품 개발
3. 기념품 판로 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기념품 지정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군 기념품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군 관광기념품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웅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웅진군의회 의원

나. 기념품 관련 위탁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의 소속 직원

다. 관광학과, 디자인학과 등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라. 공예, 디자인, 마케팅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념품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 기념품 지정에 관한 사항

2. 군 기념품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기념품 개발·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기념품 지정을 할 때 군 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⑥ 기념품 공모전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군 관광기념품 지정위원회」의 구성으로 같음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게는 ·용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기념품 지정 및 지정 해제

제13조(기념품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라 개발된 기념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민간 사업자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군 기념품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기념품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제작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 등의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군 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의 기념품 지정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군 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제4장 기념품의 제작·판매 및 보금

- 제16조(지정 기념품 제작 및 판매)**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군에서 직접 제작하고 수탁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 ②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고 군수는 기념품 책자에 상품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 전시·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판매점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군의 관광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기념품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② 판매점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판매점이 위치한 기관에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기념품 보급)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한 기념품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소매점으로 등록한 관내 기념품판매점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 절차는 수탁자가 대행한다.

제5장 기념품의 위탁관리 및 판매운영 등

제19조(위탁업무) ① 군수는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기념품 공모전 개최
2. 기념품의 판매, 유통 등 활성화 사업
3. 기념품 판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4. 기념품 보급 및 사후관리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 받은 재산 및 시설물을 멸실 또한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을 다하지 않은 때

제21조(관촉활동 등) ① 군은 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관촉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이하 “관촉용 기념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촉활동 시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관촉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관촉용 기념품 수불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수입금 관리) ① 수탁자는 1개월 단위로 군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매월 기념품 판매수입금을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군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한다.

제23조(기념품 보관관리 및 대장작성 등) ① 수탁자는 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념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매월 판매용 기념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수불사항을 작성·관리해야한다.

③ 수탁자는 기념품의 정확한 판매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군에 보고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군과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기념품의 폐기) ① 수탁자는 보관·전시·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 등으로 상품 가치를 잃어버린 기념품은 폐기할 수 있다.

② 기념품의 폐기는 「용진군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진군 관광진흥 조례」 및 「용진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의 관광마케팅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웅진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등록을 필한 일반 국내·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란 「관광진흥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이나 허가를 득 한 군 관내 소재 숙박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 원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용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용진군과 관광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
3.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4. 단체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해설사 지원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군을 비롯한 지방행정기관 등이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팸 투어 등
3. 정치 및 종교행사, 각종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4. 타 자치단체 관광 후 웅진군에서 숙박만 할 경우
5. 그 밖에 군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 20인 이상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관내 음식점에서 2식 포함)이상 숙박관광의 경우 1인당 5,000원
2.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 당일관광(관내 음식점에서 1식 이상)인 경우 1인당 10,000원
3.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관내 음식점에서 2식) 이상 숙박관광의 경우 1인당 15,000원
4. 내·외국인 수학여행단 30명 이상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관내 음식점에서 2식)이상 숙박관광인 경우 1인당 3,000원
5. 내국인 관광객 20인 이상 당일관광(관내 음식점에서 1식, 관내 체험장에서 체험 1종류)인 경우 1인당 3,000원

제7조(보상금 신청절차 및 방법) ①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이 있는 여행사는 관광 시행 1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지급신청은 여행일정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 지급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후 지급한다.



-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전문적인 문화관광 지식을 갖춘 관광택시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택시”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웅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웅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관광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운전자를 갖춘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지정한 관광택시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관광택시 종사자의 자격) 관광택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군에서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군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관광택시의 지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택시업 종사자가 일정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택시를 관광택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차량 내·외부에 관광택시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택시의 임무) 관광택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문화·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그 밖에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제7조(자격상실) 군수는 관광택시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광택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택시면허가 취소된 경우
2. 질병 등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관광택시의 역할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관광택시 이용) ① 관광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진군 관광택시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경우 관광 예정일 2일 전까지,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9조(활동실적 관리) 관광택시 종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택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군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 지원 등) 군수는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광택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택시 홈페이지 운영
2. 관광택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3. 관광택시 연계상품 개발 및 지원
4. 관광택시 종사자 간담회 운영 지원
5. 관광택시 종사자 복장 구입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택시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 택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옹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해양수산사업”이란 수산분야 민간단체, 개인, 어촌계, 법인 및 해양수산진흥을 위한 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4. “수산분야 민간단체”란 옹진군에서 어업인으로 구성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8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수는 어업인,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 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이익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
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
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
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6. 어업인 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
8.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
9.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사업

제7조(지원신청) 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결정) ① 어업인 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으로 배제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면장 및 지원대상 어업인, 어촌계 또는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장 및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 등은 「웅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와 읍·면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또는 「웅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웅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웅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농수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농수산물 가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옹진군 농수산물 가공시설(이하 "농수산물 가공시설"이라 한다)은 옹진군 00면 000길 00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 가공시설"이란 농수산물의 가공 및 냉장보관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농수산물 가공시설을 대부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농수산물의 가공 및 냉장보관을 위하여 시설이용 요금을 수탁자에게 납부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부 및 대부료 등) ① 군수는 농수산물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 농수산물제품을 공동으로 생

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웅진군 소재 법인·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3.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허가하였을 때에는 법 및 「웅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 ④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웅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⑦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제5조(대부기간) ① 농수산물 가공시설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②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사업)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농수산물 가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수익사업(농·수산물 건조, 냉장보관 등)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익사업 요금 산정 등) ① 수탁자가 수익사업으로 받는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계약 전에 결정하되,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수지분석 및 운영결산서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이용 요금표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
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 수탁자는 농수산물 가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연체료의 징수) ①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 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을 체납한 때
2.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3. 대부받은 재산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재산의 원형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4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6.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7.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대부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다.

2. 의무자가 전 호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한다.
 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 2호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4.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고 대집행을 실시한다.
 5. 대집행이 완료한 후에는 실제에 요한 비용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3조(변상금) ① 군수는 대부계약 없이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대부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상황을 년 1회(년도말 기준) 용진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대집행법」, 「어촌·어항법」, 「용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용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웅진군 수산업의 숙련기술 향상과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산업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전통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전통기술을 습득 또는 체득하여 전승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숙련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웅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수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산업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수산업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수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숙련기술 발전 및 전통기술 전승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인의 선정 등) ① 웅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같은 분야 및 수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수산업분야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산업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계승해왔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인·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② 장인은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한다.
 - ③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읍·면장
2. 군 단위 지구별, 업종별 수협장
3. 군 내 수산업 관련 협회장

제5조(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업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매년 200만원씩 2년 동안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장인이 군 내의 수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장인의 임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장인으로 선정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전통기술 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장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장인에게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행사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장인이 지역의 전통기술 전승과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군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수산업관련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전통기술의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인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해당 장인에게 사전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웅진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웅진군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밖에 용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지원하기 위하여 웅진군 수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육상의 수하인에게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상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2. “수산경영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웅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웅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웅진군 수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 외의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의 출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수산경영인 소득증대사업
2. 수산물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3.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4. 수산물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습득 사업
5.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6. 해양생태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금 한도) 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 가. 수산경영인: 3천만원 이하
 - 나. 생산자단체: 1억원 이하
2. 융자사업
 - 가. 수산경영인: 5천만원 이하

나. 생산자단체: 3억원 이하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③ 군수는 용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용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금액과 운용 이자의 수익 금액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기금운용관: 해양수산과장
2. 기금출납원: 수산정책업무 담당 팀장

제10조(웅진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웅진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실장, 경제에너지과장, 농업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2. 군수가 수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

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



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웅진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웅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 공동브랜드”란 웅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이란 군수의 사용 승인을 받아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상표의 명칭과 디자인) ①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의 명칭은 ‘남해다름’이라 한다.

②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인 ‘남해다름’의 디자인·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대상품목)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수산물 공동브랜드(청경해)로 지정받은 품목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



증(지정)받은 품목

3. 「옹진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옹진군 통합브랜드 인증 받은 품목
4. 군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제5조(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취소,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2. 수산물 공동브랜드 승인 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수산물 유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물 유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웅진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임원
 3. 대학교수 등 관련 학계의 전문가
 4. 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장
 5. 수산물 가공업체 및 유통 분야 종사자
 6. 그 밖의 수산물 유통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심사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 검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결정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품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으로 하되, 품질의 우수성이 유지되고 가공 및 유통과정 중 제9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책임) ①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 품목(이하 “승인 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승인 품목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승인 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의 상표가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된 경우에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승인 품목의 품질 유지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생산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승인 품목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성분분석 결과 사용자가 승인 품목 관리에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 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권을 정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다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7조에 따른 사용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2.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
 3.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의 인증(지정)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모니터링) 군수는 승인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 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농·수산물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의 서해 청정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수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를 통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구매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진군 농수산물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산품”이라 함은 용진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로써 용진군수가 특산품으로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2. “특산품 지정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생산자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용진군이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특산품 지정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특산품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 또는 간판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

제3조(지정 대상기준) 특산품 지정 대상기준 및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상기준(생산량, 출하금액) 및 품목
 - 가. 단일 품목으로 전국 생산량의 점유율 50퍼센트(%)이상인 품목

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중에서 전국 유일한 생산품목

다. 관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로써 ‘웅진군농수산물품질보증위원회(웅진군 농수산물품질보증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서 생산보증을 받은 대상품목

2. 기타 군수가 특산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

제4조(위원회의 설치) 특산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웅진군 특산품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은 부군수와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자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특산품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웅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명)
2. 수협 웅진군지부장
3. 특산품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4. 기타 특산품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의 당해품목의 실과소장이 당연직 간사가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① 군수는 특산품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요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산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특산품 지정상표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8조(특산품 및 상표지정)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특산품 및 상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

② 군수는 특산품 지정상표와 품질보증위원회의 상표를 병행 표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옹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상표사용 및 사용책임) ① 군수는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③ 특산품을 지정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11조(특산품 지정신청) ① 특산품을 지정 받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법인)는 군수(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실과소)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특산품에 대하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특산품 장려 등 지원) ① 군수는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등에 대하여 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기술 보급, 기반시설, 환경개선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특산품으로 지정된 때부터 포장재 비용 등 경비를 일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특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특산품의 생산현황, 품질 등을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상표지정에 관한 디자인, 특산품 지정신청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수산물 공동작업장 운영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세어민 및 수산물 건조인들의 생업보호와 연안 오염방지를 위한 수산물 공동작업장 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공동작업장 시설(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산물 할복, 세척에 필요한 시설물(작업장 시설, 폐수처리 시설, 창고 및 화장실, 사무실 등) 일체를 말한다.
2. 폐수처리 시설이라 함은 수산물의 할복,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작업장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할복, 세척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관리비라 함은 작업장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5.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규정에 의거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용진군 수산물 공동 작업장
2. 위치 : 용진군 00면 00리 000번지

제2장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작업장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 번영회 수렴 또는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③ 위탁 관리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다.

④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수탁자의 책임)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폐수처리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관계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도록 항상 정상 운영하여야 하며, 법적 행정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작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 채납을 조건을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작업장 위탁관리 사용료)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5조의 의무 이행을 조
건으로 무상 위탁관리토록 한다. 다만, 작업장 부지 사용료에 대하여는지
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및하천법 제25조의 규
정에 의거 부과한다.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
을 때에는 군수의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
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할 때
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물의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 때

②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3장 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①작업장 사용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
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

내로 구성 한다.

제10조(위원선출) ①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마을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번영회장, 수협대표, 작업장 사용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용자의 대표가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감사)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②감사는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서기)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②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관리인의 임명) ①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호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1. 사용자의 사용료 징수 관리인 : 1인 이상
2. 폐수처리 시설 관리인 : 1인 이상 (폐수처리 능력자 1인)
3. 시설물의 청소 및 관리인 : 1인 이상

②관리인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관리비의 징수관리

제17조(관리비의 징수) ①위원회는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관리비를 징수 결정한다.

②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징수 관리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현금을 취급하는 위원장과 경리담당자는 재정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매년 운영결산서를 익년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비의 징수관리) ①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비의 조정) 군수는 수지분석 및 결산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관리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유지관리 및 보수

제20조(유지관리 및 보수주체) 작업장은 위원장 책임하에 보수 유지관리한다.

제21조(관리비의 부담) ①위원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②위원회는 운영관리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웅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 어촌민속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웅진군 어촌민속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웅진군 웅진읍 000길 000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료 : 전시관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개인
 - 가. 성인 : 19세 이상 64세 미만인 사람
 - 나.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미만인 사람
 -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라. 군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
3. 단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함.

제4조(전시관의 관리) 전시관 관리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시 및 수장품의 상태 점검
2. 전시관의 온·습도, 통풍 등 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3. 수장고의 관리상태 점검
4. 전시관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5. 관람인원 기록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시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 전시관의 관람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전시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09:00~17:00
3. 관람권 매표는 개관 개시시간부터 개관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4. 지정된 매표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관시간표 및 매표 시간표를 게시한다.

제6조(휴관) ①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찰단, 관공서, 학교 등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설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② 군수는 전시관의 대청소, 전시유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 매표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 ① 관람료 징수를 위해 관람권을 발행하고, 그 종류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성인, 청소년)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성인단체, 청소년 단체)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요금 및 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종류별로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전시관 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매표소 근무 직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의 징수)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시관을 관람하지 않을 경우 그날 관람권에 한정하여 전액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6. 용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7. 「국가유공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0.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관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행위
4. 취사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자 또는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학류 등을 소지한 사람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전시관 체험사진료) 관람자가 전시관 내의 선박 또는 선상체험 사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별표 2에 따른 체험사진 요금을 징수한다.

제13조(변상조치) ① 관람자가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람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웅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 3 장 전시관의 자료관리

제14조(자료의 취득) 전시관 전시 및 수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기초 조사, 습득, 매입, 기증, 기탁 등에 따라 취득한다.



제15조(자료의 구입) ① 전시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발의로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구입한다.

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자료감정조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② 제1항에 따라 구입된 자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료구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어촌 환경 및 문화에 식견이 있는 학계, 문화계, 공무원 등 해당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자료의 구입 심의에 관한 사항
2. 전시관 자료의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지원 및 자문역할에 관한 사항
3. 수산문화 및 전시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영상회, 연구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시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웅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양관광시설업무팀장이 서기는 전시관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7조(자료의 감정) ① 자료의 구입가격은 자료의 감정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상에게 감정을 실시하여 평균 감정가격에 따른다.

- ② 감정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감정위원에게는 「웅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전시·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

- ② 자료를 기증·기탁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증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기탁된 자료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관리) 전시관 내의 자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료기록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이용) ① 전시관의 자료를 학술 및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3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 요구 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한다.

제21조(자료의 반출) 전시관은 학술적 고증, 공공기관의 전시 또는 보존처리 등의 사유로 자료반출 및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출할 수 있다.

제4장 전시관의 시설사용

제22조(시설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시관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획전시실 사용
2. 영상관 사용

제23조(시설사용 승인신청) 제22조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용일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사용승인서 교부) ① 군수는 시설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웅진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수납 확인 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시설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도, 군, 전시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반액감면 : 도, 군, 전시관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

제2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시설사용자의 설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수한 장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즉각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8조(변상)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 중 파손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29조(시설사용의 불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시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유지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30조(시설사용 승인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5장 보칙

제31조(수입금의 운용) 전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수입금(관람료, 체험사진료, 시설사용료를 말한다.)은 전시관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전시관 자료수집 및 유지관리
2. 전시관 주변 정화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관련도서의 구입) 전시관은 학술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도서 및 자료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일일 수입관리) 전시관은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을 매일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일수입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지난달의 관람자 수입금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전시관을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농어촌 가로등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농어촌에 설치한 가로등의 선량한 관리로 가로등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각종 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데 있다.

제2조(가로등의 작용범위) 본 조례에서 "가로등"이란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가로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 가로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군, 면, 마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1. 군총괄책임자 : 섬발전진흥과장
2. 읍·면책임자 : 읍·면장
2. 등별 책임자 : 마을 이장이 지정(가장 근거리 가구주 등)

제4조(점등 및 소등) ① 점등은 일몰 1시간 후에, 소등은 일출 1시간 전에 한다.

② 점등과 소등은 가로등별 관리책임자가 한다.

제5조(점검) 군수는 가로등 관리상태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읍·면장은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한다.

1. 정기점검 : 분기마다 마을책임자가 실시
2. 수시점검 : 등별 책임자가 실시
3. 정밀안전점검 : 우기를 대비하여 매년 상반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점검을 대행하여 실시한다.

제6조(보고) 읍면장은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별첨 서식 1에 따라 군수에

게 보고 한다.

1. 정기보고 ;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2. 수시보고 ; 수시점검결과 이상이 있을시

제7조(관리대장) 읍면장은 별첨서식 1에 따른 관리대장을 2부작성 1부는 군에 제출하고, 1부는 읍면에 갖추어 놓는다.(2호서식은 읍면에 비치활용)

제8조(전기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군비로 부담한다.

1. 전기료
2. 자연훼손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또는 파손된 시설보수비

② 고의 또는 차량 등의 외부충격에 의한 고장 파손시는 그 행위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수리) 전기안전공사 정밀안전점검결과 불량가로등과 읍·면장의 별표 2에 따른 가로등(고장신고)은 예산에 반영하여 수리한다.

제10조(가로등 이동) 가로등 설치의 위치가 농작물 등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읍·면장은 마을 이장과 협의 가로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 조례 제안 (웅진군)

① 자치입법 사례 : 30건

번호	확인조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1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명 :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군민건강을 위해 금연자원봉사단체(자) 위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	대구 중구의회
2	수변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수변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구역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구 북구의회
3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	대구 달성군의회
4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도서관의 위치 및 운영에 관해 명시하고 세부계획 수립 및 직무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광주 북구의회
5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 제정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전 유성구의회
6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제정	행정낭비의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각종 시책·사업을 폐지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경기 부천시의회
7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까지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도화	경기 김포시의회
8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 양주시의회
9	군인의 날 조례 제정	웅진군 군인의 날 제정 및 기념행사, 문화·예술·체육행사 실시 등을 제도적으로 명시	강원 홍천군의회
10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제정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주관단체 지정 기준 마련 등을 제도화	충청남도의회
11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관내 고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한 졸업생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전라북도의회
12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무료급식사업의 위생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대구 달서구의회
13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다양하고 실질적인 노인 여가 복지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지원 근거를 마련	대구 달서구의회

14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8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를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강원 양구군의회
15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정	고령자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 및 노후 보장 차원의 장수수당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	전남 나주시의회
1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시공 및 사용 승인 전 사전검사 이행 조치	대구광역시의회
17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제정	장애인들의 체육진흥을 장려·보호·지원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충청남도의회
18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천 중구의회
19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도모와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경기 의왕시의회
20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및 추모식과 추모비건립 등 다양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경남 창원시의회
21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각종 용역에 대한 타당성·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강원 홍천군의회
22	조손가족 지원 조례 제정	18세 미만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 가족에게 조손가족수당 월 5만원 지급 및 학습도우미 지원을 제도화	대구 달서구의회
23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경기 시흥시의회
24	향토음식육성 조례 제정	향토음식육성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의회
25	비만예방 실천 조례 제정	비만예방 실천 조례, 금연 환경조성 지원조례안 등 제정	대전 동구의회
26	기업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을 제·개정	경기도의회
27	복지정책에 관한 조례 제정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정	경기 고양시의회
28	민간위탁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정	경기 의정부시의회
29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	충남 연기군의회
30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부실공사방지 조례 제정	경남 남해군의회

☆ 별첨자료 : 회의운영 및 상임위 운영 예시

의사운영 일반

- 제 1 절 안건심의 절차
- 제 2 절 개의선포
- 제 3 절 보고사항
- 제 4 절 발 언
- 제 5 절 의사일정
- 제 6 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 제 7 절 토 론
- 제 8 절 표 결
- 제 9 절 의 결
- 제 10 절 산회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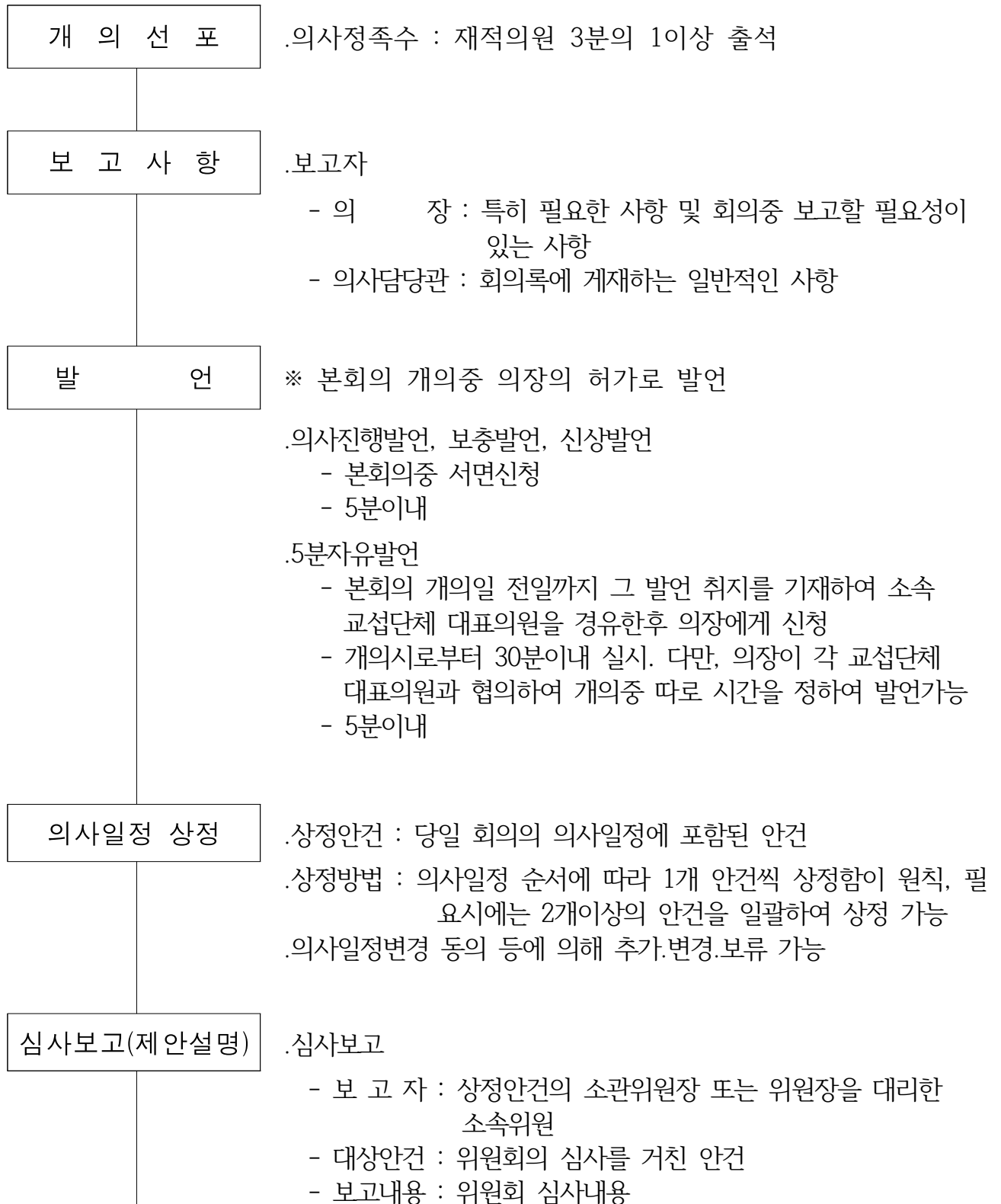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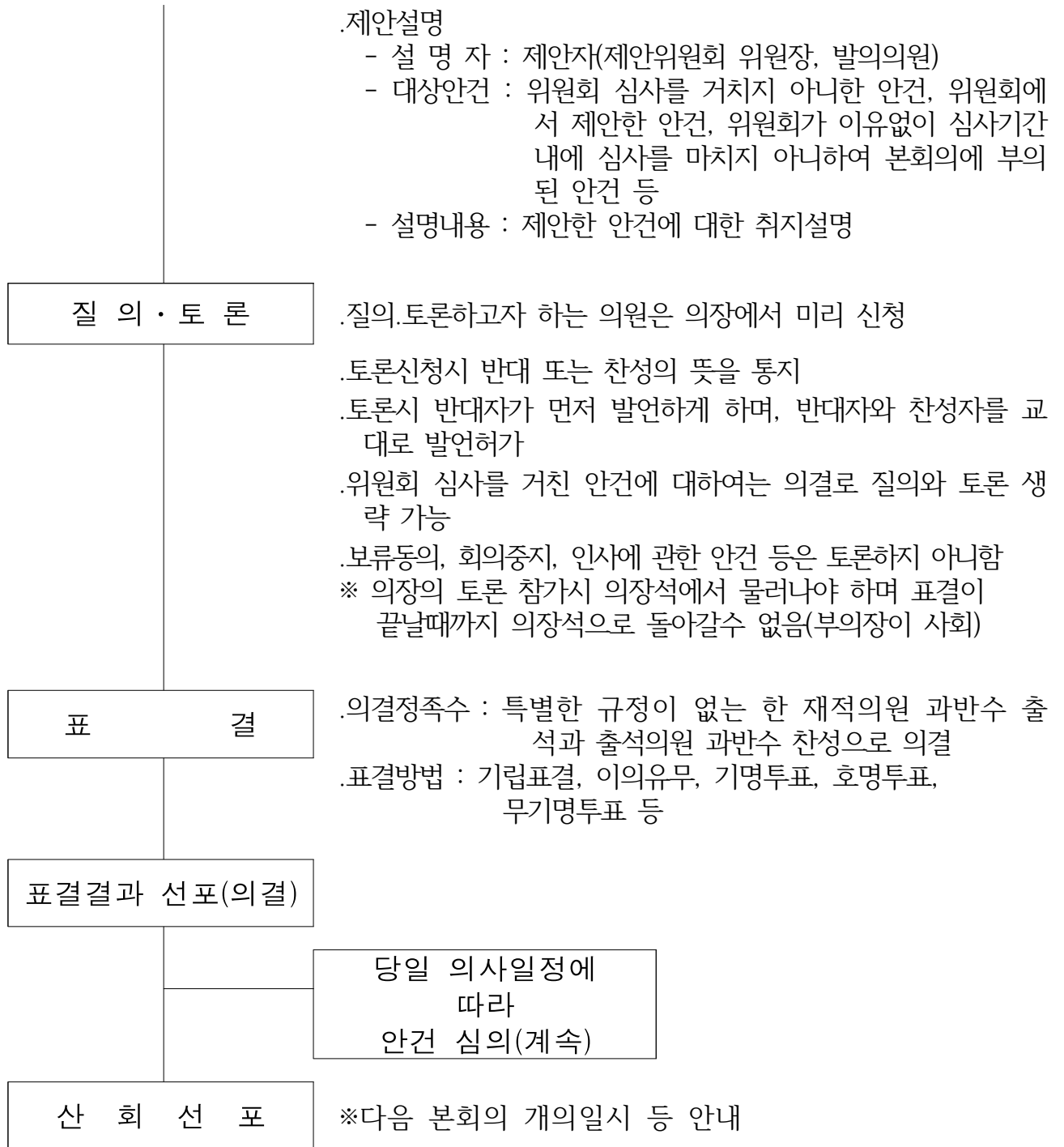
제 1 절 안건심의 절차

1. 의 의

- 안건이란 의회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하며, 안건을 성질별로 보면 대체로 ①의안 및 동의 ②선거 ③질문 등으로 나누어 진다.
- 심의란 의회에서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말한다. 도의회회의규칙에서는 본회의의 심사·논의를 “심의”라 하고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논의는 “심사”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 본회의 심사의 절차는 위원회의 심사여부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①위원장의 심사보고 ②질의 ③토론 ④표결(의결)의 순서로 하되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 하나를 생각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질의 ③토론 ④표결의 순서로 심의한다(회의규칙 § 33 참조).
-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의회에 제출·발의되는 모든 안건은 원칙적으로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본회의에 보고된 후 본회의에서 최종심의를 한다.
- 그러나 의원의 동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사항에 대한 선거·선임·사직·퇴직·자격심사·자격상실 등 의결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 제도가 없는 시·군·구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게 된다.

2. 본회의 진행절차도





※ 보고사항 후 의사일정 상정 전에 실시하는 사항의 예

- ① 의원 선서
- ② 신임 관계 공무원 인사
- ③ 신상발언
- ④ 5분자유발언
- ⑤ 의사진행발언(상황에 따라 변동)

3. 사회문안(총괄)

가. 개 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000회 경기도의회 ○○회) 제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나. 보고사항

-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 〈보고사항을 생략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
-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일정 상정

- 의사일정 제0항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일괄상정의 경우〉
- 의사일정 제0항 ○○○, 제0항 △△△,, 이상 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라. 제안설명 또는 심사보고

(1) 제안설명

- 〈위원회 제안 의안〉
- ○○위원회 ○○○위원장(또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의안〉

-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집행부제출 의안〉

-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2) 심사보고

〈위원회 제안 의안〉

- ○○위원회 ○○○위원장(또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마. 질 의

-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신청이 있습니다.
- 그러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다음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그러면 ○○○도지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 토 론

-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 표 결

(1) 이의유무

(찬반 토론이 없거나, 반대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 안>

- ○○○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면)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수정안>

- ○○○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면)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각종표결

기립표결·기명투표·호명투표·무기명투표

※ 「제9절 표결」 참조

아. 의 결

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② ○○○○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 산 회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제○차 본회의는 ○월 ○일 ○요일 오전(후)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 2 절 개의선포

1. 의 의

- 개의선포란 의장이 회기중 당일의 본회의를 열기 위하여 회의시작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개시하기에 이르러서 제○○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를 여는 것을 개회라 하고 그것과 구별하여 회기중 실제로 당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개의라 한다.
- 출석의원이 정족수가 되면 의장은 개의를 선포한다. 의장의 개의선포에 의하여 회의는 시작되고 이 선포전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으며, 개의선포전에 발언을 신청하여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개의선포전에 만일 의원이 어떤 말을 하여도 그것은 발언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회의록에 기재될 수 없다. 이것은 회의를 중지했다가 속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회의규칙 § 18).
- 회의중지(정회)후 다시 개의하는 것을 “계속 개의” 또는 “속개” 라 한다.

2. 개의 선포

가. 개의요건

- 본회의는 의자정족수에 도달하면 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일정 중에 의결할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결정족수에 도달한 후 개의한다.

나. 개의시간

-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회의규칙 § 17).



- 개의할 시각이 가까워지면 회의장 뿐 아니라 의사당내 각실에 있는 의원에게 개의시간이 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회의장내에 모이도록 한다.

다. 개의의 선포 형식

- 개의선포를 함으로써 회의가 시작된다.
- 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의장이 “제0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라는 발언과 함께 의사봉을 세 번(3타)치는 형식으로 선포한다.

3. 실무요령

가. 본회의 개의 안내신호(시그널)

- 본회의 개의 20분전에 음향조정실과 연락하여 개의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방송(이하 ‘시그널’)을 한다. 교섭단체간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아 본회의 개의시간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방송하여야 한다.
- 시그널은 “본회의가 개의된다” 또는 “본회의가 속개된다” 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

나. 의원출석 독려방송

- 시그널 송출 도중 또는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 직전과 출석의원이 정족수에 미달할 때에 의사직원이 본회의 개의시각 안내 또는 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실시한다.

다. 정족수 확인

- 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 곧 본회의가 개의되므로 의장입장 직전까지 의사정족수(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확인하여 보고한다.

제 3 절 보고사항

- 보고사항이란 본회의 개의후 안건의 발의 또는 제출상황 및 위원회의 심사 과정 등 관련법규 및 조례에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사항과 기타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원 각자가 도민의 대표로서 보고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은 회의장에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의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일상적인 사항은 의사담당관이 보고할 수 있다.
- 보고는 개의선포를 한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행하는 것이지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중에도 보고한다.

2. 보고내용

- 의원 또는 위원의 이동, 청가, 기타 신상에 관한 것.
- 의안의 제출, 심사보고서 제출, 이송, 재의의 요구, 철회
- 건의, 결의, 청원에 대한 단체장의 처리결과 보고서
- 서면질문의 제출 및 단체장의 답변서
- 기타 중요한 왕복 문서 등



제 4 절 발 언

1. 의 의

- 발언이란 의원,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등 본회의의 의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통칭한다.
- 의장이 일단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한 때에는 다른 발언을 허가하지 않으며 발언자는 발언도중에 타발언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해되지 않고 그 발언을 완료할 것을 보장받고 있다.
- 그러나, 의사정리와 질서유지의 필요상 의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으며(자치법 § 74①, ②), 발언의 도중이라도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수 있다(자치법 § 74③). 또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회의규칙 § 40).
- 발언도중에 회의를 중지했거나 산회한 때에는 속개회의 또는 다음 회의에서 그 발언에 관계있는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중단된 발언을 계속시킨다(회의규칙 § 39).

2. 발언의 종류

- 발언의 종류에는 제안설명(취지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질의, 집행부질문, 토론,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신상발언, 교섭단체 대표연설, 5분자유발언 등이 있다.
- ※ 이 장에서는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반론발언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타 발언은 해당 부분에서 설명함

3. 발언원칙

가. 발언시간

- 원칙 : 20분까지
-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발언 : 5분까지
- 교섭단체대표의원 연설 기타 발언 : 30분까지
- 대집행부 질문 : 20분까지

나. 발언통지와 그 허가

(1) 발언통지의 의의

- 발언의 시기는 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후부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기까지이다.
-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뿐만 아니라 출석답변 공무원 기타를 막론하고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발언통지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2) 발언통지의 방법

- 발언통지의 시기는 「미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발언전에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로 하면 된다.
 - ①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한하여 하므로 의사일정이 보고된 후 접수한다. 그 전에 통지한 것은 의사일정이 보고된 때 접수한 것으로 한다.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한 안건 또는 동의에 대한 발언은 그 안건 또는 동의를 붙이기로 한 후에 접수한다.
 - ② 질의를 통지할 때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답변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토론의 통지에 있어서는 반대 또는 찬성으로 뜻을 밝혀야 한다.



- 발언통지는 「의장」에게 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발언 통지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에게 한다. 발언통지를 접수한 사무직원은 안건별로 발언의 종류와 접수순위, 성명과 반대 또는 찬성을 기입한 발언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3) 발언의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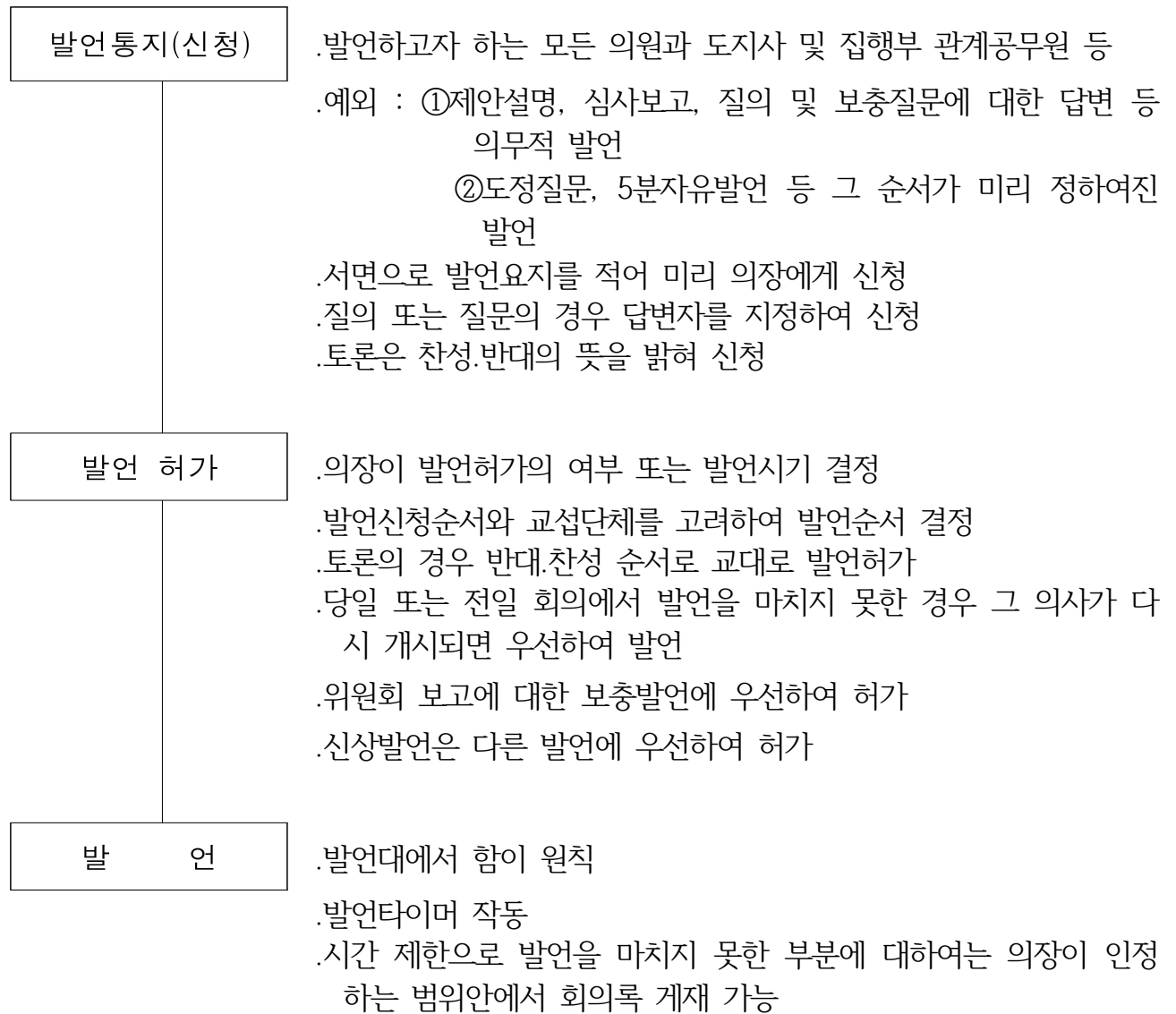
- 의장은 발언표에 기재된 순서를 고려하여 발언자를 지명해서 발언을 허가하게 되며, 만약 발언할 의원이 의석에 없을 경우는 발언순위를 다음으로 미루거나 발언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취소할 수 있다. 또 발언허가를 얻은 의원이 발언할 의사가 없으면 발언을 하지 아니 할수도 있다.
-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발언을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지하게 되며, 의장의 허가를 얻지 않은 발언은 정식의 발언이 아니고 사담에 불과하며 기록이 되지 않는다.
- 미리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기립(또는 거수)하여 「의장」이라 부르고 발언권을 청하여 허가를 얻는다. 2인 이상이 발언권을 청할 때에는 먼저 기립한 자(先起立者)부터 발언을 허가한다.
- 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은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그 발언의 순위가 미리 정해져 있음으로 발언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다. 발언의 장소

-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발언을 명확히 하고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회의장의 구속, 속기기술 등이 잘 뒷받침 되어야 한다. 동의에 대한 재청과 같이 발언이 극히 간단한 경우, 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 나오게 할 수 있다(회의규칙 § 38).

- 의장이 토론에 참가한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회의규칙 § 45).
-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할 때에는 발언대에서뿐만 아니라 본인의 위원석에서도 발언할 수 있다.

4. 발언절차도





5. 발언의 제한

(1) 의제외 발언의 금지(회의규칙 § 40)

- 어떤 종류의 발언이든, 누가하는 발언이든지 간에 모든 발언은 그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고 발언이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의장이 선포한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때에는 그 의제 이외의 사항이 언급되어서는 안되며 의제에 대한 발언이라도 다음의 예와 같이 그 발언의 성질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 ①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 반대론으로 공격하는 것
 - ② 위원장의 심사보고나 그 보충보고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가하는 것
 - ③ 질의를 함에 있어서 토론에 미치게 하는 것
 - ④ 토론에 있어서 질의를 하거나 의장의 의사진행방법을 비난하는 것 등과 의장이 의제외의 사항에 관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 예를 들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과 신상발언에 있어서도 그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문·잡지·간행물·기타 문서에 게재된 간단한 문장을 인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그 범위를 넘을 때 의장은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금지 등 그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발언회수의 제한(회의규칙 § 41)

-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동일의제」라 함은 의장이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의 대상으로 한 안건이나 질문의 범위를 정한 제목을 말한다. 수개의 의안을 일괄하여 심의할 때에는 수개의 안이 한 의제가 되는 것이다.
- 「2회에 한하여」라 함은 그 한 의제마다 질의·토론을 통하여 2회밖에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의제를 심의함에 있어서 편의상 수개의 문제로 분리하여 심의하거나 수정안이 있을 때에는 각각 그 문제마다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 「2회에 한하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 질의에 있어서 질의사항이 수개항 있을 경우 1문1답을 하지 않고 질의사항을 전부 묻고 응답을 듣는 질의형식을 전제로 한다.
 - 질의에 있어서 2회의 발언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재질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토론에 있어서 2회의 발언은 토론을 한 다음 상대방의 토론을 듣고 그것을 반박하는 것을 말한다.
 -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회의 발언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 토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의무적이며, 제안자의 취지설명이나 심사보고와 보충보고는 토론과 의결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발언회수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 의사진행 및 신상에 관한 발언은 의제에 대한 발언이 아니므로 발언회수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발언시간의 제한(회의규칙 § 42)

-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등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 발언시간은 1회의 발언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의제가 다를 때에는 몇번이고 발언할 수 있고, 동일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동일성질의 발언을 2회째 할 경우는 보충발언이므로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보충발언」 이하 함은

- ①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소위원장, 간사 또는 소수의견자가 하는 발언을 말한다.
- ② 또한 동일의제에 대하여 동일성질의 발언을 2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경우에는 특별한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발언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이때의 범위는 발언자가 하려는 발언요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간명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

6. 5분자유발언

가. 의 의

- 5분자유발언이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이다(회의규칙 § 40의 2).
- 특히 의회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본회의에서의 발언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대집행부질문 또는 안건심의회와 관련한 질의·토론 이외에도 의원이 본회의에서 안건심의회 또는 도정사항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 발언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나. 발언신청

-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회의규칙 § 40의2②).

다. 발언허가

-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회의규칙 § 40의2③).
-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회의규칙 § 의2①). 다만, 의원별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 교섭단체별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 수를 정하되, 동일교섭단체소속 의원 중에는 신청순으로 허가한다.

라. 발언순서 결정

- 발언순서는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회의규칙 § 40의2③).

마. 발언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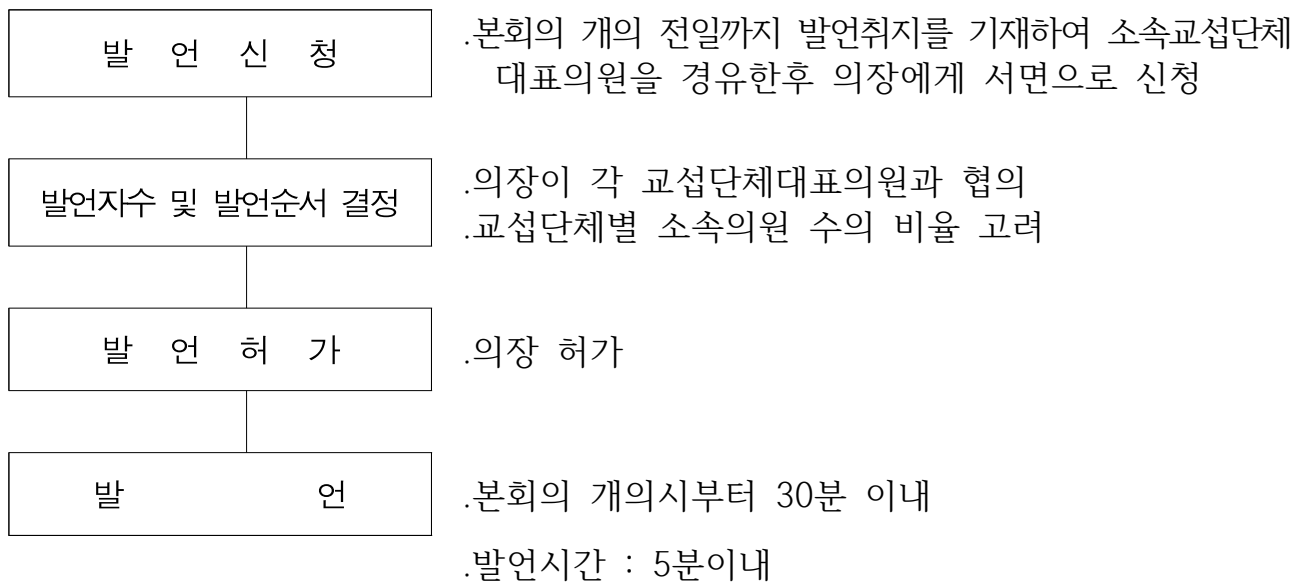
-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회의진행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언하지 못한 의원이 다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발언신청을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바. 발언요지의 변경 및 발언의 취소

-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타 사유로 발언취지를 변경 또는 발언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발언실시 전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사. 5분자유발언 절차도



7. 의사진행발언

가. 의 의

- 의사진행발언이란 안건처리나 회의진행과정 등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회의운영 실제와 관련된 발언을 말한다.
- 그 예로는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 의장에 대한 질의나 요구 또는 희망 및 선결동의를 위한 발언 등이 있다.

- 의사진행의 발언은 동의가 아니므로 찬성자가 필요없으며 표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다만, 의사진행의 발언이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것이나 동의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는 것일 때는 의장은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는가를 물어서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로 하여야 한다.

나. 발언신청

- 의사진행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하여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을 신청하는 의원은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발언허가

-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으로서 의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 또는 규칙발언과 회의의 중지 등 즉각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발언을 허가하는 시기를 의장이 정한다 (회의규칙 § 37③).
- 의사진행발언은 실제적으로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발적인 사태에 관한 것이어서 발언시기를 놓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장은 발언을 허가하기 전에 발언취지를 확인하여 발언허가의 여부 및 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다.

라. 발언의 처리

- 의장의 답변 및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
- 동의 발언인 경우 : 의장이 1인 이상의 찬성자를 물어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 채택

마. 발언시간

- 의사진행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회의규칙 § 42①).



8. 신상발언

가. 의 의

- 신상발언이란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을 말한다
- 신상발언은 다른 의원의 발언중 자기의 성명이 거론되거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당해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사과 또는 합리화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다.
- 자격심사의 피심의원, 윤리심사대상자, 징계대상자는 그 안건이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신상발언을 통하여 변명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나. 발언신청

- 의사진행발언과 마찬가지로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그 발언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발언허가

- 신상발언의 허가여부 및 시기는 의장이 정하며, 통상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하고 있다.
- 의원 상호간에 변명과 응수가 되풀이 될 때에는 인신공격으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발언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발언시간

- 신상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회의규칙 § 42①).

9. 보충보고

가. 의 의

- 보충보고는 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의원들의 이해를 돕거나 오해를 제거하여 토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심사보고에 보충하기 위한 발언이다.
- 보충보고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할 수 있는데 이 발언은 보고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한다(회의규칙 § 43).
- 그리고 보충보고는 위원회의 심사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어야지 토론내용에 미치는 즉 자기 의견을 첨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10. 실무요령

가. 5분자유발언

(1) 발언신청

- 발언희망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발언신청서를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각 교섭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먼저 취합하여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하기도 한다. 또한 발언신청 시한인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는 이미 고지된 본회의 개의 예정시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사전에 각 교섭단체 사무실에 발언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 일부 교섭단체에서 발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차원에서 다른 교섭단체에 발언신청이 있었음을 통보하고 신청여부와 교섭단체별 발언순서를 확인한다.
- 발언신청서가 제출되면 발언요지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대장



에 등록한다.

(2) 발언자 수 결정

- 의원의 발언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 발언가능한 의원 수인 6인을 최대발언자 수로 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는다(회의규칙 § 40의2①).
- 교섭단체별 발언자 수는 각 교섭단체별 소속의원 비율에 따라 배정되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각 교섭단체와 협의한다.

(3) 발언순서 결정

- 발언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다수 의석을 가진 제1교섭단체의 첫 신청자를 첫 발언자로 한다.
 - ② 차후 발언은 의석수에 따라 제2, 제3교섭단체순으로 한다.
 - ③ 발언자수가 많은 교섭단체는 다른 교섭단체와 균형있는 발언이 될 수 있도록 배정한다
 - ④ 교섭단체 사무실에서 자체순서를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감안하여 발언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 발언순서가 결정되면 발언의원과 각 교섭단체 행정실 등에 통지한다.

(4) 발언실시

- 5분자유발언은 대개 본회의 개의후 안건처리 이전에 실시하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이 다수이거나 중요 쟁점처리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안건처리 이후에 실시하기도 한다.
- 본회의 개의직전 발언의원의 출석여부와 발언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발언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언순서를 변경하거나 발언취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발언순서가 결정된 후 발언을 취소하는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결정된 순서에 따라 발언하도록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신청의원 중에서 그 순서를 다시 정할 수 있다

나. 의사진행발언 등

- 의사진행발언은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한 미리 발언취지를 물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하나 이와 별개로 나중에라도 발언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의원의 발언신청서는 의사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사직원은 신청서를 복사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등에게 전달하여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한다.
- 이때 발언신청의원이 여러명일 경우 의사직원은 그 순서를 작성함에 있어 신청순, 교섭단체간 안배 등을 고려하여 발언 순서를 작성·보고하며,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의원에게 그 순서를 통지하고, 해당의원이 발언직전 발언대기석에 착석하도록 안내한다.



11. 사회문안

작성요령

- 2인이상의 발언신청이 있을 경우 “○분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습니다”라고 하기도 하나, 신청후 발언하지 않는 의원도 있으므로 “○분 의원으로부터”라는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발언할 순서가 된 의원이 의석에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하여 발언할 의원의 재석여부를 항상 파악하며, 발언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사회 문안을 별도로 준비한다.
- 본회의장에서의 갑작스런 발언신청으로 사회문안을 작성할 때는 항상 표결 담당직원이 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5분자유발언은 회의 시작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결정족수의 유지, 교섭단체간 입장차이가 있는 안건의 상정 등으로 회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 말미에 발언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건처리후 발언하도록 하는 사회문안을 별도로 준비한다.
- 의사진행발언중 다른 의원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또는 반론발언 신청이 있을 것에 대비한다.

가. 5분자유발언

(1) 1인 신청시

-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2) 2인이상 신청시

- 오늘 (0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 그러면 먼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 다음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3) 안건처리도중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는 경우

○ 다음은 ○○○○안건을 처리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난 후에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4) 안건처리후 발언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 오늘 5분자유발언신청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진행발언

(1) 1인 신청시

○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2) 2인이상 신청시

○ 지금 (0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 그러면 먼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 다음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 5 절 의사일정

1. 의의

- 의사일정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것으로서 그날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 할 수 있다.
- 「의사일정」이라함은 대개 「당일의 의사일정을 의미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 회기동안의 의사일정」 또는 한 회기동안을 여러번 나누어서 작성한 「전체의사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의사일정의 작성과 협의

- 의사일정은 의사조정권을 가진 의장이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회기동안의 전체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회의규칙 § 21).
- 즉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①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②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등을 들 수 있다.
- 운영위원회와 협의함에 있어서는 한 회기동안의 개략의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집회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 일정에는 일정기간의 본회의 부의안건 외에 위원회 심사기간과 휴회 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본회의 부의 안건이 미정인때는 「안건처리」라 기재한다.

3. 의사일정의 기재사항

-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한 회기동안의 일정에 따라 1일의 일정을 작성하되 그 일정에는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외에 회의차수와 요일을 기재한다(회의규칙 §21①). 보고사항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개의선언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 또는 의사담당관이 보고한다.(회의규칙 § 21).
- 안건의 기재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안과 조례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고 의원징계동의 등 신상문제는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 건명이 동일한 안건은 일괄하여 기재하고 안건명 끝에 그 건수를 표시한다.

4. 의사일정의 보고 및 배부

- 작성된 의사일정은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회의규칙 § 21①). 국회의 예에 의하면 제1차 본회의에서 한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을 배부하며, 당일 의사일정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즉 전일 본회의가 산회되기전 의장이 의사일정은 보고하고 사무직원이 산회후 알리는 방송을 실시하며, 당일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고 있다(회의규칙 §21).
- 그러나 회의를 재개한 경우 즉 휴회기간이 만료되어 본회의가 재개된 때와 휴회중 자치단체장이나 의장 또는 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재개할 경우에는 의사일정을 배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즉 안건이 위원회의 심사는 끝났으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서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날 본회의가 개의되기까지 심사 보고될 수 있는 안건이면서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5. 의사일정의 변경

(1) 의사일정 변경의 유형

- 의사일정 변경의 유형을 보면 ①순서변경 ②일정의 추가(일정에 상정된 안건의 의사를 모두 마치고 다른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는 것) ③일부보류(당초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중 일부에 대하여 당일의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의 세가지 유형이 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절차

- 의사일정의 변경은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한다(회의규칙 § 22).
- 의사일정의 변경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나 본회의 개의전에 의사일정을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는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없이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그 변경절차를 다소 까다롭게 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의사일정 변경시 재협의를 원칙이나 개의시간 변경, 안건추가 및 삭제, 본회의 기간을 하루정도 앞당기거나 미루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구두로 협의한 후 변경이 가능하며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의사일정 변경의 예외

-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안건을 상정, 논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의사일정 변경 여부부터 결정한 후 이것이 통과되면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논의·처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안건중에서 의무적인 사항 논의나 내용이 간단하고 경미함에도 매

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논의·처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회의의 흐름을 막게 된다.

- 이러한 이유로 명문규정은 없지만 국회의 관례에 의하면 안건중 내용이 간단하고 경미한 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않고 보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선결문제도 의사일정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고 있다.
- 국회의 관례상 의사일정 변경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회기연장에 관한 것
- 휴회에 관한 건
- 공휴일에 본회의 재개
- 개의시간 변경
- 의원 청가에 관한 건
- 경조에 관한 건
- 위원회의 심사(조사)기간의 결정 또는 연장에 관한 건
- 위문금(성금) 등 모금에 관한 건

6. 미료안건의 처리

-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회의규칙 § 23②). 의사일정은 지정된 당일에 한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 이 경우 대체로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 순서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일부가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다음 회의에서는 새로운 긴급안건이 있을 수 있으며, 회의운영상의 형편도 있을 것이므로 심의미료 안건을 다음 회의에서 우선하게 된다면 의사일정 작성이 구속되어 회의운영의 융통성을 잃게 될 것이므로 그날의 사정에 의하여 전차회의의 일정에 구애됨이 없이 안건이 긴급하고 중요한 정도에 따라서 적당히 다시 배정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7. 위원회의 의사일정

-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회의규칙 § 67) 첫 회의시 대략적인 의사일정을 배부하고 당일의 의사일정은 흑판에 게시하는 정도면 될 것이다.
-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대체로 본회의에 준하되 의사일정의 변경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의제로서 성립한다.

8. 의사일정 상정

(1) 의 의

- 의사일정 상정이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의제로 삼아 심의의 시작을 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상정방법

- 의사일정에 기재된 부의안건은 1개 안건씩 상정하여 심의함이 원칙이며 이를 “1의사 1의제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 또는 제안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도 의결은 각각 1건씩 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그 내용이 서로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 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일괄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의 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안건의 신중한 심의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 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별도의 상정행위 없이 바로 원안과 함께 심의한다.

(3) 상정순서

- 안건의 상정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진행순서를 변경하여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

(4) 실무요령

가. 일괄상정이 가능한 안건

○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의 종류와 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안건의 심의절차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개 일괄 상정하는 안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안건의 내용이 서류 관련된 안건
- ② 동일 위원회 소관 안건
- ③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 ④ 안건의 내용은 다르나 건명이 동일하거나 의안의 종류가 같은 여러개의 안건



나. 상정순서

- ① 안건의 상정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른다.
- 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순히 안건의 심의순서를 변경하여 상정할 수 있다.

(5) 사회문안

○ 일괄상정의 예

[예 1] 의사일정 제0항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0항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0항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 2] 경기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 3]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 안건의 예
(국 회)

- 5건 : 교섭단체대표연설(하나의 의제로 2일이상 계속 상정하여도 연설자 수에 상관없이 1건으로 봄), 정치에관한질문,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경제에관한질문(대개 2일간 계속 상정하나 의제가 같으므로 1건임), 사회.문화에관한질문
- 14건 : 16개 상임위원회 중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이 없는 관계로 제출하지 않음.

제 6 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1. 심사보고

(1) 의 의

- 심사보고란 본회의의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해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 경과와 결과,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구두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 위원회가 어떤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 그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는데 이를 심사보고서의 제출이라 하며 본회의에서의 심사보고는 이것을 요약하여 구두로 하게 된다.

(2) 심사보고자

- 심사보고는 안건의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신하는 위원은 위원회에 있어서의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구두로써 보고하게 되는데 본회의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은 하지 아니하므로 충실하게 보고하여야 할 것이며, 자기의 의견을 가해서는 안된다.
- 만일 위원장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려고 할 때에는 토론에 참가할 것을 미리 통지하고 의원의 자격으로서 발언하여야 한다.
- 동일위원회에서 심사한 수개의 안건이 일괄하여 의제로 상정된 때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도 일괄하여 동시에 한다.
- 위원회의 대안이 의제가 된 때에는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명과정에서 원안에 대한 심사과정도 동시에 행한다.

(3)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경우

-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것은 ①위원회에서 가결(수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을 포함함)되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고 의장이 그



보고서를 인쇄·배부하여 그 안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는 경우 ②위원회가 이유없이 안건을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회의규칙 § 27) ③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부결을 포함한다)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가 있다(자치법 § 61). 이 경우에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인쇄하여 배부한다.

2. 제안설명

(1) 의 의

- 제안설명이라 함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의원이 안건을 심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의 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을 설명하는 것을 말하며 법규상 ‘취지설명’ 이라고 한다.
- 제안자는 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할때에 제안설명을 하고 본 회의에서는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면서 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만 한다.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는, 도의회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 안건이 있으며, 시·군·구 의회의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 안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이에 해당된다.

제 7 절 토 론

1. 실무요령

- 의원이 토론을 신청할 때에는 발언신청서에 찬성토론인지 혹은 반대토론인지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인지 혹은 원안에 대한 토론인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한다.
- 토론은 「반대-찬성-반대-찬성」의 순으로 진행한다.
- 발언을 통제한 반대자 또는 찬성자의 수가 대체로 동일하면 별문제가 없으나 어느 한편이 많을 때에는 적은 편의 발언을 많은 편 발언의 사이사이에 적당히 배열하여 토론교대의 원칙을 살리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토론은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반대자 또는 찬성자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찬성자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론 생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문안

-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 다음은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 8 절 표 결

1. 의 의

- 표결이란 의장의 표결선포에 따라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표명된 수를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 표결은 의원 개개인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 행위이며, 의결은 표결결과에 따라 회의체의 최종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2. 의결정족수

- 의결정족수란 회의체에서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뜻한다.
- 회의체 의사결정방법의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표결시 출석의원 수의 계산

- 기립표결시
 - . 기립표결시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결선포시 회의장에 출석한 의원 수가 된다. 그러나 표결시 출석은 했더라도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퇴장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기명·무기명투표시
 - . 기명·무기명투표시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투표한 의원의 명패 수를 기준으로 출석의원 수를 계산한다.
 - . 투표시 회의장에 출석하고 있으나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 의원은 투표시의 출석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표결의 선포

- 의장은 표결할 때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 모든 의원에게 표결에 부칠 안건을 주지시키고 의원이 찬성 또는 반대(가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한다.

(1) 표결선포 방법

- 의제로 된 안건은 심의절차에 따라 그대로 표결에 부친다.
-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 후 부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 동일 건명의 여러개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하였을 때에는 일괄 하여 표결하는 것이 선례이다.

(2)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표결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을 요구하는 발언이나 동의는 허가될 수 있다.

4. 표결방법

- 표결방법으로는 ①기립 ②거수 ③기명투표 ④무기명투표 ⑤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의 5종이 있다.

5. 개 표

(1) 개표과정

- 투표가 종료된 때에는 의장은 개표할 것을 선포한다.
- 개표순서는 의장의 명패함 개함 선포에 따라 의사직원이 명패수를 계산하여 보고하고 의장은 그 수를 회의에 보고한다.
- 명패수 선포 후 의장의 투표함 개함 선포에 따라 의사직원이 투표수를 계



산하여 보고하며, 이에 따라 의장은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음을 보고한다.

- 끝으로 의사직원이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면 그 결과를 의장이 선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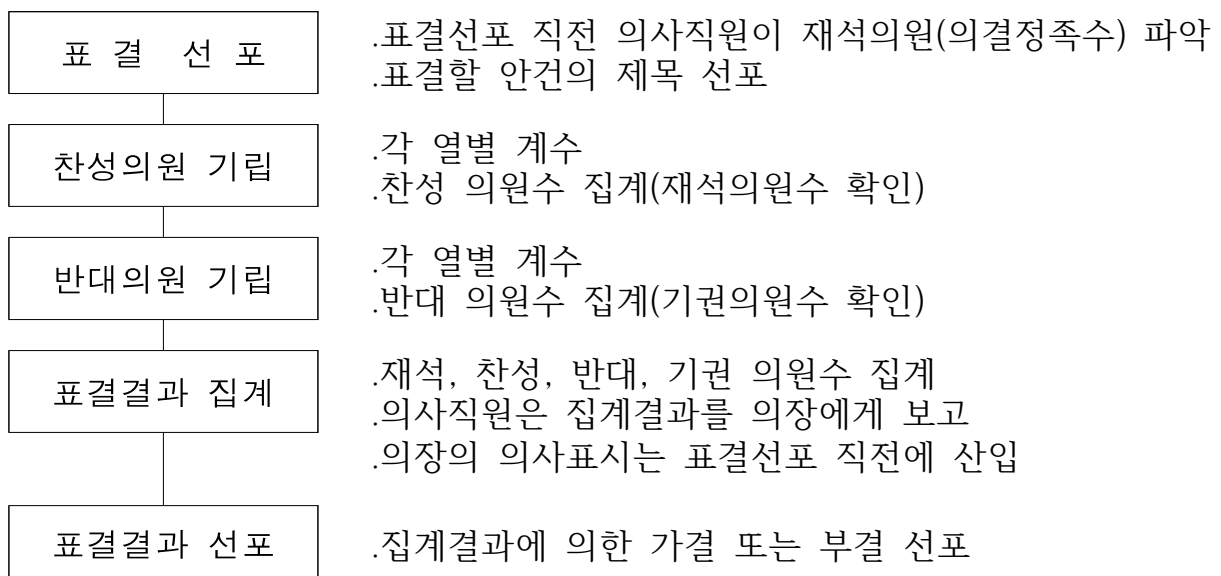
(2) 명패수와 투표수가 다른 경우 처리방법

- 명패수 > 투표수일 경우
 -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수를 기권으로 처리함
- 명패수 < 투표수일 경우
 - . 이런 경우 무효로서 재투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단 개표하여 명패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 투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후 개표
 - . 개표결과 명패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 투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투표결과를 집계한다.

6. 표결절차

(1) 기립표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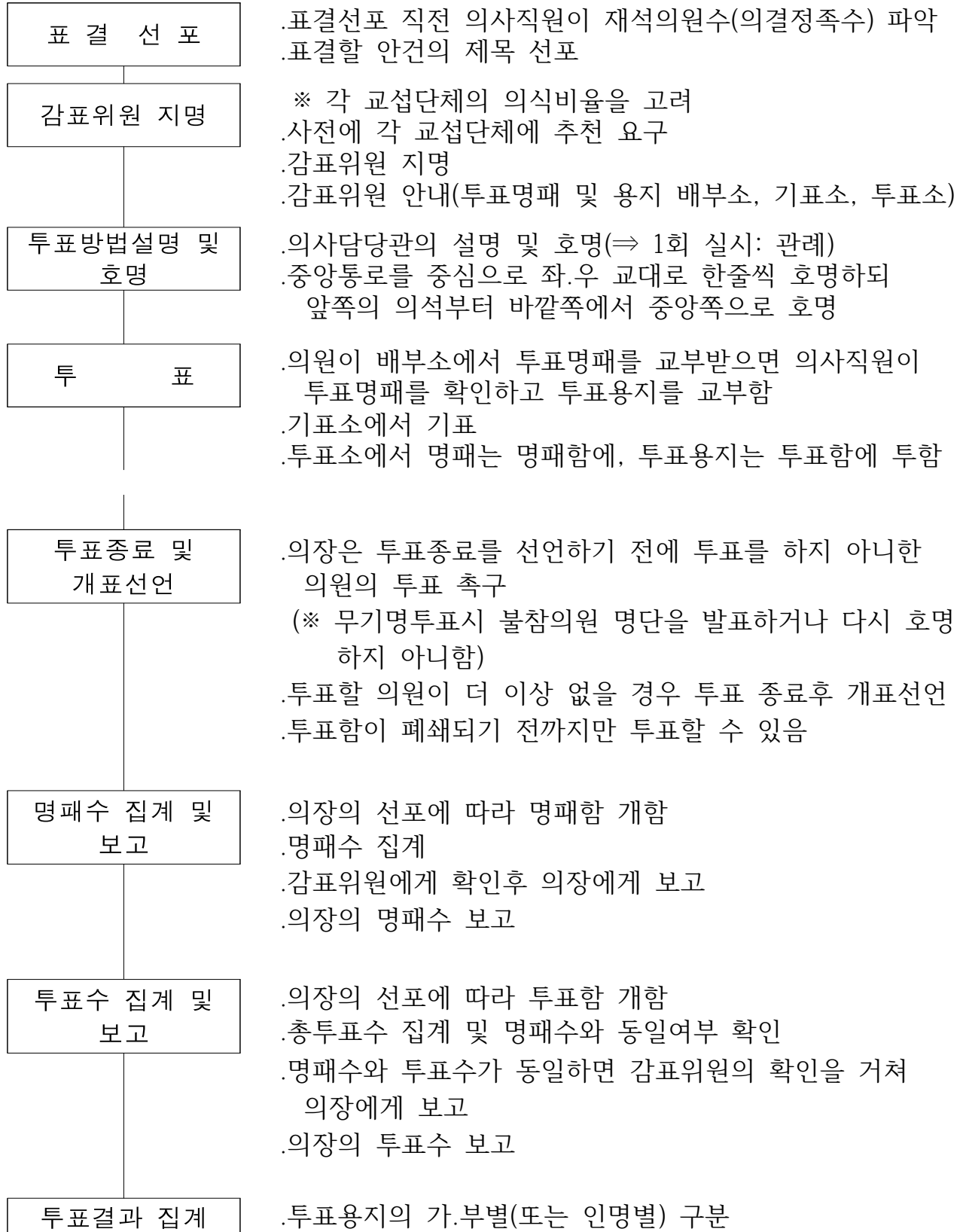
《기립표결 절차도》



(2) 기명 및 무기명 투표

※ 투표절차는 두 방법이 대동소이하나, 기명투표의 경우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명 및 무기명투표 절차도》





- .구분된 가.부별(또는 인명별)로 투표수 집계
- .총투표수와 동일여부 확인
- .유·무효 구분 등이 모호한 경우 감표위원이 판정
 - ※ 연기명식투표의 집계
 - 먼저 총투표수를 집계하여 투표수를 선포한 후 투표용지 첫 번째란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절단하여 각각 집계후 결과를 선포하는 순서로 진행
 - ※ 기명투표의 경우
 - 감표위원의 확인하에 투표한 의원의 성명 확인 및 의원별 투표결과표 작성

투표결과 선포

- .투표결과를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
- .투표결과 선포
- .기명투표의 경우 찬반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게재

7. 실무요령

가. 투표방법

(1) 표결이나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의 공통된 방법

- ① 정족수 : 안건상정후 표결에 대비하여 항상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를 파악한다.
- ② 감표위원의 지명 : 감표위원은 투표가 공정하게 행해지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장이 투표용지배부소, 기표소, 투표소에 배치되도록 지명한다.
- ③ 투표함과 명패함이 비어 있는가를 투표실시전에 검사한다.
- ④ 투표 : 사무처직원이 의석순으로 앞 의석부터 호명하면 의원은 의석에서 가까운 투표용지배부소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다음 연단 앞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간다. 투표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는 의장은 아직 투표를 안한 의원이 없는가를 물어서 투표를 하도록 재촉하고 감표위원이 마지막으로 투표한다.
- ⑤ 투표종료의 선포 : 투표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투표함을 폐쇄할 것을 선포한다. 투표함이 폐쇄된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 ⑥ 개표의 선포 : 의장은 투표가 종료된 때에는 개표할 것을 선포한다. 보고하고 의장은 그 수를 회의에 보고한다.
- ⑦ 명패수와 투표수의 점검계산 : 의장이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할 것을 선포하면 직원은 감표위원의 참여아래 명패수를 계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그 수를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에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계산하여 의장은 명패수와 투표수가 합치된다는 것을 보고한다.
- ⑧ 투표결과선포 : 득표의 계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 또는 당선자를 선포한다.

(2)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 유의할 점



선거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로 하는 다른 표결에 비하여 특히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선거관리자 : 의장이 의장석에서 선거관리위원장격이 되고 감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와 개표 기타 사무를 관리한다. 사무처직원은 선거사무의 종사원이 된다.
- ② 투표장소와 개표장소 : 선거는 회의장에서 행하게 되므로 투표소와 개표소는 누구든지 선거광경이 잘 보이도록 회의장의 정면주변에 설치한다.
- ③ 무효·기권의 결정
 - 득표수를 계산할 때에 다음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 정하여진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후보자 성명 이외의 것을 기재한 것
-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 2인 이상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한 것(단기투표의 경우)
- 어느 후보자를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

- 어느 후보자의 성명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 무효 또는 기권이 명백한 것은 의장이 결정할 것이나 의문이 있는 것은 감표위원에게 물어서 결정한다.

8. 사회문안

작성요령

- 안건의결시 이의유무로 물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표결사회문안을 항시 준비한다.
- 위원회 심사결과가 수정의결인지 또는 원안의결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가. 이의유무

(1) 원안의결

- 그러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면)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위원회 수정안

- 그러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면)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 기립표결

-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 지금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석 000인 중 찬성 000인, 반대 00인, 기권 0인으로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 무기명투표 : 가부기재의 경우

- 이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②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 그러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②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의원, △△△의원, □□□의원, 이상 0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 안내)
-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투표방법 설명)
(호명 및 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집계)

- 명패수를 계산한 바 000매입니다.
-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집계)
- 투표수도 00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 투표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투표수 000표중 가 000표, 부 000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안은 가결(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기명투표(가·부기재)방법 설명문 : 의사담당관

-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투표는 ○○○○에 대한 투표로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부를 잘못 기재하시거나 투표용지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 무기명투표 : 성명기재의 경우

- 이 안건은(경기도의회규칙 제50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 감표위원 지명
- 투표방법 설명 및 호명
- 투표 및 개표
- 집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투표수 000표중 ○○○ 000표, △△△ 00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서 경기도의회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으로 당선(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기명투표(성명기재)방법 설명문 : 의사담당관

-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투표는 ○○○○에 대한 투표로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에 선출하고자 하는 분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투표용지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 기명투표

- 이 안건은 ○○○의원외 00인이 기명투표를 요구해 왔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 감표위원 지명
 - 투표방법 설명 및 호명
 - 투표 및 개표
 - 집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투표수 000표중 가 000표, 부 000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0000안은 가결(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투표결과에 대한 찬반의원의 성명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명투표(가·부기재)방법 설명문 : 의사담당관

-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투표는 0000에 대한 투표로서 투표용지는 뒷면에 가.부란과 의원성명란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 의원께서는 투표를 하실 때 먼저 투표용지의 의원성명란에 투표하시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는 0000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로, 반대하시면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 그리고 성명이 같으신 의원께서는 반드시 한자로 기재해 주시고, 한자도 같으신 때에는 의원 성명란에 소속 교섭단체명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투표는 기명투표이므로 기명이 없는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투표하시는 도중에 혹시 의원의 성명 또는 가.부를 잘못 기재하시거나 기재 내용을 정정하셔야 할 때는 이미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반납하시고 새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투표결과에 대한 의원의 성명이 회의록에 게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이상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바. 무기명투표시 명패수와 투표용지수가 다를 때

(1)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적은 경우

- 투표수를 계산한 바 000매로서 명패수보다 0매가 적습니다.

(어느 의원께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 명패수보다 적은 0매의 투표수는 기권으로 인정하고 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2)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
 - 투표수는 000매로서 명패수보다 0매가 많습니다.
(어느 의원께서 명패를 명패함에 넣는 것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더라도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개표를 진행하여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함.)
 -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 개표 및 집계)
- (3) 명패가 투표함에서 나온 경우
 -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방금 투표함에서 명패가 0매 나왔습니다.
 - 어느 의원께서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므로 명패수를 000매로 정정하겠습니다.

제 9 절 의 결

1. 의 의

- 표결결과 의안이 가결 또는 부결되어 회의체인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한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표결결과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면 개개의 의원의 의사로부터 독립된 의회의 의사가 되는 것이다.
- 의회 「의결」의 양태로는 ①가결·부결·폐기 ②동의 ③승인 ④허가 ⑤채택 ⑥지명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보통 「의결」이라함은 가결을 의미한다.

2. 의결의 효력

- 의회의 「의결」은 그 자체로서는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징계의 의결,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 등과 같이 의회의 자율권에 기초한 의결은 의결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가진다.



제 10 절 산회선포

1. 의 의

- 산회는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 산회의 선포는 의장의 전권사항으로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 한다. 그러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의장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자치법 § 74)와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산회선포가 되면 그 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2. 산회의 선포

- 회의의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가 끝났을 경우 또는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의장이 일단 산회를 선포하게 되면 당일 재차 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 이는 「1일 1회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당일 자정이 가까워도 의사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그 날의 본회의를 산회한다. 회의는 1일을 단위로 하여 열고, 또한 의사일정은 당일에 한하여 무효하므로 당일 자정이 되면 의사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일단 산회하고, 다음날 영시 이후를 개의시각으로 하여 새로 개의하는 것이 회의운영의 관례이다.
- 산회를 선포할 때에는 다음 본회의의 개의일시 및 부의안건 등을 보고하는 것을 예로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개의일시만 보고한다.

위원회의 구성

- 제 1 절 위원회 제도의 의의
- 제 2 절 위원회의 직능과 종류
- 제 3 절 위원회의 구성
- 제 4 절 위원회의 운영



제 1 절 위원회 제도의 의의

1. 위원회의 의의

(1) 의회의 내부기관

의원중 일부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이다.

(2) 의회의 합의제기관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전에 회부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함에 있어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리를 적용하는 합의제기관이다.

(3) 의회의 예비심사기관

위원회의 역할은 의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의결은 의회의 최종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 외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은 의원전원의 회의인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 2 절 위원회의 직능과 종류

1. 위원회의 직능

가. 안건의 심사처리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며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한다.
- 심사의 결과, 그 원안대로 가결하거나 수정안 또는 대안을 제출할 수 있고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보고한 후 보고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 의장 또는 의원들의 요구가 없는 경우 그 의안은 폐기된다(자치법 § 61).

-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며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거 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나. 제안(회의규칙 § 70)

-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 등과 당해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사안을 조사함은 물론 심사기능을 적극적·자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 소관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위원회가 그 소관사무라고 해서 모든 사무에 대해 제안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발의·심사의결·집행은 지방교육자치기관에 전속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의안이라도 조례안과 예산안 및 결산 등 일부 중요의안은 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바, 교육·학예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그 제출된 의안의 심사는 물론 심사결과 수정안, 대안 등은 제출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 그 안건의 일부분이 그 위원회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하나의 안건을, 2개의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그것을 분할하여 수개의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음은 물론 수정안은 위원회의 의안심사의 결과 본회의에 제출되는 것이므로 심사권이 없는 타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안건이 그 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소관하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연석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따로 소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설치되는 바 특별위원회는 회부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회부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안을 입안·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의 제출자가 되어 심사보고와 제안취지설명을 하는 것이다.



-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당해 제출 위원회에는 회부되지 아니하며,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위원회에는 회부할 수 있다.

2. 광역과 기초의회의 위원회 설치

- 지방의회의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치법 § 50).
- 사도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판단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였다(자치법 § 50). 즉 사도의회는 조례로 상임위원회의 종류(명칭)와 위원 정수를 정하게 된다.
- 그러나 시·군·구 의회에서는 의원정수가 13인 미만인 경우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으며, 상임위원회 개수도 ①의원정수가 41인 이상인 의회는 5개 이내, ② 31인 이상 40인 이하의 의회는 4개 이내, ③ 13인 이상 30인 이하의 의회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운영위원회 포함)(자치법시행령 § 20의2).

3.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의 종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정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위원회별 소관사항 역시 위원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위원회간 균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시·도의회에는 상임위원회의 형태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위원회조례 § 4, § 5). 의회운영위원회는 회기·감사일정·상임위원회 소관·의사일정협의 및 경찰관파견요구 동의 등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이 그 소관이 된다 할 것이다.

4. 특별위원회

가. 특별위원회의 설치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대개 집행기관 각 부서 소관에 따라서 설치되고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하므로(회의규칙 § 25④) 모든 안건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게 되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은 언제나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경합이 된다.
-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되어 그 경중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연석회의로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또는 특히 중요한 안건으로서 일시적으로 특별히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요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상임위원회가 항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특별위원회는 한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사항이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심사할 특정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이를 회부하게 된다.
- 의장은 회부된 안건과 같은 종류이거나 관련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회의규칙 § 26).

나. 특별위원회의 소멸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자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나 회부안건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별위원회는 소멸된다.

- ① 특별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어서 그 안건이 폐기된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는 소멸된다(자치법 § 61).



- ②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그 심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또는 심사기간내에 이유없이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직권으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특별위원회는 소멸된다.
- ③ 회부된 안건이 철회되거나 그 안건의 내용이 실현되는 등 심사의 대상이 없어질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는 소멸된다.
- ④ 특별위원회가 병합되거나 기존특별위원회의 직무를 전부 승계하는 새로운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에는 먼저 설치된 특별위원회는 소멸된다.

다.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관계

- 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과의 사이에 경합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회가 특정한 안건이라고 인정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특정한 안건이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도 특별위원회에 이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중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특별위원회와 경합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소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사유발생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위원회조례 § 11)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특별위원회의 설치여부는 전적으로 의회가 의결하기에 달려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조례는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유(예산안 및 결산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한해서는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즉 시·도의회나 시·군·구의회 모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이처럼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

유는 적어도 예산안 및 결산과 의원징계 및 자격심사만큼은 위원회 단계에서의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 시·군·구의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원정수가 적어 특별위원회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거나 특위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음.

5. 소위원회

가. 소위원회제도의 의의

- 위원회설치의 취지로 볼 때 위원회 심사는 그 위원회의 전위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원칙임에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위원회조례 § 16). 즉 소위원회가 의안·청원의 예비심사나 위원회보고서의 기초·특정사안의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면 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이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 구성, 권한, 폐지 등 모든 것은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위원회는 말하자면 위원회중의 특별위원회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할 것 없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 조례에는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국회의 선례에 비추어 보면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은 다음과 같다.

- ① 한 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경우 의원이 원칙적으로 2개의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없는 취지로 보아 1인의 위원이 수개의 소위원회를 겸하는 소위원회의 설치방법은 가급적 피하여야 할 것이다.



- ②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이나 소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정한 방법대로 하면 될 것이다.
- ③ 소위원회와 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소위원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즉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병합 또는 폐지하고 소위원회 위원을 증감 또는 개선하며, 심사기간을 붙이고 심사에 대하여 지시하며, 혹은 심사중의 안건을 철회하여 직접 심사하는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위원회에 있어서의 심사절차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대체로 위원회에 준하면 될 것이다.
-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
- ⑤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경과와 결과를 구두 또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의 의제로 된 때에는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하여금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운영문제》

- 지방의회에서 「분과위원회」나 「협의회」 또는 「연구반」 등의 임의적 기구를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 이러한 분과위 등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서 법에 근거하고 있는 상임위나 특별위와는 큰 차이가 있다.
- 즉 분과위 등은 의회의 내부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임의적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어떠한 법적 지위나 권한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분과위 등은 대외적으로 특히 집행기관에 대해 사무실 제공, 경비지급, 자료제출요구, 출석, 답변요구 등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요구를 한다해도 집행기관 등은 이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 요컨대 의회의 효율적 운영이나 의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분과위 등을 의회내부적으로만 운영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기구가 대외적으로 별도의 행·재정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또는 부담을 줄수는 없는 것이다.



제 3 절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위원

가. 상임위원회의 위원(위원회조례 § 6)

-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 위원정수는 상임위원회의 종류, 소관사항의 중요성 등에 따라 다소의 차등은 있을 수 있으나, 위원회간의 위원수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 의원을 하나의 상임위원만 되도록 한 것은 의원으로 하여금 안건심사의 중심기관인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전문화의 취지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각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의원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동시에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게 한 것은 의회운영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와 실정을 반영하여 의안의 심사와 의사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언제든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상임위원이 될 수 없게 한 것이다.

나. 상임위원의 임기(위원회조례 § 7)

-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의원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일치시킴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나 그럴 경우 소관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의원의 활동이 어렵게 되는 한편, 상임위원회의 위원배정에 불만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양자를 조화시켜 의원이 임기 4년중 1회에 한하여 소속위원회를 달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이다.
-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지만 의회 폐회중에 임기가 만

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다음 회기에서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토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는 폐회중에도 전차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위원정수의 변동 등으로 위원을 개선할 경우 그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된다.

다. 위원의 선임(위원회조례 § 13)

-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되는데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와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의 회기(폐회중인 때에는 다음 회기) 초에 지체없이 선임한다.
- 상임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을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국회의 경우는 상임위원은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방의회는 법 제50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선임에 있어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미리 의원들의 희망 등을 파악하는 등 사전조정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이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하고 그 위원 정수가 확정되면 상임위원 선임방법에 준하여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하면 된다.

라. 위원의 이동

위원으로 선임되면 상임위원은 2년간 재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그 특별위원회가 소멸될 때까지 재임하게 되지만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전에 위원회의 구성에 이동이 생길 때가 있다.

(1) 위원의 개선

-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폐지, 증설, 종류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임위원선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상임위원을 개선하여야 한다.

- 특별위원회의 경우도 위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본회의에서 개선을 의결한다면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2) 위원의 사임

- 위원의 그 임기만료전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의원은 반드시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운영위원회 위원은 제외)은 개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임할 수 없다고 보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모든 의원이 반드시 하나의 특별위원회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의사로 사임할 수 있다.
- 사임이 가능한 경우의 위원의 사임은 의장이 허가해야 하며 그 방법은 사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3) 위원의 보임

위원의 사임, 의원신분의 상실 등 이유로 위원회의 구성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보임한다.

2. 위 원 장

가. 위원장의 직무(위원회조례 § 1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이 있다. 즉 위원장의 법률상의 권한은 대별해서 「위원회를 대표하는 권한」 「회의에 관한 권한」 및 「위원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의 3개 권한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위원회를 대표하는 권한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는 권한은 의회 내부에서만 행사되고 외부에 대해서는 의회를 대표하는 권한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바 위원회를 대표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거나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케 한다(회의규칙 § 78).

- ②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한다(회의규칙 제70조).
- ③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장에게 제출한다(자치법 § 37, 회의규칙 § 87).
- ④ 연석회의 개최를 요청한다(회의규칙 § 75).
- 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승인을 요청한다(회의규칙 § 76).
- ⑥ 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회의에 관한 권한

- ①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한다(회의규칙 § 67).
- ② 회기중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자치법 § 53).
- ③ 개의·정회·산회와 유회를 선포한다(회의규칙 § 18).
- ④ 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허용한다(회의규칙 § 59).
- ⑤ 위원회 회의록에 서명·날인한다(회의규칙 § 57).
- ⑥ 위원회에서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발언을 허가한다(회의규칙 § 89).
- ⑦ 기타 발언의 허가, 정족수의 확인, 표결 등 의사를 정리한다.

(3)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

- ① 의원이 아닌 자의 방청을 허가한다(자치법 § 52).
- ② 방청인의 퇴장을 명한다(자치법 § 52).
- ③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된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자치법 § 74).
- ④ 누구든지 회의장 안에서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회의규칙 § 105).
- ⑤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 의장에게 보고하여 처분을 요구한다(회의규칙 § 106).

나. 상임위위원장의 선임과 사임(위원회조례 § 8)



-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의회운영의 중심인 상임위원장은 의장·부의장에 못지않는 중요직이기 때문이다.
-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위원선임이 완료되어 그 명단이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지체없이 하여야 할 것이며 선거절차는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또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서의 소속위원회를 변경하였을 때는 위원장의 지위를 상실함은 당연하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다. 특별위위원장의 선임과 사임(위원회조례 § 12)

-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된 뒤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은 상임위원장의 사임과는 달리 본회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되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원회의 간사

- 위원회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위원회조례 § 15).
-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권한은 위원장과 같다.
-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외에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하는 사실상의 기능도 있으며 이 기능은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 간사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간사의 사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그 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는 이상 그 사임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간사의 지위도 잃게 된다.



제 4절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개최 등

가. 회기중 위원회 개최

-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자치법 § 53).
- 회기중에 그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개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고의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처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이 요구는 문서로서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이 규정의 취지로 보아 위원회의 정회중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속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폐회중 위원회 개최

- 폐회중에는 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자치법 § 53).
- 의회가 유효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회기중이므로 위원회의 활동도 원칙적으로 회기중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의안은 회기에 관계없이 의원 임기중 계류됨에 비추어 폐회중에도 집행기관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다음 회기에 있어서의 의회활동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단체장의 입장에서도 폐회중에도 위원회의 심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폐회중에도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이다.

다. 위원회의 개최일시

- 위원회의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회의규칙 § 67).
위원회의 개최는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 의원은 본회의의 의사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또한 본회의의 정족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회의중에는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위원회는 당일의 본회의가 산회된 후에 개최함이 합당하다.
- 그러나 특히 위원회가 긴급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중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의장에게 본회의중 위원회의 개최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장은 중요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또는 본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결할 염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해야 할 것이다.
- 이 허가에 있어서는 개별적 또는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한 후에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지 또는 산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어떤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하던 중 그 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하고 본회의중 심사할 것을 의결한다면 이는 본회의가 위원회 개최를 의결한 것으로 된다.
- 의장이 본회의의 중지를 선포한 때에는 이는 의사진행중이 아니므로 의장의 허가없이 위원회를 개최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회의중지 시간을 감안하여 본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위원회를 마쳐야 할 것이다.
-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상 본회의중이라도 언제든지 열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사

가. 동의(회의규칙 § 69)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나. 위원의 발언(회의규칙 § 72)



-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따로 발언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제한할 수도 있으며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식으로 할 수도 있다.
-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본래의 성격과 임무에 비추어 본회의에서와 달리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 그러나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거나 소속위원에게 균형있게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따로 발언방법을 의결하여 발언자 수, 발언시간, 발언회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의 제한은 대체로 본회의에서의 발언의 제한방법을 원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의 제한 등은 질의나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하는 경우와 질의 또는 토론중에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발언하는 위원간에 공평한 발언시간 부여를 위해서는 미리 정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할 것이다.
- 규칙 제72조에서의 「동일의제…」에서의 「의제」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의제란 ①단순한 회의의 제목이라고 보는 입장과 ②의결의 대상 또는 의결을 전제로한 토론의 대상이라고 보는 입장이 엇갈릴 수 있겠으나 회의운영의 실제와 관련시켜 보면, 후자의 입장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 즉 의제라 함은 단순한 회의의 제목이 아니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선거」 「보고」 「질문」 「취지설명」 등은 그 자체가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회의규칙 § 73)

-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위원 이외의 일반의원으로서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경우에는 의원 발의안에 대하

여 위원회에서 취지설명을 하는 경우외에 위원회가 심사하는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가진 의원이 있을 때에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경우 등이다.

- 위원이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권한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발언」이라 하면 질의와 토론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있어서의 「발언」은 위원이 아닌 의원은 위원회에서 심의권이 없다는 견지에서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라. 위원회의 의사·의결 정족수(회의규칙 § 74)

- 본회의와 위원회는 다같이 「재적의원(위원) 3분의 1」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재적의원(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고 있다.
- 본회의에서는 특별다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등)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때에도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출석위원 중에는 위원장도 포함되므로 「3분의 1 이상」과 「과반수」의 산정의 기초는 위원장을 포함한 수치임은 이론상 당연하다.
-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다. 위원장이 표결권을 행사할 경우 위원들이 표결할 때 위원장도 동시에 가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상황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권이 없으므로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의 심사

가. 심사절차(회의규칙 § 71)

- 위원회에서의 안건의 심사절차는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을 두는 경우) ③질의 ④토론 ⑤축조심사의 순서를 밟아야 하는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으며,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안건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질의과정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위원회에서 입안하는 안건에 있어서도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일 때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은 물론이다.
- 이때 단체장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나. 제안설명(취지설명)

- 「제안설명」이라 함은 안건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 제안 설명은 의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의제가 되는 사건보고 등에 대하여 행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한설명을 할 기회가 없고 위원회 중심주의의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대체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므로 위원회에서 행하는 제한설명은 그 안건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한설명은 그 안건이 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에 제일 먼저 행하게 되나 심사의 도중에 보충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건의 내용이 극히 간단하여 특별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제안자의 요청이나 양해를 얻어서 그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한설명은 안건 또는 동의의 발의자 또는 제출자가 한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는 그 발의한 의원이 취지를 설명한다.

발의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대표하여 제한설명을 할 수도 있고, 2인 이상의 의원이 교대로 할 수도 있으며 의안의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발의자를 대리해서 제한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단체장의 제출의안에 대하여는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취지를 설명

한다. 즉 단체장이 취지를 설명함이 원칙이나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수개의 의안을 일괄하여 의제로 한 경우에, 의안의 제안자가 동일한 때에는 동시에 취지설명을 하고 제안자가 다른 때에는 순차로 각각 그 취지설명을 하게 한다. 의안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순차로 그 취지설명을 한다. 이때의 순서는 위원장이 정한다.

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는 전문위원제도에 관하여 규정은 없으나 의회사무처설치조례는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의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위원의 안건심사를 보다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 질 의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도 있으므로 위원회 심사때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어야 한다. 본회의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 심사 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회의에서 중복 질의를 하게되는 등의 비능률을 막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 질의의 방식은 한 의원이 질의할 것을 전부 물은 다음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과 한가지를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1문 1답식이 있다.

마. 토 론

- 질의가 끝났을 때에 또는 질의종결의 동의를 가결되었을 때에는 토론에 들어간다. 토론은 표결의 전제로서 자기 또는 동료의 찬부의 의견을 표명하는 외에도, 아직도 찬부의 의견을 결정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에 찬동시키거나 또는 반대 의견자를 번의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찬반 어느 것도 아닌 토론은 있을 수 없으며, 위원 전부가 찬성(또는 반대)의 경우에는 토론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 토론이 종결되면 축조심사에 들어가거나 이를 생략하여 곧 표결에 붙인다. 토론 종결이라함은 토론자가 전부 발언을 마치고 위원장이 토론종결을 선포하였거나, 위원의 동의 또는 위원장의 제의로 의결하여 의장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때를 말한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표결이외의 여하한 방법도 취할 수 없다.

바. 축조심사

축조심사라 함은 의안을 축조낭독하여 한 조항씩 표결해 나가는 것이다.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에 대하여 취지설명·질의·토론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이미 의안전체에 대하여 그 절차를 밟았으므로 이때는 수정부분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4. 연석회의

가. 의 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부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회의규칙 § 75).

나. 연석회의의 의결권 여부

- 연석회의는 안건의 심사상 필요에 의하여 그 안건을 소관하는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건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칠 뿐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그 연석회의는 독립한 심사기관으로서 심사안건에 대해서 의결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표결할 수 없다는 것은 안건의 최종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연

석회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사항의 결정은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연석회의에서 의결능력이 없도록 한 이유로는 ①상임위원회 중심주의는 소관범위를 명확히 한 단일위원회 전속주의이고 ②의회의 최종적인 의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되며, ③절차의 간소화와 심의의 촉진이라는 이유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연석회의는 안건에 대한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질의하는 등 안건의 토론에 들어가기까지의 심사절차에 다른 위원회를 참가시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론은 그 안건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고유의 권한에 속한다.

다. 연석회의의 실제운영

- 연석회의를 열려면 위원회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협의는 안건소관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 안건소관위원회에 대하여 할 수도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원회에서 이에 응한 때에 연석회의가 열리게 된다.
- 연석회의를 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유관한 다른 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연석회의는 상임위원회 상호간이나 또는 특별위원회와 연석하여도 상관없으며 연석하는 위원회의 수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가 있으면 동시에 몇 개의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 수 있고 각기 따로 연석회의를 열 수도 있다.
- 연석회의의 개최일시와 장소는 위원장간의 협의에 의하여 안건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연석회의는 질의와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일반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공청회의 개최, 참고인의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비공개회의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그 안건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의사에 따라서 할 것이고 그 의사에 반하여 연석한 다른 위원회를 포함한 연석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연석회의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다.

- 연석회의는 안건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고 그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간사가 대리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여서는 안된다.
- 연석회의의 의사정족수는 관계위원회의 출석위원수에 상관없이 그 안건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1인도 출석하지 않으면 연석회의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연석회의의 회의록은 안건을 소관하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그 위원장과 그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하며 연석회의의 회의차수는 안건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회의차수에만 산입한다.

5. 심사보고서

가. 심사보고서의 중요성

-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회의규칙 § 77).
- 의원은 자기가 소속한 위원회의 심사의안이 아닐 때에는 위원회보고서에 의하여 의안의 취지·문제점·이해득실 등을 소상히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의원에게 있어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었을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이 없으며 질의 또는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심사보고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 따라서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이를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일반의원에게 미리 알리고 난 다음 안건을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다.

- 이 경우에 본회의에 의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안건 그 자체이고 위원회의 심사 보고서 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그 자체가 의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나.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배부

-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이상과 같이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작성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의규칙 제77조에서 「위원회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외에 간사 기타 기초위원을 선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초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며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위원회가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하게 되므로 안건을 가결, 수정 또는 부결 기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위원회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그것을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에 있어서는 일반의안과 같이 그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의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보고서의 인쇄·배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없음) 인쇄·배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할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도 반드시 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인쇄·배부하여야 한다.

다. 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심사보고서는 의원이 보고서를 일독하여 곧 그 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므로 대체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이다.

①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성명

나. 회부일자



다. 최초 상정일자 및 소요한 개회회수 및 일자

- ② 제안설명의 요지 및 설명자 성명
- ③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및 성명
- ④ 질의 및 답변요지와 질의·답변자 성명
- ⑤ 토론요지
 - 가. 찬성(성명)
 - 나. 반대(성명)
- ⑥ 수정안의 요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나. 수정이유
 - 다. 수정주요골자
- ⑦ 심의결과 : 「원안」 「수정」 「대안」 「부결」 등
- ⑧ 소수의견의 요지
- ⑨ 기타 필요한 사항(예산조치, 연석회의 등)

라. 소수의견

-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본래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는 본회의 심의의 예비적 심사로서 다만 판단의 자료제공 또는 새로운 제안일 따름이고 위원회의 심사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것이 의회의 의결을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원회에 있어서 소수로서 폐기된 의견도 본회의에 있어서는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최종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본회의에 위원회의 다수의견과 함께 소수의견도 아울러 보고하여 본회의 심의에 참고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렇게 하는 것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의 최종적인 심의를 함에 있어서 판단의 자료를 풍부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 소수의견은 위원회의 심사시 소수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이라야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가결한 때의 소수의견은 수정 또는 부결하지는 것이고, 위원회가 안건을 부결한 때의 소수의견은 가결 또는 수정하지는 것이다. 다만 소수의견이 수정인 때에는 위원회에서 수정의견을 진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정안으로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표결에 의하여 부결된 것이라야 할 것이다.

- 소수의견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서 의제가 되려면 소정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의 보고

-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회의규칙 § 78).
- 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자기의 의견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동일위원회에서 심사한 수개의 안건이 일괄하여 의제로 된 때에는 위원장은 일괄하여 보고하면 될 것이다.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위원장은 특히 그 보고를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보고를 한 다음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회의규칙의 준용

가. 위원회조례와 회의규칙과의 관계

- 위원회조례나 회의규칙 둘 다 지방자치법이 위임한 의회관련 자치법규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법에서 회의규칙에 있어서는 「규칙」, 위원회조례에 있어서는 「조례」라는 형식을 취하도록 달리 규정한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다.
- 예컨대 회의규칙은 의회내부에만 효력을 미치는 대내적 규범이고 위원회조례는 안팎으로 효력을 미치는 대내외적 규범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으나 사실 세밀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점도 많이 발견된다.
- 즉 위원회조례의 내용 역시 대외적인 구속력이나 효력을 가진 내용은 거의 없다. 또 위원회 역시 의회의 한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회의규칙의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 이처럼 「규칙」과 「조례」라는 각각 다른 형식을 취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론적으로 명쾌한 설명이 어렵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는 위원회 조례에는 위원회 종류 및 소관, 위원의 선임, 위원장, 간사 등 위원회의 종류나 구성 등의 규정을 위주로 하고 있고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나. 회의규칙의 적용 및 준용

-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에서 위원회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규정한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 특이한 것만 규정하고 본회의운영방법과 같은 부분은 위원회조례 제17조에서 준용규정을 두어 다른 장의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즉 위원회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를 적용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4장에는 없으나 위원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이다.
- 회의운영의 일반적 원리에 입각하여 회의규칙 제4장외의 규정중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위원회에 준용할 수 있는 조항(또는 조항의 일부분)을 열거해 보면 제18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22조(의사일정의 변경), 제23조(의사일정의 기재 예외안건 및 미료안건), 제33조(안건심의), 제37조(발언의 허가), 제39조(발언의 계속), 제40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44조(토론의 통지), 제45조(의장의 토론참가), 제46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47조(표결의 선포), 제48조(표결의 참가), 제49조(의사변경의 금지), 제50조(표결방법), 제51조(투표절차), 제52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53조(표결결과 선포), 제6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58조(배부회의록)를 들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자치법중에서도 명시적으로 위원회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사의 원리상 위원회에도 같이 준용되는 규정으로서는 제57조(회의의 공개), 제6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제62조(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